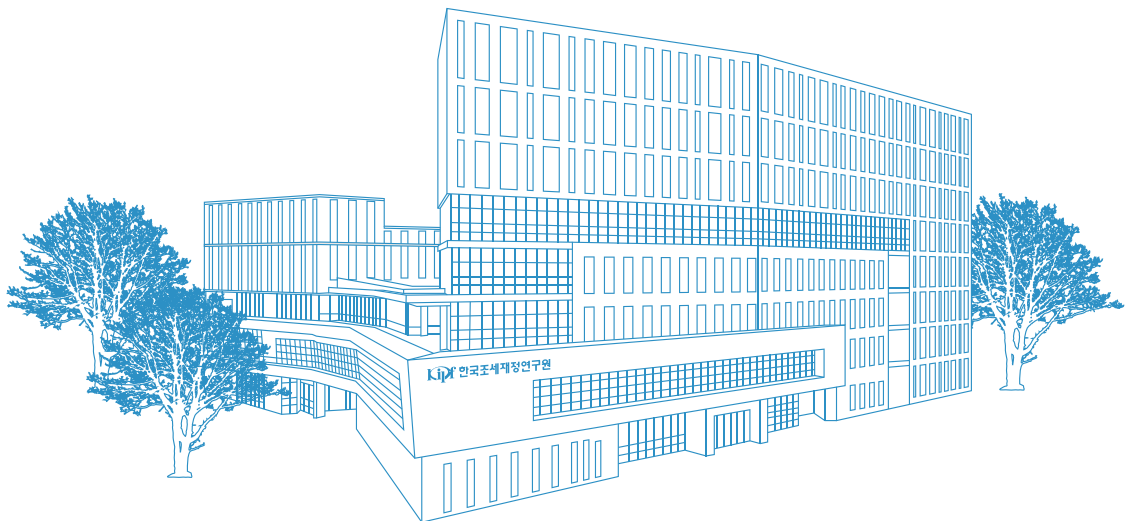


GAFSC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 쟁점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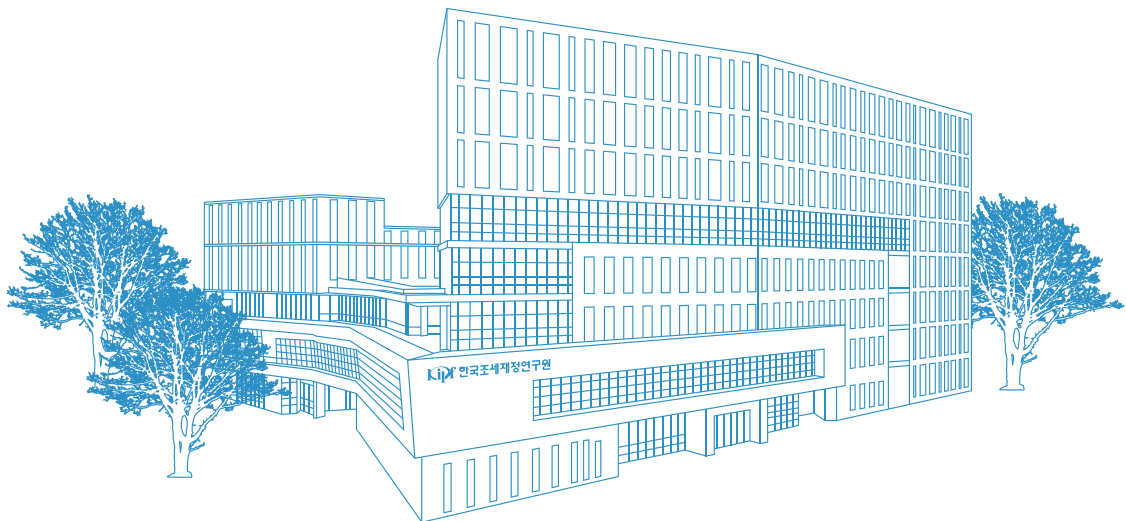
2020. 12



GAFSC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 쟁점보고서

2020. 12



서 언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국가결산은 「국가회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 10년째를 맞이하였다.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과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비되지 않은 결산보고서 체계, 예산결산과의 연계성 미흡 등에 따라 자산·부채의 규모 측정 외에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매년 결산보고서가 작성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에 제출되지만 발생주의 도입 당시에 기대되었던 체계적 재정운영분석, 재정건전성 관리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결산보고서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는 본 보고서는 의미가 있다. 특히 재무제표를 작성자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재무보고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노력한 국가회계팀 연구원분들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준 8명의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힌다.

2020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비되지 않은 결산보고서 체계, 예산결산과의 연계성 미흡 등에 따라 자산·부채의 규모 측정 외에는 충분히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년 결산보고서가 작성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에 제출되지만 국가 전체의 자산·부채의 규모,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정도 이외에는 이슈화되지 않으며, 발생주의 도입 당시 기대효과로 제시되었던 체계적 재정운영분석이나 원가를 활용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행 예산편성과 성과평가, 재정건전성 관리 등 기존 재정제도들은 현금주의 세입세출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낮은 반면 부담은 큰 것이 사실이다.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출되는 재무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한 산출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각 중앙관서 또는 결산을 분석하는 정부, 국회 등 정보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본 보고서는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인 국가결산보고서 중 특히 재무제표 관련 재무보고 프로세스를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1차적으로 재무제표로 범위를 한정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 TF를 통해 각 대안별 장단점 및 추가 고려사항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고려한 재무제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목 차

I. 서론	1
II. 해외 결산보고서 분석	3
1. 미국	4
2. 캐나다	6
3. 일본	7
4. 영국	8
5. 호주	9
6. 뉴질랜드	10
III. 재무제표 개선 쟁점사항	12
1. 재정상태표 간소화	13
2. 국가 재정운영표 간소화	25
3. 실체별 재정운영표 간소화	34
4. 부속서류 위상 강화 및 다양한 정보 제공	48
5. 정보이용자 이해 가능성 제고	55
IV. 자문 TF 운영	61
1. 재정상태표 간소화	62
2. 국가 재정운영표 간소화	64
3. 실체별 재정운영표 간소화	66

4. 부속서류 위상 강화 및 다양한 정보 제공	68
5. 정보이용자 이해 가능성 제고	71
V. 결론 및 시사점	73
참고문헌	75
부록 1. 각 국가별 재무제표	77
부록 2. 재무보고 개선 자문 TF 최종보고서	123

표 목차

〈표 II-1〉 해외 재무제표 현황(6개국)	3
〈표 II-2〉 미국 재무제표 주요내용	5
〈표 II-3〉 캐나다 재무제표 주요내용	6
〈표 II-4〉 일본 재무제표 주요내용	7
〈표 II-5〉 영국 재무제표 주요내용	8
〈표 II-6〉 호주 재무제표 주요내용	9
〈표 II-7〉 뉴질랜드 재무제표 주요내용	11
〈표 III-1〉 재무보고 개선(재무제표) 과제	13
〈표 III-2〉 주요 국가별 재정상태표 공시계정과목 수	14
〈표 III-3〉 투자자산 현황(2019회계연도)	15
〈표 III-4〉 기타비유동자산 현황(2019회계연도)	16
〈표 III-5〉 일반유형자산 현황(2019회계연도)	16
〈표 III-6〉 사회기반시설 현황(2019회계연도)	17
〈표 III-7〉 무형자산 현황(2019회계연도)	18
〈표 III-8〉 장기차입부채 현황(2019회계연도)	18
〈표 III-9〉 기타비유동부채 현황(2019회계연도)	19
〈표 III-10〉 장기충당부채 현황(2019회계연도)	19
〈표 III-11〉 개선안에 따른 계정과목 조정(자산 19개, 부채 14개)	21
〈표 III-12〉 주요 국가 재정상태표 표시 단위	23
〈표 III-13〉 개선안에 따른 재정상태표(2019회계연도)	24

〈표 III-14〉 재정운영표 증양관서 통합(안)	27
〈표 III-15〉 16대 분야와 12대 분야 비교	32
〈표 III-16〉 증양관서별 공시 프로그램 수(2019회계연도)	34
〈표 III-17〉 환경부 중복 프로그램명 현황	36
〈표 III-18〉 기획재정부 재정운영표 예시	38
〈표 III-19〉 환경부 재정운영표 예시	39
〈표 III-20〉 해양경찰청 재정운영표 예시	39
〈표 III-21〉 외교부 재정운영표 예시	40
〈표 III-22〉 병무청 재정운영표 예시	40
〈표 III-23〉 감사원 재정운영표 예시	40
〈표 III-24〉 관리운영비 개선안(기획재정부 예시)	41
〈표 III-25〉 비배분비용·수익 개선안(기획재정부 예시)	42
〈표 III-26〉 실체별 재정운영표 개선안(기획재정부)	43
〈표 III-27〉 수익·비용 계정과목 체계	44
〈표 III-28〉 성질별 비용	44
〈표 III-29〉 성질별 수익	45
〈표 III-30〉 기타비용(회계과목) 현황	46
〈표 III-31〉 기타수익(회계과목) 현황	46
〈표 III-32〉 주요 국가 재정운영표상 원가정보	51
〈표 III-33〉 회계실체별 재정운영표(예시)	54
〈표 III-34〉 회계실체별 재정상태표(예시)	55
〈표 III-35〉 사회보험상태표 작성 예시	56
〈표 III-36〉 재정상태표 개선안(사회보험 별도 공시)	57
〈표 III-37〉 현행 비교환수익 공시내역	58
〈표 III-38〉 비교환수익명세표(안)	59
〈표 IV-1〉 연구자문 TF 위원 현황	61

그림 목차

[그림 III-1] 대한민국 정부조직도	26
[그림 III-2] 중앙관서 통합(안)에 따른 재정운영표 작성 예시	28
[그림 III-3] 16대 분야별 국가재정운영표 예시	30
[그림 III-4]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31
[그림 III-5] 국세징수활동표 조정 회계처리	49
[그림 III-6] 지자체 재정상태표 양식	52
[그림 III-7]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상태표	53
[그림 III-8] Balance sheet by sector(호주)	54
[그림 III-9] 우리나라 재정 현황	60

I. 서론

「국가회계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기준의 도입 이후(2011년) 지속적으로 국가의 재정활동 관련 재무정보를 재무제표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이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정보,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및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비되지 않은 결산보고서 체계, 예산결산과의 연계성 미흡 등에 따라 자산·부채의 규모 측정 외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매년 결산보고서가 작성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에 제출되지만 국가 전체의 자산·부채의 규모,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정도 이외에는 이슈화되지 않으며, 발생주의 도입 당시 기대효과로 제시되었던 체계적 재정운영분석이나 원가를 활용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계 구축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행 예산편성과 성과평가, 재정건전성 관리 등 기존 재정제도들은 현금주의 세입세출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낮은 반면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출되는 재무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물론, 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각 중앙관서 또는 결산을 분석하는

정부, 국회 등 정보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점이 활용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인 국가결산 보고서, 즉 재무보고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재무보고 개선 프로젝트는 법적 재무보고(「국가재정법」 제59조 내지 제61조)와 더불어 결산국회, 홍보자료 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를 모두 포함하며, 국가통합결산보고서 중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중앙관서 또는 회계실체별 결산보고서를 포함할 예정이다. 단 본 쟁점보고서의 범위는 재무제표에 한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부속서류와 이외의 재무보고는 별도 프로젝트로 진행할 예정에 있다.

재무제표의 쟁점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선 발생주의 도입 주요국을 선정하여 결산 보고서상 재무제표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재무제표와의 비교 및 선행연구의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의 간소화, 세분화 등 개선사항과 함께 재무제표 신설, 공시계정과목 개편 등 과제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도출된 과제는 연구진의 장단점 분석 및 전문가 자문TF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재무제표 개선안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II. 해외 결산보고서 분석

연구진은 재무제표 개선 쟁점사항 도출을 위한 해외사례 수집을 위하여 해외 결산보고서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발생주의를 도입한 국가 중 자국 기준을 사용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과 IPSAS 또는 IFRS를 준용한 기준을 사용하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범위는 재무제표로 한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총괄표로 보면 <표 II-1>과 같다. 각 국가의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며, 원문은 별첨으로 첨부하도록 한다.

〈표 II-1〉 해외 재무제표 현황(6개국)

구분	자국 기준 적용				IFRS or IPSAS 적용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자산/부채/자본	○	○	○	○	○	○	○
운영성과(기능별)	○	-	○	-	-	-	-
수익비용(성질별)	-(RSI)	-	-	○	○	○	○
순자산	○	○	○	○	○	○	○
현금흐름	-	△	○	○	○	○	○
장기전망	-	○	-	-	-	-	-
사회보험보고	-	○	-	-	-	-	-
실체별 재무제표	-	-	-	-	-	○	○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미국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제표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처별 총원가, 수익 등 순원가를 공시하는 ‘Statement of Net Cost’, 특수목적기금(Fund from Dedicated Collections)과 특수목적기금 이외로 구분하여 수익, 내부거래, Net Position 변동을 공시하는 ‘Statement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Net Position’은 우리나라의 재정운영표와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순원가와 예산 적자와의 차이 조정명세인 ‘Reconciliations of Net Operating Cost and Budget Deficit’과 예산상 적자와 현금성자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Statements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Budget and Other Activities’도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다.

재정상태표에 대응되는 ‘Balance Sheets’는 자산 10개 과목, 부채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자산(Net Position)은 특수목적기금과 특수목적기금 외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다음 두 개의 재무제표는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는데 ‘Statements of Long-Term Fiscal Projections’은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과 적자에 따른 75년 예측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사회보험, 의료보험,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의 수입과 사회보험, 의료보험, 국방 등 지출 등을 75년 예측치에 대한 현재가치를 산출하여 GDP 대비 적자 정도를 공시하는 재무제표다.

‘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OASDI를 비롯한 의료보험제도 등에 대하여 현재 수급자, 현재 가입자 및 미래 가입자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75년 예측치에 대한 현재가치를 산출하여 수입과 지출을 대응하여 보여주는 재무제표로, 각 사회보장제도의 어느 계층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다.

〈표 11-2〉 미국 재무제표 주요내용

연번	재무제표	내 용
1	Statement of Net Cost	• 각 부처별 총원가, 수익, 가정변경손실, ¹⁾ 순원가 공시
2	Statement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Net Position	• 특수목적기금과 이외로 구분하여 수익, 내부거래, Net Position 변동 공시
3	Reconciliations of Net Operating Cost and Budget Deficit	• 순원가와 적자 차이 조정명세
4	Statements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Budget and Other Activities	• 예산상 적자(흑자)와 현금 또는 기타 현금성자산과의 관계
5	Balance Sheets	• 자산(10개), 부채(10개), Net Position(4개) 상태 공시
6	Statements of Long-Term Fiscal Projections	•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과 적자에 따른 75년 예측 정보 공시
7	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	• OASDI, HI, MI 등 사회보험 성격의 75년간 수익, 비용 예측(수급자, 가입자, 미래가입자로 구분)

주: 1) (Gain)/Loss from Changes in Assumptions

자료: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0, pp. 53~65.

2. 캐나다

캐나다의 재무제표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Consolidated Statement of Operations and Accumulated Deficit’은 우리나라의 재정운영표에 대응되는 재무제표로 개인, 법인 및 기타로 구분된 세금수익과 기타 세외수익 등 9개 항목으로 수익항목을 공시하고 있으며, 7개의 프로그램비용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재정상태표에 대응하는 ‘Consolidat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은 11개 항목과 자산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Net Debt를 공시하고 있으며, Net Debt에는 비금융성 자산(Non-financial assets)은 고려하지 않은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시한다.

다음 재무제표인 ‘Consolidated Statement of Change in Net Debt’에서는 이 Net Debt의 변동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 성격인 ‘Consolidated Statement of Cash Flow’를 통해 영업, 투자, 재무로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공시하고 있다.

〈표 II-3〉 캐나다 재무제표 주요내용

연번	재무제표	내 용
1	Consolidated Statement of Operations and Accumulated Deficit	• 수익(세금포함 9개), 프로그램별 비용(7개), 누적적자(Accumulated Deficit) 공시
2	Consolidat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부채(11개), 자산(10개), Net Debt* 공시 * 총부채에서 금융자산 차감
3	Consolidated Statement of Change in Net Debt	• Net Debt의 변동내역 공시
4	Consolidated Statement of Cash Flow	• 영업, 투자, 재무로 구분하여 현금흐름 공시

자료: Government of Canada, *Public Accounts of Canada 2019*, 2019, pp. 50~53.

3. 일본

일본의 재무제표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차대조표(貸借対照表)’는 29개 자산항목과 16개 부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자산 대신 자산·부채차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재정운영표에 대응되는 ‘업무비용계산서(業務費用計算書)’는 비용이 성질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건비, 연금비용, 보조금 등 2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수익은 공시하지 않고 재무제표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비용만 집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산·부채차액증감계산서(資産・負債差額増減計算書)’는 우리나라의 순자산변동표에 대응될 수 있는데 크게 당해 업무비용, 재원, 자산평가차액, 보험계산차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부채 차액의 변동내역을 공시한다. 재원에는 세금수입과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구분별수지계산서(区分別収支計算書)’는 현금흐름표와 유사하며, 영업, 재무로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공시한다.

〈표 II-4〉 일본 재무제표 주요내용

연번	재무제표	내 용
1	貸借対照表(대차대조표)	• 자산(29개), 부채(16개), 資産・負債差額 상태 공시
2	業務費用計算書 (업무비용계산서)	• 인건비 등 비용 28개 공시
3	資産・負債差額増減計算書 (자산·부채차액증감계산서)	• 資産・負債差額の 증감내역 공시 (업무비용, 재원, 자산평가차액 등 6개 항목)
4	区分別収支計算書 (구분별수지계산서)	• 영업, 재무로 구분하여 현금흐름 공시

자료: 財務省, 『平成30年度 国の財務書類(一般会計・特別会計)』, 2019, pp. 1~5.

4. 영국

영국의 재무제표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운영표에 대응되는 ‘Statement of Revenue and Expenditure’는 세금수익과 세외수익 두 가지로 수익을 구분 표시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비용, 인건비 등 9개의 비용을 성질별로 공시하고 있다. 영국의 특징은 총수익에서 공공비용을 차감한 ‘Net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와 ‘Net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에서 장기부채의 금융비용을 차감한 ‘Net (income) /expenditure for the year’를 별도로 공시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재무제표인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and Expenditure’에서는 자산재평가, 공정가치평가, 연금부채평가 등 포괄손익 4가지 항목을 공시한다.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은 자산 11개 항목, 부채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taxpayers’ equity’로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Statement of Changes in Taxpayers Equity’는 ‘taxpayers’ equity’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며, ‘Statement of Cash Flows’는 현금흐름표 성격이다.

〈표 11-5〉 영국 재무제표 주요내용

연번	재무제표	내 용
1	Statement of Revenue and Expenditure	• Tax 수익, Tax 외 수익, 비용(9개) 공시
2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and Expenditure	• 포괄손익(4개) 공시
3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자산(11개), 부채(9개), taxpayers’ equity (3개) 상태 공시
4	Statement of Changes in Taxpayers Equity	• taxpayers’ equity 변동 내역
5	Statement of Cash Flows	• 영업, 투자, 재무로 구분하여 현금흐름 공시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9, 2020*, pp. 77~82.

5. 호주

호주의 재무제표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운영표에 대응되는 ‘Operating Statement’는 세금, 판매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기타수익 등 5개 수익 항목과 인건비, 연금, 보조비 등 성질별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괄손익이 포함되어 있다.

‘Balance Sheet’는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14개 자산항목 이자 발생 부채와 총당부채 등으로 구분하여 14개 부채항목으로 구성되며,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Net Worth로 표시한다. Net Worth는 Accumulated results, Reserves, Minority interests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cash flow statement’는 영업, 투자, 재무로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공시하며,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는 Net Worth의 변동내역을 공시한다.

호주의 특징은 ‘SECTOR STATEMENTS’의 공시인데, 앞서 서술한 4개의 재무제표를 General Government,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Public financial corporations로 구분하여 내부거래 정보와 함께 구분 공시한다.

〈표 II-6〉 호주 재무제표 주요내용

연번	재무제표	내 용
1	operating statement	• 수익(세금 포함), 비용, 포괄손익 등 공시
2	balance sheet	• 자산(14개), 부채(14개), Net worth(3개) 상태 공시
3	cash flow statement	• 영업, 투자, 재무로 구분하여 현금흐름 공시
4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 Net worth의 변동내역 공시
5	operating statement by sector	• 4개의 재무제표를 각 세 개의 Sector로 공시 (General Government,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Public financial corporations)
	balance sheet by sector	
	cash flow statement by sector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by sector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pp. 35~49.

6.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재무제표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는 수익 항목은 세금과 세금외수익 및 운영수익 등 5개 항목으로, 비용 항목은 보조금,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성질별 항목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손익 등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Analysis of Expenses by Functional Classification’를 통해 Health, Education 등 17가지의 기능별로 원가를 공시하고 있으며, Total Crown expenses와 Core Crown expenses¹⁾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Statement of Comprehensive Revenue and Expense’에서는 자산 등의 평가손익 등 포괄손익을 표시하며, ‘Statement of Changes in Net Worth’는 Net Worth의 변동내역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 ‘Statement of Cash Flows’는 현금흐름표로 영업, 투자, 재무로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공시하고 있다.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은 자산 12개 항목, 부채 7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공시되어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Net Worth로 표시한다. Net Worth는 다시 ‘Taxpayer funds’,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revaluation reserve’, ‘Other reserves’로 구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뉴질랜드의 ‘Statement of Segments’는 Core Crown, Crown Entities, state-owned enterprises로 구분되는데 주석에 따르면 Core Crown은 ‘Ministers of the Crown’, ‘Government departments’, ‘Offices of Parliament’,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로 규정하고 있다.

1) Core Crown expenses include expenses incurred by Ministers, Departments, Offices of Parliament, the NZ Superannuation Fund and the Reserve Bank, but not Crown entities and State-owned Enterprises.(자료: Government of New Zealand, Financial Statement 2019, 2019, p. 43)

〈표 II-7〉 뉴질랜드 재무제표 주요내용

연번	재무제표	내 용
1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 sovereign revenue(세금, 세금외)와 운영수익(3개), 비용(8개), 평가손익 등 공시
	Analysis of Expenses by Functional Classification	• Health, Education 등 기능별 원가(17개) 공시(Total Crown expenses와 Core Crown expenses로 구분)
2	Statement of Comprehensive Revenue and Expense	• 포괄손익 명세
3	Statement of Changes in Net Worth	• Net Worth의 변동 내역
4	Statement of Cash Flows	• 영업, 투자, 재무로 구분하여 현금흐름 공시
5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자산(12개), 부채(7개), Net Worth(4개) 상태 공시
6	Statement of Segments	• Core Crown, Crown Entities, state-owned enterprises로 구분

자료: Government of New Zealan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pp. 42~50.

Ⅲ. 재무제표 개선 쟁점사항

국가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규칙」 제5조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쟁점보고서에서는 주석을 제외한 세 가지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쟁점사항을 도출한다. 또한 재정운영표의 경우 ‘국가’와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재무제표로 보았다.

재무제표 개선 쟁점사항은 크게 ‘재정상태표 간소화’, ‘국가 재정운영표 간소화’, ‘중앙관서 또는 기금 재정운영표 간소화’, ‘부속서류 위상 강화 및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정보이용자 이해가능성 제고’ 등 다섯 가지 과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시 16개의 소과제로 구분된다.

본 쟁점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구자문 TF를 구성하여 3개월간 운영을 하였으며, 연구진에서 각 소과제별로 쟁점을 정리하고 장단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문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III-1〉 재무보고 개선(재무제표) 과제

과제	소과제
재정상태표 간소화	• 차감계정 공시 제외, 계정과목 개편, 재무제표 작성단위 변경
국가 재정운영표 간소화	• 중앙관서 통합, 분야별 원가정보 제공, 내부거래 정보 반영
실체별 재정운영표 간소화	• 프로그램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계정과목 체계 개편
부속서류 위상 강화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국세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국세징수활동표 개선, 성질별 재정 운영표 개선, 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정보이용자 이해가능성 제고	• 사회보험상태표 신설, 비교환수익명세표 신설, 지방재정교부금 공시 개선

자료: 저자 작성

1. 재정상태표 간소화

가. 차감계정 공시 제외

현재 재정상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과목 97개를 일괄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감가상각누계액 14개, 사용수익권 12개, 현재가치할인차금 6개, 대손충당금 4개 등 전체 공시과목 중 41%(40개)가 차감계정으로, 이에 따른 이해 가능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도입 주요국 대비 공시계정과목이 과다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통상 20~30개 내외의 공시계정과목 수를 가지며 1~2페이지 정도로 재정상태표를 공시하는 타 국가에 비해, 97개의 공시계정과목과 8페이지의 재정상태표를 공시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차감계정 공시를 일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차감계정 중 국가가 발행한 국채 및 공채를 국민연금 등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하고 있어 국가통합과정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인식한 자기국채와 자기공채의 경우 그 성격과 금액적 중요성²⁾에 비추어봤을 때 공시계정과목 유지 여부를 고민할 여지가 있다.

2) 2019회계연도 기준 각각 약 106.7조원, 1.4조원

〈표 Ⅲ-2〉 주요 국가별 재정상태표 공시계정과목 수

(단위: 개, 페이지)

구분	미 국	영 국	호 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 본	한 국
자 산	10	13	18	12	17	29	71
부 채	10	11	18	7	16	16	23
순자산	4	3	3	5	1	1	3
총계정 수	24	27	39	24	34	46	97
페이지	1	2	1	1	1	1	8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계정과목 개편

현재 재정상태표 계정과목은 대분류(Level I) - 중분류(Level III) - 회계과목(Level III) - 관리과목(Level IV) - 세부관리과목(Level V)의 5단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단계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회계과목이다.

하지만 10년간의 재무제표 작성 간에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회계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정과목이 존재하는가 하면, 관리과목으로 재무제표에 공시되지 않는 계정과목이지만 금액적 중요성이 큰 경우가 발견되는 등 계정과목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총공시과목 중 자산 과목(71개)이 부채 과목(23개)의 3배를 차지하는 점을 보완할 방향을 찾고, 금액적 중요성, 정보이용자 관심 수준 등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 체계 개편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정보를 토대로 중분류(Level III)를 기준으로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분석을 수행하였다.

1) 투자자산(유동 포함)

〈표 III-3〉 투자자산 현황(2019회계연도)

(단위: 십억원, %)

구분	단순통합		내부거래 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투자자산				
단기금융상품	62,975	2.5	62,975	2.7
장기금융상품	1,623	0.1	1,623	0.1
단기투자증권	279,530	11.0	270,899	11.8
장기투자증권	747,272	29.5	630,655	27.4
단기대여금	64,672	2.6	31,737	1.4
장기대여금	249,820	9.9	176,347	7.7
기타투자자산	129,135	5.1	129,135	5.6

자료: 저자 작성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의 단기금융상품이 39.8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이 기타의 단기금융상품 38.5조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투자증권의 경우 국민연금운용자산이 2019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736.6조원(내부거래 금액 약 120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투자자산은 외국환평형기금의 KIC 위탁자산(기타의기타투자자산, 관리과목) 129.0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경우 국민연금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일부 회계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타비유동자산(유동 포함)

〈표 III-4〉 기타비유동자산 현황(2019회계연도)

(단위: 십억원, %)

구분	단순통합		내부거래 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타비유동자산				
미수채권	63,382	2.5	61,886	2.7
장기미수채권	6,837	0.3	6,836	0.3
기타유동자산	33,570	1.3	33,558	1.5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6,589	0.3	6,589	0.3

자료: 저자 작성

미수채권은 미수국세 46.1조원과 이외 미수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유동자산은 선급금이 23.7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군수품(4.0조원), 재고자산(2.1조원) 및 구상채권(1.1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선급금(3.3조원), 구상채권(1.9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유형자산

〈표 III-5〉 일반유형자산 현황(2019회계연도)

(단위: 십억원, %)

구분	단순통합		내부거래 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일반유형자산				
토지	355,502	14.0	355,502	15.5
건물	87,056	3.4	87,056	3.8
건축물	21,308	0.8	21,308	0.9
기계장치	10,849	0.4	10,849	0.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21,337	0.8	21,337	0.9
기타일반유형자산	10,368	0.4	10,368	0.5
전비품	144,869	5.7	144,869	6.3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22,572	0.9	22,572	1.0

자료: 저자 작성

토지, 건물, 구축물, 고정성기계장치 및 기타일반유형자산 하위 입목은 국유재산과 대응하며, 이동성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은 물품과 대응한다. 전비품은 국방부(144.6조원)와 방위사업청(0.3조원)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토지, 건물 및 전비품을 제외하고는 회계과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전체 자산 대비 1% 미만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사회기반시설

〈표 III-6〉 사회기반시설 현황(2019회계연도)

(단위: 십억원, %)

구분	단순통합		내부거래 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사회기반시설				
도로	271,396	10.7	271,396	11.8
철도	76,165	3.0	76,165	3.3
항만	23,733	0.9	23,733	1.0
댐	7,665	0.3	7,665	0.3
공항	6,206	0.2	6,206	0.3
하천	65,017	2.6	65,017	2.8
상수도	9,166	0.4	9,166	0.4
국가어항	2,171	0.1	2,171	0.1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8,612	0.3	8,612	0.4

자료: 저자 작성

개정 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 중 국가회계실체가 소유한 8개를 회계과목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동법의 개정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각 사회기반시설의 회계과목은 하위 관리과목 및 세부관리과목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타로 세분화되어 있다. 도로, 철도 및 하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 자산 대비 1% 미만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무형자산

〈표 III-7〉 무형자산 현황(2019회계연도)

(단위: 십억원, %)

구분	단순통합		내부거래 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20	0.0	20	0.0
소프트웨어	1,378	0.1	1,378	0.1
기타무형자산	138	0.0	138	0.0

자료: 저자 작성

전체 자산 대비 ‘무형자산(Level III)’의 비중이 0.1%(1.5조원)로 중요성이 많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내부개발소프트웨어(0.6조원)와 외부구입소프트웨어(0.8조원)로 구분되며, 이외 항목의 하위 계정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장기차입부채(유동 포함)

〈표 III-8〉 장기차입부채 현황(2019회계연도)

(단위: 십억원, %)

구분	단순통합		내부거래 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98,509	5.0	59,837	3.4
국채	635,450	32.0	635,450	36.4
자기국채	-	0.0	106,690	6.1
공채	12,273	0.6	12,273	0.7
자기공채	10	0.0	1,351	0.1
단기차입금	73,269	3.7	72,598	4.2
장기차입금	78,920	4.0	3,281	0.2

자료: 저자 작성

국채와 공채의 경우 하위 과목(관리과목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거래제거로 인해 유동성장기차입부채 30.1조원, 단기차입금 0.7조원 및 장기차입금 75.7조원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기타비유동부채(유동 포함)

〈표 III-9〉 기타비유동부채 현황(2019회계연도)

(단위: 십억원, %)

구분	단순통합		내부거래 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타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	14,802	0.7	14,802	0.8
기타유동부채	38,861	2.0	21,363	1.2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0,203	1.5	30,203	1.7

자료: 저자 작성

단기미지급금은 기타유동부채 하위 계정과목으로 2.5조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유동부채의 내부거래 제거 금액은 미지급국세(16.0조원)로 확인되었다.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는 기타부채(25.9조원, 관리과목)의 비중이 높으며, 고용보험기금(18.7조원), 산재보험기금(5.1조원) 및 임금채권보장기금(0.4조원)의 사회보험부채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8) 장기충당부채

〈표 III-10〉 장기충당부채 현황(2019회계연도)

(단위: 십억원, %)

구분	단순통합		내부거래 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장기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585	0.0	585	0.0
연금충당부채	944,167	47.6	944,167	54.1
보험충당부채	539	0.0	539	0.0
기타장기충당부채	55,046	2.8	55,046	3.2

자료: 저자 작성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보험충당부채는 각각 5~6천억원 정도의 금액으로 전체 부채의 0.1%도 안 되는 금액이나 회계과목으로 공시되고 있으며, 기타장기충당부채 55조원은 이보다 금액이 큰 보증충당부채(4.5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48.4조원), 소송충당부채(1.8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 상기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분석을 토대로 금액적 중요성, 정보 이용자의 관심 수준 및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7가지의 체계 개편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 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타 금융상품과 그 성격이 상이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으며, 610조원 규모로 금액적 중요성이 높은 국민연금 운용자산을 신설하여 회계과목으로 공시
-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하여 공시하되, 공정가치 평가 여부를 투자목적 여부로 구분하여 회계과목을 구분하고, 기타투자자산의 KIC 위탁자산은 별도 계정과목(관리과목)으로 신설
-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체 자산 대비 1% 미만을 차지하는 회계과목을 관리과목으로 조정(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 무형자산은 기타비유동자산의 하위 관리과목으로 조정
- 장기차입부채상 국채 및 공채의 하위 관리과목으로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제기구출자를, 공채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예보기금상환기금채권을 신설
-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금별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험부채(세부 관리과목)를 회계과목으로 상향
-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급여 성격의 퇴직수당충당부채를 관리과목에서 회계과목으로 상향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보험충당부채를 회계과목에서 관리과목으로 하향

상기 7개의 개선안을 반영한 계정과목 개선안은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개선안에 따른 계정과목 조정(자산 19개, 부채 14개)

현 행	개선안	비 고
유동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신 설>	단기국민연금운용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	관리과목으로 투자목적 및 투자목적 외 구분
단기투자증권		
단기대여금		
미수채권		
기타유동자산	기타유동자산	
투자자산	금융상품	장기미수채권 포함
<신 설>	국민연금운용자산	
장기금융상품	투자목적 금융상품 및 투자목적 외 금융상품	KIC 위탁자산을 관리과목으로 신설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	
토지	토지	
건물	건물	
구축물	기타일반유형자산	기계장치 등은 관리과목으로 조정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기타일반유형자산		
전비품	전비품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로	
철도	철도	
하천	하천	
댐	기타사회기반시설	공항, 항만 등은 관리과목으로 조정
공항		
항만		
상수도		
국가어항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표 Ⅲ-11〉의 계속

현 행	개선안	비 고
장기미수채권	〈삭 제〉 무형자산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국채	국채	국민주택채권 등 관리과목 신설
자기국채	자기국채	
공채	공채	관리과목 신설
자기공채	자기공채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삭 제〉	관리과목으로 조정
연금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삭 제〉	관리과목으로 조정
기타장기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기타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신 설〉	사회보험부채	
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금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자료: 저자 작성

상기 개선안과 독립적으로 추가적으로 재정상태표 계정과목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두 가지 더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결산서는 국민 등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정책담당자가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에게 보다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재정상태표를 작성한다면 활용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무형자산의 분류를 개별법 결산과 연관되도록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토지, 건물, 구축물 등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정보를 더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정부 내 자산·부채는 모두 관리과목 수준에서 별도표시하는 방안이다. 정부 내 차입금과 같이 일부 계정과목은 이미 계정과목명 자체로 내부거래 제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여 정보이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회계실체 재정상태표에서 관리과목으로 표시하여 정보유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 재무제표 작성단위 변경

현재 재정상태표를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는 원단위로 기재하고 있어 최대 16자리(예: 장기충당부채 1,000,184,767,286,150)로 표현됨에 따라 가독성이 떨어진다. 타 국가의 경우 100만(Million) 또는 10억(Billion) 단위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일반적 표기방식(만, 억, 조) 또는 금액 표기 기준(백만, 십억, 조)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재정상태표 외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표 III-12〉 주요 국가 재정상태표 표시 단위

구분	미 국	영 국	호 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 본	한 국
총계정 수	24개	27개	39개	24개	34개	46개	97개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8페이지
단위	10억\$	10억£	100만\$	100만\$	100만\$	100만円	1원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재정상태표 간소화 개선안에 따라 2019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작성 예시는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개선안에 따른 재정상태표(2019회계연도)

(단위: 십억원)

구분	FY2019	FY2018	구분	FY2019	FY2018
유동자산	458,911	401,232	유동부채	153,520	139,289
현금 및 현금성자산	30,982	51,736	단기차입금	72,598	68,968
단기국민연금운용자산	184,744	134,744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9,837	50,007
단기금융상품	209,627	183,315	기타유동부채	21,085	20,313
기타유동자산	33,558	31,438			
금융상품	919,906	833,634	장기차입부채	546,933	505,022
국민연금운용자산	426,154	495,211	국채	639,427	600,758
투자목적 금융상품	88,345	82,670	자기국채	△106,690	△110,765
투자목적 외 금융상품	405,407	255,753	공채	12,266	13,781
			자기공채	△1,351	△2,052
			장기차입금	3,281	3,300
일반유형자산	577,624	557,601	장기충당부채	1,000,337	998,555
토지	355,151	341,337	연금충당부채	944,167	939,888
건물	68,346	65,655	퇴직수당충당부채	48,407	51,065
기타일반유형자산	35,178	36,607	기타장기충당부채	7,763	7,601
전비품	96,376	92,319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22,572	21,682			
사회기반시설	334,866	329,470	기타비유동부채	42,936	40,545
도로	192,713	191,351	사회보험부채	24,136	20,108
철도	42,326	40,370	장기미지급금	12,767	13,280
하천	61,795	61,974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6,033	7,158
기타사회기반시설	29,420	28,896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8,612	6,879			
기타비유동자산	8,125	8,125	기본순자산	441,677	441,031
무형자산	1,536	1,536	적립금및잉여금	△18,036	△37,134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6,589	6,589	순자산조정	132,064	39,292
			순자산 계	555,706	443,190
자산 계	2,299,432	2,126,602	부채와 순자산 계	2,299,432	2,126,602

자료: 저자 작성

2. 국가 재정운영표 간소화

가. 중앙관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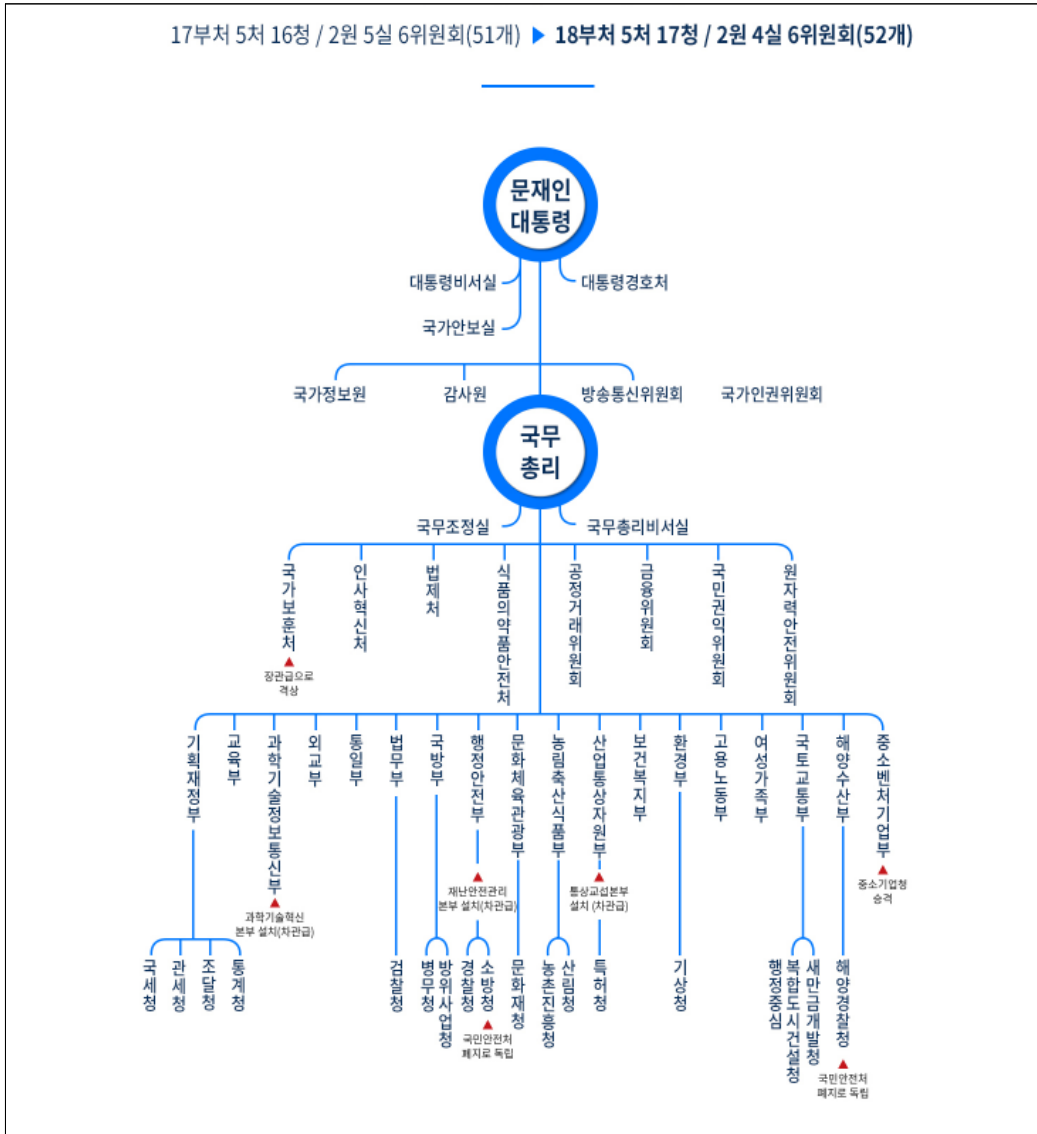
국가 재정운영표는 부처별로 재정운영순원가를 표시하고 그 하위에 비교환수익을 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56개의 중앙관서를 표시하고 있는데, 중앙관서의 규모, 조직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 없이 단순 나열하고 있어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재정운영표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각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를 공시하여 정부의 각 서비스별 원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56개의 부처와 2페이지로 제공되어 그 양이 상당하고, 부처명만으로는 정보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서비스의 성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현재 결산서에 산출되는 중앙관서의 순서는 결산시스템의 코드 순서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의해 조직개편이 일어나는 경우 중앙관서명만 변경되고 코드를 이어받는다면 순서가 바뀌지 않지만, 중앙관서가 신설되는 등 코드가 신설된다면 하위코드를 부여받게 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규모, 중요성 등과 무관하게 하위에 위치하게 된다. '부' 단위 중앙관서인 행정안전부가 49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3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유에 의한 것이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첫 번째에 위치하나, 대통령경호처는 54번째에 위치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부처별 원가를 공시하는 목적은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조직체계에 맞춰 통합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Ⅲ-1] 대한민국 정부조직도



자료: 청와대, 「정부 조직도」, <https://www1.president.go.kr/about/government-organization>, 검색 일자: 2020. 7. 15.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하위 기관을 통합하고, 부처 하위 청은 모두 부처에 통합하여 공시하여 현재 56줄로 표시되는 재정운영순원가를 절반 이하로 표시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의 활동을 직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표 III-14〉 재정운영표 중앙관서 통합(안)

구분	하위 중앙관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등 5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슴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개 부처	하위 17개 청
별도 표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저자 작성

재정운영표 중앙관서 통합 개선안에 따른 재정운영표 작성 예시는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중앙관서 통합(안)에 따른 재정운영표 작성 예시

대한민국 정부		(단위: 원)	
주석		2019	2018
2. 재정운영표			
당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I. 재정운영순원가		394,711,319,311,535	343,375,446,753,279
1. 대통령	4	896,925,193,824	825,512,916,181
2. 국회		647,307,835,264	621,115,397,567
3. 대법원		1,522,050,075,053	1,421,555,338,451
4. 헌법재판소		48,120,133,136	48,931,713,677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66,974,007,205	438,105,462,445
6. 국가인권위원회		37,066,404,189	31,828,121,881
7. 국무총리	4	41,709,698,631,985	39,989,834,762,958
8. 기획재정부	4	9,285,921,483,465	8,080,132,409,801
9. 교육부		75,473,051,935,541	66,600,049,290,409
...			
23. 국토교통부	4	21,291,208,949,693	16,228,531,791,244
24. 해양수산부	4	6,565,734,353,725	2,075,187,548,956
25. 중소벤처기업부		5,256,510,014,578	4,487,812,718,758
26. 내부거래 금액			
(1) 내부거래 원가		(8,643,745,859,316)	(8,579,114,922,772)
(2) 내부거래 수익		8,643,745,859,316	8,579,114,922,772
II. 비교환수익 등		351,731,796,156,239	351,144,016,295,243
1. 국세수익			
(1) 국세수익		298,416,702,884,333	301,414,206,980,945
(2) 대손상각비		(6,574,563,880,424)	(6,503,725,150,164)
(3) 대손충당금환입		3,480,602,757	4,492,212
2. 부담금수익		17,541,831,461,238	
...			
III. 재정운영결과(II-JI)		42,979,521,155,296	(7,768,569,541,964)

자료: 저자 작성

나. 분야별 원가정보 제공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이하 '실체별 재정운영표')는 각 프로그램별로 원가 정보가 제공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국가재정운영표에서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및 비배분비용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를 중앙관서별로 표시함에 따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중앙관서의 재정운영순원가가 해당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예산편성과 예산결산은 중앙관서 단위가 아닌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로 집계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또는 현금주의 결산정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단위에서 프로그램과 같은 성격의 원가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국가통합 단위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기능별 분류의 최상위인 분야별 원가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야'는 세출예산 편성 시 최상위 분류 단위로 사회복지, 보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통신, 일반·지방행정, 교육, 국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문화 및 관광, 통일·외교, 예비비의 16개로 구분된다.

16대 분야별 국가재정운영표 작성 예시를 보면 [그림 III-3]과 같다.

[그림 III-3] 16대 분야별 국가재정운영표 예시

2. 재정운영표
 당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조원)

주석	2019			2018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512.0	53.1	458.9	489.5	50.6	388.9
1. 사회복지	167.0	45.0	122.0	148.9	42.9	106.0
2. 일반·지방행정	79.0	-	79.0	76.6	-	46.6
3. 교육	72.6	4.2	68.4	70.6	3.9	66.7
4. 국방	48.7	2.0	46.7	45.3	2.0	43.3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	23.7	18.8	-	18.8
6. 농림수산	21.5	-	21.5	20.0	-	20.0
7. 공공질서및안전	20.8	0.2	20.6	20.1	0.2	19.9
8. 교통및물류	19.2	0.5	18.7	15.7	0.4	15.3
9. 보건	13.5	1.1	12.4	12.1	1.0	11.1
10. 환경	9.0	-	9.0	7.4	-	7.4
11. 과학기술	8.2	-	8.2	7.3	-	7.3
12. 문화및관광	8.0	0.1	7.9	7.2	0.2	7.0
13. 통신	7.9	-	7.9	7.3	-	7.3
14. 통일·외교	5.5	-	5.5	5.1	-	5.1
15. 국토및지역개발	4.0	-	4.0	4.1	-	4.1
16. 예비비	3.4	-	3.4	3.0	-	3.0
II. 관리운영비			27.4			26.5
1. 인건비			19.2			18.4
2. 경비			8.2			8.1
III. 비배분비용			17.5			23.7
IV. 비배분수익			38.5			51.5
V. 재정운영순원가			465.3			387.6
VI. 비교환수익 등			465.3			387.6
1. 국세수익			291.9			294.9
2. 부담금수익			17.5			17.6
...						
VII. 재정운영결과			-			-

자료: 저자 작성

세출예산 편성 기준인 16대 분야 이외에도 행정부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나라살림 등 예산 편성 홍보자료 작성 시 12대 분야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분야를 조정한 것으로, 분야별 원가정보의 제공목적이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12대 분야를 활용한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I-4]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단위: 조원)

구 분	'19년(A)	'20안(B)	증감 (B-A)	
				%
◆ 총지출	469.6	513.5	43.9	(9.3)
1. 보건·복지·노동	161.0	181.6	20.6	(12.8)
※ 일자리	21.2	25.8	4.5	(21.3)
2. 교 육	70.6	72.5	1.8	(2.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2	55.5	0.2	(0.4)
3. 문화·체육·관광	7.2	8.0	0.7	(9.9)
4. 환 경	7.4	8.8	1.4	(19.3)
5. R&D	20.5	24.1	3.6	(17.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3.9	5.2	(27.5)
7. SOC	19.8	22.3	2.6	(12.9)
8. 농림·수산·식품	20.0	21.0	0.9	(4.7)
9. 국 방	46.7	50.2	3.5	(7.4)
10. 외교·통일	5.1	5.5	0.5	(9.2)
11. 공공질서·안전	20.1	20.9	0.8	(4.0)
12. 일반·지방행정	76.6	80.5	3.9	(5.1)
※ 지방교부세	52.5	52.3	△0.2	(△0.3)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2019. 8. 29.

〈표 III-15〉 16대 분야와 12대 분야 비교

16대 분야	12대 분야	비고
사회복지	보건·복지·고용	2개 분야를 1개로 통합
보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SOC	
과학기술	R&D / 기타	과학기술, 통신 분야 외 별도 집계(34개 부처)
통신		
일반·지방행정	일반·지방행정	1:1 대응
교육	교육	
국방	국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 및 안전	공공질서·안전	
환경	환경	
문화 및 관광	문화·체육·관광	
통일·외교	외교·통일	
예비비	-	

자료: 저자 작성

현행 재정운영표는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재정운영표를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중 선택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재정운영표를 대체하여 분야별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재정운영표를 주재무제표로 제공하는 방안, 두 번째는 현재의 재정운영표와 함께 추가적으로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신설하여 제공하는 방안, 마지막으로는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주석 등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와 분야별 원가정보의 중요성, 의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내부거래 정보 반영

현 재정운영표상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의 최하단 항목에는 내부거래 원가와 내부거래 수익 항목이 공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운영순원가 하위에서 한 줄로 표시함에 따라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 금액이 제거 전으로 공시되어 2019회계연도 기준 약 8.6조원의 원가와 수익이 재정운영순원가에 포함된 채로 공시됨으로써 정확한 원가정보가 산출되지 않고 있다. 비교환수익은 내부거래가 제거된 금액으로 공시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현 체계의 재정운영표는 각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 금액과 일치한다는 금액 검증 가능성 이외의 장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 수익 및 비용을 반영하여 각 중앙관서별 정확한 원가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실체별 재정운영표 간소화

실체별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에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로 구분되어 표시한다. 이에 따라 실체별 재정운영표 간소화 과제는 각 표시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가. 프로그램원가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수익 및 프로그램순원가 등 세 가지 항목을 한 줄에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총원가를 기재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과 함께 총원가에서 수익을 차감한 순원가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현행 정부의 프로그램예산제도하에서 프로그램별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 볼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각 중앙관서 간 규모의 차이가 있어 많은 경우 최대 39개까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현 양식상 한 페이지에 25개의 프로그램이 공시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39개), 국토교통부(39개), 문화체육관광부(34개), 보건복지부(33개), 기획재정부(27개) 등 일부 중앙관서의 경우 프로그램원가 부분만 1페이지가 넘어 가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 반면 감사원 등 13개 중앙관서는 1개의 프로그램만 존재하여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운영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다.

〈표 Ⅲ-16〉 중앙관서별 공시 프로그램 수(2019회계연도)

(단위: 개)

중앙관서	분야	부문	프로그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11	39
국토교통부	3	9	39
문화체육관광부	1	4	34
보건복지부	2	8	33
기획재정부	5	9	27
환경부	5	11	24

〈표 III-16〉의 계속

중앙관서	분야	부문	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2	4	21
행정안전부	4	7	20
교육부	2	5	19
농림축산식품부	1	2	18
해양수산부	4	5	16
국방부	2	3	15
외교부	1	1	14
중소벤처기업부	1	4	12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11
국가보훈처	1	1	10
금융위원회	4	4	9
고용노동부	1	2	9
문화재청	1	1	9
산림청	1	1	9
통일부	1	1	9
경찰청	1	1	8
법무부	1	1	8
기상청	1	1	7
농촌진흥청	1	1	6
방위사업청	1	1	6
인사혁신처	2	2	5
관세청	1	1	5
국세청	1	1	5
국회	1	1	5
해양경찰청	2	2	4
원자력안전위원회	1	2	4
여성가족부	1	1	4
통계청	1	1	4
특허청	1	1	4
공정거래위원회	1	1	3
대법원	1	1	3
병무청	1	1	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1	2
대통령경호처	1	1	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1	2
조달청	1	1	2
감사원 등 13개 중앙관서	1	1	1

자료: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두 번째로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프로그램명이 해당 중앙관서의 업무 성격을 직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기획재정부로 예를 들면 경제정책(28억원), 정책조정(78억원), 경제협력(299억원), 재정운용(41억원), 재정관리(102억원), 재정기획(603억원) 등이 모두 별도 프로그램으로 표시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각의 업무 성격을 정보이용자가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상위 그룹인 ‘부문’ 단위로는 모두 ‘재정·금융’ 부문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분야 또는 부문 변경, 프로그램 변경 등으로 인해 중복으로 보이는 프로그램명 공시 사례가 존재한다. 환경부를 예로 들면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대기환경보전, 기후변화대응 등 프로그램명만 보면 중복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이 공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명은 같은데 부문명이 다르거나, 프로그램명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프로그램명만 공시되는 현재의 재정운영표 양식에서는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표 III-17〉 환경부 중복 프로그램명 현황

(단위: 억원)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FY2019	FY2018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2	64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	7
환경	기후대기및환경안전	대기환경 보전	17,456	8,097
환경	기후대기및환경안전	기후변화대응	799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후대기및환경안전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0.4	29
농림수산	농업·농촌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	12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	18

자료: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상기 서술한 세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개선안은 프로그램원가 대신 직관적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별 원가를 공시하는 방안이다. 다만 중앙관서별로 그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시 세 가지 안을 장단점과 함께 제시한다.

(1안) 모든 중앙관서를 일괄적으로 부문별 원가로 개편

재정운영표의 일관성 및 정보이용자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1개 부문,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3개의 중앙관서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6개 중앙관서의 정보량이 저하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2안) '부' 단위 중앙관서 한정으로 부문별 원가로 개편

각 중앙관서별 평균 9.1개의 프로그램과 2.4개의 부문을 가지고 있으나, '부' 단위로 한정할 경우 20.1개의 프로그램과 4.9개의 부문을 가지게 되어 1안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으며, 「정부조직법」상 단위인 '부'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일관성도 일부 제고할 수 있다. 다만 4개 부문 9개 프로그램을 가진 금융위원회, 1개 부문 4개 프로그램을 가진 여성가족부 등 프로그램 다수 여부가 꼭 '부' 단위 여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3안) 프로그램 개수(예: 10개 이상)로 공시단위 조정

프로그램 개수가 많아 가독성이 저하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므로 기준을 프로그램 개수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부문별 원가 공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프로그램이 예산 편성 시 변경되는 경우 재정운영표가 매년 변경될 수 있어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프로그램별원가와 부문별원가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9개 부문, 27개 프로그램), 환경부(11개 부문, 24개 프로그램), 해양경찰청(2개 부문, 4개 프로그램), 외교부(1개 부문, 14개 프로그램), 병무청(1개 부문, 3개 프로그램), 감사원(1개 부문, 1개 프로그램)의 재정운영표 현행과 개선안의 모습을 예시로 보면 <표 III-18>과 같다.

〈표 Ⅲ-18〉 기획재정부 재정운영표 예시

(단위: 원)

현행	순원가	개선안	순원가
1. 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지원)	222,106,706,970	재정·금융	5,625,702,574,913
2. 공공자금관리	15,880,302,454,886	2. 취약계층지원	256,746,628,202
3. 경제정책	2,817,900,490	3. 지방행정·재정지원	222,106,706,970
4. 정부위원회	2,077,421,934	4. 외교·통상	163,039,157,482
5. 정책조정	7,777,147,507	5. 입업·산촌	47,937,998,710
6. 자문회의 지원	2,262,242,653	6. 보훈	47,056,118,290
7. 조세정책	4,766,771,677	7. 사회복지일반	25,204,876,110
8. 국고관리	401,399,017,484	8. 물류등기타	(6,444,219,572)
9. 재정운용	4,142,528,863	9. 아동·보육	49,068,746
10. 공공정책	5,203,232,722		
11. 재정관리	10,202,892,141		
12. 재정기획	60,282,016,207		
13. 국제금융	930,691,594,946		
14. 경제협력	29,914,069,919		
15. 기금운영비	974,640,587		
16. 복권기금운영(일반)	(1,985,085,748,417)		
17.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		
18. 여유자금운용	(9,878,315,266,183)		
19. 차입금등원금상환	146,289,657,497		
20. 대외경제협력 지원	163,039,157,482		
21. 장애인생활안정지원	(430,618,848)		
22.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257,177,247,050		
23. 복권기금운영(보훈복지법정지원)	47,056,118,290		
24. 복권기금운영(사회복지법정지원)	25,204,876,110		
25. 민간보육시설지원	49,068,746		
26. 복권기금운영(신림환경법정지원)	47,937,998,710		
27.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6,444,219,572)		

자료: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19〉 환경부 재정운영표 예시

(단위: 원)

현행	순원가	개선안	순원가
1.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180,123,543	물환경	3,631,346,360,161
2.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33,981,713	2. 기후대기및환경안전	2,129,682,201,680
3. 환경연구 및 교육	90,726,396,703	3. 자연환경	635,355,873,667
4. 환경행정 지원	176,350,730	4. 수자원	608,718,489,106
5.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7,168,307,700	5. 자원순환및환경경제	576,102,283,963
6. 물오염원 관리	1,819,414,908,621	6. 환경일반	108,071,055,133
7. 수생태계 관리	174,660,902,707	7. 산업단지	38,762,386,776
8. 4대강유역관리	718,843,432,679	8. 물류등기타	36,582,848,217
9. 맑은물 공급·이용	918,427,116,154	9. 국정운영	1,180,123,543
10.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260,623,997,380	10. 재정·금융	133,981,713
11.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315,478,286,583	11. 에너지및자원개발	40,547,480
12. 대기환경 보전	1,745,598,749,988		
13. 기후변화대응	78,652,789,256		
14. 환경보건관리	307,091,164,955		
15. 자연생태 보전	635,355,873,667		
16.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40,547,480		
17. 국토교통연구개발	33,728,000,000		
18. 국토교통정보화	2,189,247,917		
19. 건설정책지원	665,600,300		
20. 용수공급및개발	390,432,436,594		
21. 수자원정책	6,814,133,786		
22.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 증대	154,319,690,070		
23.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57,152,228,656		
24. 산업단지개발지원	38,762,386,776		

자료: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20〉 해양경찰청 재정운영표 예시

(단위: 원)

현행	순원가	개선안	순원가
1. 구조안전활동	64,120,342,679	1. 해경	368,528,599,026
2. 해양경비체제강화	274,559,100,239	2. 해양환경	7,030,200,570
3. 정비창운영	29,849,156,108		
4. 해양오염관리	7,030,200,570		

자료: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21〉 외교부 재정운영표 예시

(단위: 원)

현행	순원가	개선안	순원가
1. 한반도 평화 조성	15,461,615,057	외교통상	2,023,255,562,001
2. 정상외교	23,600,191,195		
3. 국제기구분담금	454,546,416,463		
4. 지역외교	30,732,040,192		
5. 다자관계 협력	15,536,845,318		
6. 국제개발협력	800,090,682,766		
7.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80,731,719,132		
8.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67,893,121,169)		
9. 여권업무 선진화	(21,499,523,038)		
10. 경제외교	5,582,461,395		
11.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3,242,212,920		
12.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2,487,961,631		
13. 재외공관운영	629,572,842,430		
14. 항공권연대질병퇴치	41,063,217,709		

자료: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22〉 병무청 재정운영표 예시

(단위: 원)

현행	순원가	개선안	순원가
1. 병역자원선발	18,822,104,346	1. 병무행정	31,559,987,811
2. 병역자원충원	1,979,339,505		
3. 보충역복무지원	10,758,543,960		

자료: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23〉 감사원 재정운영표 예시

(단위: 원)

현행	순원가	개선안	순원가
1.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140,277,975,838	1. 일반행정	140,277,975,838

자료: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두 번째로 현재 단순히 프로그램코드 순서로 산출되는 정보는 재정운영표상 순원가 금액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하는 안을 제시한다. 국가의 특성상 원가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기준을 설정하였다.

나.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관리운영비의 경우 인건비와 경비로 구분하고, 경비는 다시 성질별로 회계과목(Level Ⅲ)을 공시하고 있는데 경비 하위 회계과목은 총 31개가 존재하며, 각 중앙관서별로 20개에서 23개 정도를 공시하고 있다. 계정과목이 행정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목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비목은 관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회계정보로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계정과목인 소모품비, 인쇄비, 세금과 공과, 수도광열비 등이 회계과목으로 세분화되면서 공시계정과목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필수보충정보상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공시내역이 중복되고 재정운영표상 프로그램충원가는 성질별로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관리운영비 하위 성질별 계정과목의 정보는 유용성도 낮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단위로 원가를 공시하는 현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하위 회계과목은 공시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비배분수익과 비배분비용도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표 Ⅲ-24〉 관리운영비 개선안(기획재정부 예시)

(단위: 원)

현행	순원가	개선안	순원가
Ⅲ. 관리운영비	219,303,647,145	Ⅲ. 관리운영비	219,303,647,145
1. 인건비	94,550,169,523	1. 인건비	94,550,169,523
2. 경비	124,753,477,622	2. 경비	124,753,477,622
(1) 복리후생비	16,074,603,225		
(2) 소모품비	3,181,654,054		
(3) 인쇄비	1,420,112,220		
(4) 광고선전비	506,770,910		
(5) 지급수수료	43,758,883,609		
(6) 세금과 공과	354,429,707		
(7) 수도광열비	4,943,203		
(8) 지급보험료	7,322,566		
(9) 피복비와 급량비	159,200		
(10) 교육훈련비	446,059,372		

〈표 III-24〉의 계속

현행	순원가	개선안	순원가
(11) 지급임차료	1,330,558,371		
(12) 유류비	54,070,174		
(13) 수선유지비	382,499,710		
(14) 여비교통비	3,359,307,460		
(15) 업무추진비	4,196,522,425		
(16) 외주용역비	39,191,886,446		
(17) 보전비	37,956,070		
(18) 출연비	2,089,000,000		
(19) 보조비	96,081,860		
(20) 감가상각비	5,612,505,480		
(21) 자산감액손실	458,553,827		
(22) 연구개발비	2,153,837,450		
(23) 기타비용	35,760,283		

자료: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25〉 비배분비용 · 수익 개선안(기획재정부 예시)

(단위: 원)

기획재정부 현행	순원가	개선안	순원가
Ⅲ. 비배분비용	2,476,717,730,799	Ⅲ. 비배분비용	2,476,717,730,799
1. 지급수수료	483,897,540	Ⅳ. 비배분수익	4,318,380,972,736
2. 지급임차료	35,898,944		
3. 감가상각비	4,527,837		
4. 대손상각비	99,651,969,518		
5. 이자비용	633,317,777,498		
6. 평가손실	37,978,955,373		
7. 자산감액손실	17,755,325,542		
8. 자산처분손실	62,993,414,313		
9. 기타비용	1,624,495,964,234		
Ⅳ. 비배분수익	4,318,380,972,736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67,317,621,928		
2. 이자수익	2,047,023,812,031		
3. 평가이익	36,210,132,760		
4. 자산처분이익	828,947,284,083		
5. 기타수익	1,238,882,121,934		

자료: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실체별 재정운영표 개선안에 따른 기획재정부 재정운영표를 작성하면 <표 III-26>과 같다.

<표 III-26> 실체별 재정운영표 개선안(기획재정부)

(단위: 백만원)

구 분	FY2019			FY2018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부문별순원가	22,129,037	15,747,638	6,381,399	21,918,613	15,489,902	6,428,711
1. 재정·금융	21,195,048	15,569,346	5,625,703	20,448,702	15,346,519	5,102,184
2. 취약계층지원	262,371	5,624	256,747	272,997	9,831	263,167
3. 지방행정·재정지원	224,665	2,558	222,107	204,048	3,437	200,611
4. 외교·통상	311,860	148,821	163,039	298,289	110,212	188,077
5. 임업·산촌	49,850	1,912	47,938	46,293	963	45,330
6. 보훈	47,080	24	47,056	39,267	6	39,261
7. 사회복지일반	26,806	1,601	25,205	28,800	1,106	27,694
8. 물류등기타	11,193	17,637	(6,444)	13,008	17,332	(4,324)
9. 아동·보육	164	115	49	208	496	(268)
10. 예비비	-	-	-	567,000	-	567,000
III. 관리운영비			219,304			266,795
1. 인건비			94,550			92,422
2. 경비			124,754			174,373
III. 비배분비용			2,877,264			2,476,718
IV. 비배분수익			3,729,291			4,318,381
V. 재정운영순원가			5,748,675			4,712,851
VI. 비교환수익 등			(2,425,247)			1,903,945
1. 부담금수익			78,613			70,227
2. 제재금수익			8			69
3. 채무면제이익			53,793			50,096
4. 기타재원조달및이전			(2,557,660)			(2,024,337)
VII. 재정운영결과			8,173,922			6,616,796

자료: 저자 작성

다. 계정과목 체계 개편

재정운영표상 수익·비용 회계과목은 비교환수익을 제외하고 40개의 회계과목(Level III)과 167개의 관리과목(Level IV) 및 132개의 세부관리과목(Level V)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27〉 수익·비용 계정과목 체계

(단위: 개)

구분	비용	수익	계
회계과목(Level III)	32	8	40
관리과목(Level IV)	119	48	167
세부관리과목(Level V)	94	38	132

자료: 저자 작성

발생주의 도입 시 예산비목에 따라 계정과목을 신설함으로써 예산구분이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일반수용비 등 200번대 예산 관련 계정과목이 다수 회계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이 회계과목으로 공시되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는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재정운영표 및 성질별 재정운영표상에 정보이용자가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2018회계연도와 2019회계연도에 각 회계과목별 비용과 수익 금액을 분석하였다.

〈표 III-28〉 성질별 비용

(단위: 원)

계정과목(Lv. 3)	FY2019	FY2018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5,165,700,385,082	5,823,599,811,955
인건비	39,814,711,733,918	38,262,216,641,841
복리후생비	5,291,531,137,647	4,926,217,160,410
소모품비	1,840,968,487,191	2,039,973,840,514
인쇄비	198,553,624,878	204,270,549,678
광고선전비	82,080,640,017	84,980,411,635
지급수수료	3,091,250,812,960	2,909,286,666,805
세금과공과	1,027,260,586,871	1,016,404,397,609
수도광열비	1,091,829,417,000	1,119,397,531,520
지급보험료	85,512,727,061	76,305,028,602

〈표 III-28〉의 계속

계정과목(Lv. 3)	FY2019	FY2018
피복비와 급량비	2,274,333,827,412	2,135,602,949,092
교육훈련비	193,307,913,662	187,543,196,209
지급임차료	633,799,314,661	552,022,788,882
유류비	693,151,912,421	868,095,469,996
수선유지비	6,441,082,744,916	4,339,240,816,277
여비교통비	684,021,604,870	676,681,843,801
업무추진비	2,085,175,413,743	1,968,845,720,009
외주용역비	5,641,575,095,062	5,071,512,657,491
보전비	8,102,683,301,673	8,672,580,457,241
출연비	35,440,020,825,053	32,938,492,109,156
보조비	212,245,703,141,220	181,854,864,302,080
기타이전비용	131,747,908,082,180	122,065,390,127,040
감가상각비	16,379,922,386,901	15,791,475,950,723
대손상각비	4,777,821,831,115	6,019,983,368,824
이자비용	22,455,797,001,162	22,512,088,149,215
평가손실	5,452,731,768,149	6,574,921,917,809
자산감액손실	391,198,184,425	534,822,332,488
자산처분손실	2,504,744,032,324	2,200,420,228,521
국립학교운영비	63,689,038,130	53,499,470,510
연구개발비	2,041,037,422,558	1,787,132,975,188
기타비용	18,265,256,123,226	16,862,758,486,751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29〉 성질별 수익

(단위: 원)

계정과목(Lv. 3)	FY2019	FY2018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13,910,524,184,231	13,790,394,008,543
연금수익	66,276,335,926,903	61,493,349,709,218
보험수익	609,506,666,158	865,456,969,765
이자수익	16,895,444,654,230	16,718,342,247,092
평가이익	5,258,983,301,629	8,782,437,544,067
자산처분이익	14,778,754,129,936	17,687,931,054,356
보증수익	1,114,135,767,980	1,117,921,174,737
기타수익	22,649,356,574,886	26,299,347,896,815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30〉 기타비용(회계과목) 현황

(단위: 원)

계정과목	FY2019	FY2018
기타비용	18,265,256,123,226	16,862,758,486,751
외환차손	563,681,764,010	645,966,218,208
파생상품거래손실	737,944,416,955	1,174,408,606,592
정부외자산기부	399,439,719,849	128,433,769,793
자산폐기손실	916,281,064,367	1,053,486,205,553
채무상환손실	590,116,447,254	378,505,148,403
유산자산취득비	91,773,694,091	52,944,112,316
관리토지취득비	8,526,940	382,283,290
법인세비용	23,124,581,634	19,745,042,283
재해손실	5,210,698	10,680,763
잡손실	2,231,136,249,385	1,109,628,973,276
국채물가연동손실	12,521,914,520	218,905,220,06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4,274,278,725,878	3,796,625,895,487
전기과오납금반환금	148,075,105,842	66,290,606,251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1,263,535,823,140	1,312,607,309,305
기타비용예비비	580,000,000,000	567,000,000,000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	2,503,740,336,160	1,861,373,501,766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	-	119,883,113,053
퇴직수당충당부채전입액	3,753,551,404,054	4,124,619,877,659
소송충당부채전입액	162,659,143,665	220,137,189,718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전입액	13,381,994,784	11,804,732,975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31〉 기타수익(회계과목) 현황

(단위: 원)

계정과목	FY2019	FY2018
기타수익	22,649,356,574,886	26,299,347,896,815
배당금수익	7,058,585,761,838	7,109,723,601,379
외환차익	583,758,515,539	668,277,802,725
파생상품거래이익	978,055,652,529	2,843,567,446,938
충당부채환입	864,238,484,225	622,963,119,229
대손충당금환입/기타수익	162,092,787,755	311,478,024,127
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234,757,429,009	407,632,584,544

〈표 III-31〉의 계속

계정과목	FY2019	FY2018
채무상환이익	4,712,053,353	70,407,226,699
과오지급금회수금	107,152,074,510	96,550,474,150
지출금반납금	2,798,736,355,181	2,760,502,295,043
법인세환급금	408,038,600	-
보험차익	3,688,612,402	367,595,250
잡이익	2,434,251,665,658	2,660,570,834,487
구상이익	76,748,553,074	65,921,251,991
국채물가연동이익	9,251,480,000	1,049,680,000
감액손실환입	16,096,834,477	62,466,305,537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2,584,984,297,716	5,033,525,582,505
자산재평가손실환입	1,065,687,517,227	852,302,460,999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액	95,200,572,544	-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	3,335,520,276,797	2,588,749,069,850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유용한 정보와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회계과목을 개편하는 계정과목 체계 개편을 제안한다. 첫째, 일반수용비(210번대) 예산 관련 계정과목 등 금액적 중요성이 적은 계정과목을 관리과목으로 조정한다.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지급보험료, 피복비와급량비, 교육훈련비, 지급임차료, 국립학교운영비가 이에 해당한다. 단 정책적 의미나 국민 관심이 큰 유류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는 회계과목을 유지한다.

둘째, 보조비(212.2조원)의 하위 과목을 조정하여 회계과목으로 격상한다. 공공기관보조비(18.9조원), 민간보조비(8.8조원), 자치단체보조비(61.1조원), 지방재정교부금(57.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64.4조원)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기타이전비용(131.7조원)의 하위 과목인 사회보험비용(20.5조원)과 연금비용(107.6조원)을 회계과목으로 격상한다. 넷째, 기타비용(18.3조원)과 기타수익(22.6조원) 중 금액적 중요성 및 정보이용자 유용성을 고려하여 배당금수익(7.1조원), 전기오류수정이익(2.6조원), 전기오류수정손실(4.3조원)을 회계과목으로 격상한다.

4. 부속서류 위상 강화 및 다양한 정보 제공

가. 국세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국세징수활동을 수행하는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는 필수보충정보로 국세징수활동표를 공시하고 있다. 국세징수 중앙관서의 수익 왜곡 방지를 위하여 국세수익을 재정운영표에서 제외하고 국세징수활동표에 인식하는 것이며, 국가통합 시 국세징수활동표상 각 세목별 수익과 환급금 및 대손상각비 등이 재정운영표로 대체되고 필수보충정보가 삭제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상기 과정을 통해 국세수익이 재무제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는 재정운영표상 국세수익,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환입액 단 세 줄로만 표시되고 필수보충정보상 국세징수활동표에 공시되었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익의 세부 사항이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등 어디에서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국세, 관세 등 비교환수익 353.4조원 중 291.9조원이 국세수익으로, 전체 수익의 82.6%를 차지하는 국세수익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다는 문제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관서에서 국세징수활동표를 필수보충정보가 아닌 재무제표로 공시함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수익과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등 계정과목이 인식되고 있어 명세서가 아닌 재무제표 성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중앙관서의 수익 왜곡 우려에 따라 별도의 표에 표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할 적절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중앙관서에서 재무제표로 국세징수활동표를 공시하고 국가통합 시 재정운영표에 통합된 후에는 국세징수활동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국세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 국세징수활동표 개선

중앙관서의 수익 왜곡 방지를 위하여 국세수익을 재정운영표에서 제외하고 국세징수활동표에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중앙관서 결산 시 국세징수활동표를 재무제표로

보지 않고 별도 작성함에 따라 ‘미지급국세’를 유동부채로 인식하게 되어 재무정보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국세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국세징수활동표에 인식하고, 미수국세(채권), 대손충당금 등은 재정상태표에 인식함에 따라 대차 조정을 위하여 결산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수국세의 증가분만큼 대변에 추가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미지급국세’라는 대차조정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대차조정계정이 기타유동부채 하위계정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동부채 규모가 달라져 재무정보가 왜곡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총부채 17.7조원 중 국세징수활동표 작성을 위한 계정인 미지급국세가 13.8조원으로 78.0%를 차지하며, 관세청은 총부채 2.3조원 중 2.2조원으로, 95.7%를 차지한다.

이러한 재무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개선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국세징수활동표 작성을 위한 조정계정을 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미지급국세는 부채의 성격이 아니며, 미수국세(채권)의 증감에 따른 조정계정이므로 미수국세의 하위 차감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대안이다. 둘째는 국세징수활동표와 재정운영표를 통합하는 것이다. 국세징수 중앙관서의 수익 왜곡 우려가 있으나, 부채 등 재정상태의 왜곡이 이차적으로 발생하므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 등 행정관청 입장에서 수익과 성과가 대응되지 않는 만큼 수익의 왜곡이 성과의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의 왜곡보다 재정상태 왜곡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대안이다.

[그림 III-5] 국세징수활동표 조정 회계처리

시점	차변	대변
재무결산	미수국세의 증감 (국세징수활동표) 260	미지급국세 (재정상태표-부채) 260
	미지급국세 (재정상태표-부채) 26	대손충당금의 증감 (국세징수활동표) 26

구분	기초	기말	증감
미수국세	300	460	160
장기미수국세	0	100	100
미수국세대손충당금	(30)	(46)	(16)
장기미수국세대손충당금	0	(10)	(10)

[그림 III-5]의 계속

재정상태표 (20x1.12.31)		재정운영표 (20x1.1.1~12.31)	
미수국세	460	미지급국세	504
미수국세대손충당금	(46)		
장기미수국세	100		
장기미수국세대손충당금	(10)		
		대손상각비	0
		* 국서관련 대손상각비의 경우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않고 국세경수충당표에 반영된다.	

자료: 저자 작성

다. 성질별 재정운영표 개선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로 제공하는 재정운영표를 보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수익,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과목 수준으로 성질별로 공시하고 있다. 실체별 재정운영표와 동일하게 공시계정과목이 과다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고 재정운영표와 중복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질별 원가를 제공한다는 개념에 맞지 않게 이를 다시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수익,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개선방안은 크게 계정과목 체계 개편,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 중복 표시 삭제,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무제표화 등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앞서 실체별 재무제표 개선사항에서 두 가지를 이미 제시하였으므로 마지막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주 재무제표로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부처별 또는 기능별로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나라로는 미국과 캐나다가 있으며, 성질별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기능별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로는 뉴질랜드가 있다. 성질별 정보만 제공하는 국가는 영국, 호주, 일본 등이 있어 다수의 국가들이 아직 주요 원가 정보로 성질별 정보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2〉 주요 국가 재정운영표상 원가정보

구분	미 국	영 국	호 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 본	한 국
부처별	○	X	X	X	X	X	○
기능별	X	X	X	○	○	X	X
성질별	X	○	○	○	X	○	X

자료: 각국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는 성질별 원가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회계적으로 중요한 정보이면서 익숙한 정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수보충정보보다는 재무제표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두 가지의 재정운영표를 산출하는 방안과 현재의 부처별 원가는 유지하되 주석을 통해 성질별 원가정보를 공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라. 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실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의되며, 회계실체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로 국가의 결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합과정을 거쳐 결산보고서가 산출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실체별 또는 중앙관서의 재무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에 포함되는 중앙관서, 중앙관서에 포함되는 회계실체는 그 성격에 따라 특성이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합산 정보만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앙관서의 경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등 회계실체에 따라 성격이 상당히 다른데도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달리 각 기금을 제외한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는 공시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재무제표 또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무제표는 공시되지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기획재정부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일부를 차지하나 별도로 공시되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정상태표 양식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 결산서도 회계실체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Core Crown, Crown Entities, state-owned enterprises로 구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한다. 성격이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호주의 경우에도 일반정부, 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하여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재무제표에 추가 정보로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6] 지자체 재정상태표 양식

재정상태표												
해당연도 20××년×월×일 현재						직전연도 20××년×월×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원)												
과목	해당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자산												
I.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												
II.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												
III. 일반유형자산												
토지												
건물												
건설중자산												
...												
IV.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												
V.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												
VI. 기타비유동자산												
보통채												
유형자산												
자산 총계												
부채												
I.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실질기차입부채												
...												
II.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III. 기타비유동부채												
특정급여충당부채												
...												
부채 총계												
순자산												
I. 유동순자산												
II. 비유동순자산												
III. 기타순자산												
순자산 총계												
부채와 순자산 총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그림 III-7]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상태표

과 목		해당연도(2018년)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자 산							
1. 유동자산	293,615,466,317	114,191,174,311	133,196,683,005	129,940,120,407	(1,009,821,000)	669,933,623,040	
현금및현금성자산	30,203,805,456	52,079,142,245	51,241,676,795	120,121,261,504	0	253,645,886,000	
단기금융상품	230,000,000,000	58,797,804,370	80,078,161,819	0	0	368,875,966,189	
미수세금	22,972,353,040	0	0	0	0	22,972,353,040	
미수세금대손충당금	(565,258,660)	0	0	0	0	(565,258,660)	
미수세외수입금	8,347,011,970	2,435,880,230	14,828,300	1,081,975,430	0	11,879,695,930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234,311,510)	(58,295,930)	(148,280)	0	0	(292,755,720)	
단기대여금	4,971,300	152,485,500	210,080,850	0	0	367,537,65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49,710)	(1,524,860)	(2,100,810)	0	0	(3,675,380)	
제조자산	166,032,867	0	0	6,157,843,674	0	6,323,876,541	
기타유동자산	2,720,911,564	785,682,756	1,654,184,331	2,579,039,799	(1,009,821,000)	6,729,997,450	
2. 무형자산	142,599,838,434	3,424,299,730	92,737,415,500	0	(204,531,006,530)	34,230,547,134	
장기대여금	4,237,942,834	955,032,050	92,664,056,060	0	(80,000,000,000)	17,857,030,944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3,044,930)	(9,550,320)	(126,640,560)	0	0	(139,235,810)	
장기투자증권	14,842,032,000	0	200,000,000	0	0	15,042,032,000	
기타무형자산	123,522,908,530	2,478,818,000	0	0	(124,531,006,530)	1,470,720,000	
3. 일반유형자산	385,739,067,541	138,620,552,841	3,042,700,769	0	0	527,402,321,151	
토지	110,075,114,236	72,866,137,430	0	0	0	182,941,251,666	
입목	969,125,908	0	0	0	0	969,125,908	
건물	208,383,801,623	62,990,144,023	0	0	0	271,373,945,646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7,936,026,727)	(5,554,598,671)	0	0	0	(33,490,625,398)	
구축물	31,863,306,710	2,857,809,140	1,888,076,050	0	0	36,609,191,900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12,577,799,450)	(230,326,495)	(447,208,105)	0	0	(13,255,334,050)	
기계장치	8,359,756,157	9,395,000	1,151,874,500	0	0	9,521,025,657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4,108,597,346)	(2,896,791)	(355,272,084)	0	0	(4,466,766,221)	
차량운반구	25,594,999,385	3,138,835,250	0	0	0	28,733,834,635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2,438,117,403)	(363,119,404)	0	0	0	(12,801,236,807)	
집기비품	61,919,228,042	2,083,398,620	1,187,396,370	4,750,000	0	65,194,773,032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33,698,204,314)	(280,829,281)	(382,165,962)	(4,750,000)	0	(34,365,949,557)	
임차계량자산	654,869,920	0	0	0	0	654,869,920	
임차계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654,868,920)	0	0	0	0	(654,868,920)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9,332,479,720	1,106,604,020	0	0	0	30,439,083,740	
4. 주민편의시설	1,147,778,672,089	3,385,095,397	742,950,752	0	0	1,151,906,718,238	
도서관	11,397,527,510	334,699,160	0	0	0	11,732,226,670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1,787,821,990)	(68,623,369)	0	0	0	(1,856,445,359)	
주차장	47,087,099,580	2,811,438,840	0	0	0	49,898,538,420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1,705,814,067)	(34,839,139)	0	0	0	(1,740,653,206)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8회계연도 결산서』, 2019, p. 555.

[그림 III-8] Balance sheet by sector(호주)

Note	General Government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Public financial corporations		Eliminations and netting(a)		Australian Government	
	2019 \$m	2018 \$m	2019 \$m	2018 \$m	2019 \$m	2018 \$m	2019 \$m	2018 \$m	2019 \$m	2018 \$m
Revenue from transactions										
Taxation revenue	458,203	428,977	-	-	-	-	(312)	(8)	458,891	428,971
Sales of goods and services	12,488	9,770	15,844	11,770	703	734	(1,195)	(1,190)	27,730	21,114
Interest income	4,455	3,317	43	63	2,418	2,183	(890)	(789)	6,028	4,774
Dividend income	9,822	5,088	-	9	98	74	(1,893)	(922)	7,797	4,247
Other	10,722	10,971	177	476	150	151	(517)	(843)	10,538	10,755
Total revenue	493,490	456,121	15,864	12,318	3,435	3,142	(4,807)	(3,720)	507,982	467,861
Expenses from transactions										
Gross operating expenses										
Wages and salaries	19,775	18,214	4,302	4,107	200	190	-	-	24,337	23,571
Superannuation	9,130	7,791	480	493	82	81	(9)	(9)	9,855	8,359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9,013	8,790	3,578	2,824	75	70	-	-	12,866	11,884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115,308	100,324	10,282	7,882	487	425	(1,405)	(1,413)	124,853	107,218
Other operating expenses	7,863	6,721	745	578	94	59	(8)	(5)	8,728	7,353
Total gross operating expenses	167,123	142,840	19,432	15,944	978	825	(1,420)	(1,424)	180,076	158,183
Superannuation interest expense	9,444	9,240	-	-	-	-	-	-	9,444	9,240
Interest expense	18,073	17,811	1,127	702	1,181	1,272	(801)	(789)	10,470	18,908
Current transfers										
Current grants	147,082	139,428	-	-	-	-	(28)	4	147,056	139,430
Subsidy expenses	11,501	11,224	-	-	-	-	(138)	(154)	11,363	11,070
Personal benefits	125,324	127,140	-	-	-	-	-	-	125,324	127,140
Tax expenses	-	-	188	44	10	9	(268)	(40)	-	-
Total current transfers	284,897	277,792	296	44	20	2	(296)	(195)	284,643	277,642
Capital transfers										
Mutually agreed write-downs	1,243	1,990	-	-	-	-	(107)	(417)	1,243	1,990
Other capital grants	9,955	10,587	-	-	-	-	-	-	9,948	10,150
Total capital transfers	11,198	12,577	-	-	-	-	(107)	(417)	11,091	12,176
Total expenses	484,647	460,280	20,776	16,630	2,089	2,095	(2,788)	(2,824)	504,724	476,243
Net operating balance	8,843	(4,159)	(4,912)	(4,312)	1,346	1,043	(2,919)	(894)	3,258	(8,382)

(a) The eliminations and netting column includes the elimination of inter-sector transactions and the netting of gains and losses across sectors.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p. 41.

상기 지자체 및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에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는 행정형 회계로 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은 사업형회계로 구분하여 국가재무제표 금액을 컬럼으로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I-33> 회계실체별 재정운영표(예시)

구분	행정형회계		사업형회계		내부거래, 비교환수인 대체 등	국가통합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 특별회계	기금		
프로그램 총원가	180.4	37.1	6.6	122.9	△8.2	338.8
프로그램수익	0.3	0.4	6.5	96.6	△1.6	102.2
프로그램수원가	180.1	36.7	0.1	26.3	△6.6	236.6
관리운영비	22.0	0.6	0.5	0.9	-	24.0
비배분비용	19.8	6.7	0.5	10.3	△9.2	28.1
비배분수익	10.3	8.4	0.3	40.7	△15.6	44.1
재정운영수원가	211.6	35.6	0.8	△3.2	△0.2	244.6
비교환수익 등	-	-	1.2	35.8	237.0	274.0
재정운영결과	211.6	35.6	△0.4	△39.0	△237.2	△29.4

자료: 저자 작성

〈표 III-34〉 회계실체별 재정상태표(예시)

(단위 : 조원)

구분	행정형회계		사업형회계		내부거래 등	국가통합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 특별회계	기금		
자산	672.0	292.0	16.8	1,343.4	(567.4)	1,756.8
유동자산	44.3	8.9	5.6	315.0	(56.5)	317.3
투자자산	66.8	50.7	0.5	1,007.4	(509.5)	615.9
일반유형자산	466.4	24.2	9.3	14.7	-	514.6
사회기반시설	91.7	208.1	0.3	-	-	300.1
무형자산	0.9	0.1	0.0	0.1	-	1.1
기타비유동자산	1.9	0.0	1.1	6.2	(1.4)	7.8
부채	234.1	9.5	5.2	1,545.3	(581.4)	1,212.7
유동부채	43.8	4.7	3.7	144.2	(77.3)	119.1
장기차입부채	180.6	3.5	0.1	700.5	(502.8)	381.9
장기충당부채	1.9	0.1	0.1	680.2	-	682.3
기타비유동부채	7.8	1.2	1.3	20.4	(1.3)	29.4
순자산	437.9	282.5	11.6	(201.9)	14.0	544.1

자료: 저자 작성

5. 정보이용자 이해 가능성 제고

가. 사회보험상태표 신설

사회보장성기금과 같이 회계실체의 역할과 목적이 다른 회계실체가 단순 합산된 국가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현금주의 결산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수지와 별도로 발표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금이 누적되고 있어 국가자산 중 그 비중이 크나 국민연금 지급이라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자산과는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의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기

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상태표(가칭)를 신설하여 추가로 재무제표로 제공하는 것이다. 연금(보험)비용, 자산처분이익 등 사회보험실체의 재무정보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정을 재분류해서 제공한다면 미국의 사회보험보고서(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와 같이 유용한 재무제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첫 번째 대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재무제표에서 사회보험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제외하고 공시하는 방안이다. 자산 600조원 감소, 부채 100조원 증가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수목적으로 사용될 자산과 부채는 제외하고 공시한다는 점이 특징이 될 것이다.

〈표 Ⅲ-35〉 사회보험상태표 작성 예시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1. 유동자산	193,396,855	8,670,069	1,869,611	1,923,464	205,859,999
2. 투자자산	542,790,746	12,302,116	7,611,292	21,013,958	583,718,112
3. 일반유형자산	-	276,870	1,096,382	577,766	1,951,018
4. 무형자산	-	4,182	590	-	4,772
5. 기타비유동자산	587,754	196,247	1,899	6	785,906
자산 계	736,775,355	21,449,484	10,579,774	23,515,194	792,319,807
1. 유동부채	84,409	18,126	93	144,599	247,227
2. 장기차입부채	-	705,497	-	-	705,497
3. 장기충당부채	-	-	19,422	547	19,969
4. 기타비유동부채	37,102	21,333	18,697,873	5,064,289	23,820,597
부채 계	121,511	744,956	18,717,388	5,209,435	24,793,290
순자산 계	736,653,844	20,704,528	△8,137,614	18,305,759	775,664,131
1. 당기 비용	51,285,271	4,401,152	17,430,734	6,813,738	79,930,895
(1) 연금(보험)비용	47,800,056	3,630,623	14,375,133	6,144,740	71,950,552
(2) 보조비	-	-	2,208,600	82,923	2,291,523
(3) 자산처분손실	1,763,592	547,006	4,252	14	2,314,864
(4) 파생상품	422,722	16,512	-	-	439,234
(5) 외환차손 등	452,946	102,420	-	-	555,366
(6) 기타	845,955	104,591	842,749	586,061	2,379,356
2. 당기 수익	67,277,108	5,236,100	12,091,220	8,100,659	92,705,087

〈표 III-35〉의 계속

구 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1) 연금(보험)수익	47,800,056	4,011,955	11,350,108	7,698,141	70,860,260
(2) 자산처분이익	5,839,935	467,802	351,524	236,293	6,895,554
(3) 배당금수익	5,015,708	317,266	-	-	5,332,974
(4) 이자수익	7,458,595	265,774	17,149	31,915	7,773,433
(5) 파생상품	606,881	23,610	-	-	630,491
(6) 외환차익 등	410,722	135,141	-	-	545,863
(7) 기타	145,211	14,552	372,439	134,310	666,512
1. 순자산변동	97,872,771	2,248,404	△5,213,888	2,104,819	97,012,106
(1) 투자증권평가이익	55,401,432	1,069,071	223,814	1,186,687	57,881,004
(2) 투자증권평가손실	△1,435,543	△347,987	-	-	△1,783,530
(3) 재정운영결과	△15,991,837	△834,948	5,436,354	△918,131	△12,308,562
(4) 기타	25,043,959	△3,602	△1,348	1	25,039,010

자료: 저자 작성

〈표 III-36〉 재정상태표 개선안(사회보험 별도 공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FY(개선안)		2019FY(현행)	
1. 유동자산	257,511,747	15.9	458,910,641	20.0
2. 투자자산	434,233,879	26.9	913,965,335	39.7
3. 일반유형자산	575,672,532	35.6	577,623,550	25.1
4. 사회기반시설	334,866,353	20.7	334,866,353	14.6
5. 무형자산	1,531,188	0.1	1,535,960	0.1
6. 기타비유동자산	11,744,200	0.7	12,530,106	0.5
자산 계	1,615,559,899		2,299,431,945	
1. 유동부채	157,734,105	8.6	153,520,227	8.8
2. 장기차입부채	650,214,013	35.6	546,932,854	31.4
3. 장기충당부채	1,000,316,662	54.7	1,000,336,631	57.4
4. 기타비유동부채	19,115,594	1.0	42,936,191	2.5
부채 계	1,827,380,373		1,743,725,902	
순자산계(사회보험 제외)	△211,820,474	-	-	-
사회보험 순자산	767,526,517	-	-	-
순자산 계	555,706,043	-	555,706,043	-

자료: 저자 작성

나. 비교환수익명세표(가칭) 신설

중앙정부는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않는 비교환거래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 민간과 구분되는 차별성이다. 사회복지, 국방, 교육 등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정보와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 수익 정보는 연관성이 높지 않으며, 연관성이 높은 일부 수익은 프로그램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하여 프로그램순원가로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함께 공시하는 것은 민간과는 달리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많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세금 포함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재무제표에서 공시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원가 정보와 수익 정보를 별도의 재무제표에서 공시하고 있는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

재정운영정보는 재정운영표를 통해, 국세수익 등 비교환수익과 관련된 정보는 비교환수익명세표를 통해 분리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 제고를 기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표 III-37〉 현행 비교환수익 공시내역

(단위: 원)

구 분	2019FY	2018FY
Ⅲ. 비교환수익 등	351,731,798,156,239	351,144,016,295,243
1. 국세수익	291,845,619,606,666	294,910,486,322,993
(1) 국세수익	298,416,702,884,333	301,414,206,980,945
(2) 대손상각비	6,574,563,880,424	6,503,725,150,164
(3) 대손충당금환입	3,480,602,757	4,492,212
2. 부담금수익	17,541,831,461,238	17,598,972,899,824
3. 제재금수익	4,596,050,997,667	5,704,809,286,834
4. 사회보험수익	19,048,249,004,970	17,903,040,191,660
5. 채무면제이익	53,792,936,500	55,111,648,921
6. 기타비교환수익	527,192,109,434	378,928,808,357
7.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8,119,062,039,764	14,592,667,136,654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2020, pp. 1070~1071.

〈표 III-38〉 비교환수익명세표(안)

(단위: 원)

구 분	2019FY	2018FY
I. 국세수익	291,845,619,606,666	294,910,486,322,993
1. 소득세수익	88,962,576,371,960	89,528,460,858,604
2. 법인세수익	72,757,692,902,755	72,951,019,491,709
3. 부가가치세수익	77,471,400,714,983	77,498,505,524,963
4. 기타국세수익	59,225,032,894,635	61,436,221,105,669
5. 대손상각비	△6,571,083,277,667	△6,503,720,657,952
III. 국세 외 비교환수익	41,767,116,509,809	41,640,862,835,596
1. 사회보험수익	19,048,249,004,970	17,903,040,191,660
2. 부담금수익	17,541,831,461,238	17,598,972,899,824
3. 벌금수익	2,532,212,995,270	3,062,937,314,150
4. 가산금수익	1,498,414,660,871	1,761,000,190,621
5. 기타비교환수익	1,146,408,387,460	1,314,912,239,341
III. 자원조달및이전	18,119,062,039,764	14,592,667,136,654
1. 무상이전수입	12,671,750,658,588	9,840,624,522,480
2. 기타자원조달	5,905,302,791,460	5,390,118,324,486
3. 무상이전지출	△25,152,570	△234,968,340
4. 기타재원이전	△457,966,257,714	△637,840,741,972
IV. 재정운영순원가	394,711,319,311,535	343,375,446,753,279
V. 재정운영결과	42,979,521,155,296	△7,768,569,541,964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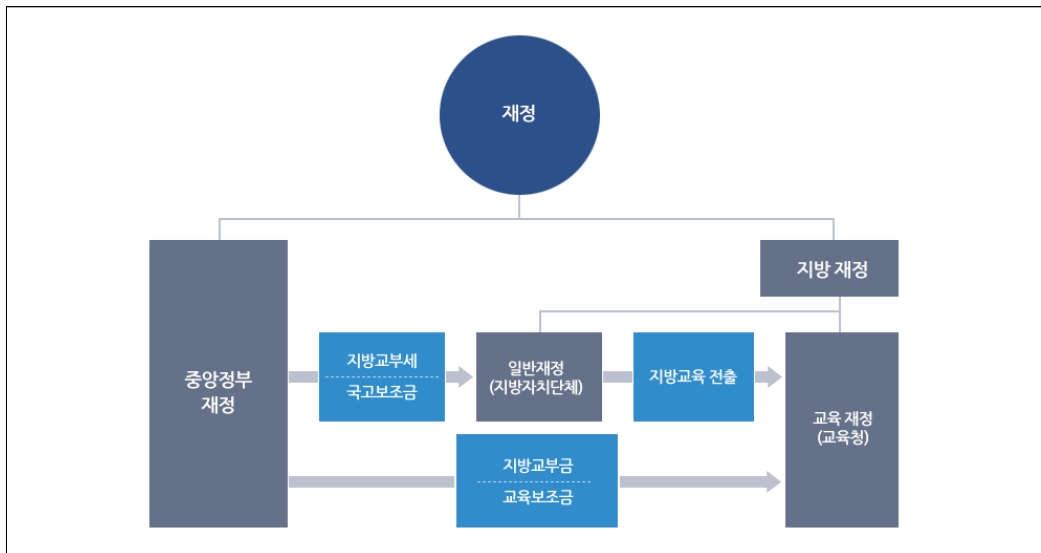
다. 지방재정교부금 공시 개선

중앙정부가 징수한 국세 중 일정 비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금액은 중앙정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성격보다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징수한 금액을 이전해 주는 도관 성격이 강하며, 일정 비율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중앙정부의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걷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지방에 교부할 때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되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2019회계연도와 2018회계연도에 각각 57.5조원과 49.0조원으로 전체 재정부운영순원가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금액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중앙정부의 원가와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국세수익의 차감 항목 또는 비교환수익 중 정부간이전비용 등으로 인식하고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수익 인식 개념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원가가 아닌 비교환수익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방재정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회계연도와 2018회계연도에 각각 64.4조원과 56.3조원을 프로그램원가로 인식하였다.

[그림 Ⅲ-9] 우리나라 재정 현황



자료: 열린재정, 「우리나라 재정현황」,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theme/themeProfile.do>, 검색일자: 2020. 12. 21.

IV. 자문 TF 운영

재무보고 개선 과제에 대한 본 프로젝트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연구진은 자문 TF를 구성하고 3개월간 운영하였다. 자문 TF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국가회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8명을 위촉하여 구성하였으며,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하여 5번의 서면 의견 수렴과 한 번의 대면회의로 진행되었다.

〈표 IV-1〉 연구자문 TF 위원 현황

연번	성명	소속	자격
1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2	유승원	경찰대학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3	윤재원	홍익대학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4	이아영	강원대학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5	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가회계자문위원회
6	정도진	중앙대학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7	지현미	계명대학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8	최연식	경희대학교	국가회계자문위원회

자료: 저자 작성

다음은 각 과제별 자문 TF 위원의 주요 의견을 간추린 내용이다.

1. 재정상태표 간소화

가. 차감계정 공시 제외

○ 찬성(6명)

- 본문 정보의 제공 분량이 과다한 것은 정보유용성을 저해할 수 있음. 다만, 전체 차감계정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여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사용수익권 정보는 해당 자산을 이해하는 데 중요성이 큰 항목으로 판단됨
-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른 주식 정보가 많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임
- 재무공시의 투명성 제고를 최상의 가치로 설정한다면 재무제표의 간소화는 주식 등의 상세화로 보완하여야 함

○ 반대(2명)

- 일괄 공시 제외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의미, 정책적 필요, 국민적 관심, 금액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계정과목 개편

① 610조원 규모 국민연금 운용자산 신설(찬성 6, 반대 2)

- (찬성) 국민적 관심과 금액적 중요성 고려하에 신설하는 것에 동의
- (찬성) 국민연금 운용자산은 다른 금융자산과 성격이 상이
- (찬성) 국민연금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공적연금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
- (반대) 재무제표 본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보다 주식에 부문별 정보로 공시하는 것이 적절

② 투자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찬성 5, 반대 3)

- (찬성)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공정가치 평가와 투자목적 유무 여부의 연결은 반대함
- (찬성)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투자자산의 경우 유동과 비유동 사이에 분류 표시의 일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반대) 민간에서도 금융상품과 금융자산의 혼돈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부채와의 연계도 고려하여야 함
- (반대) IFRS상 금융상품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산부분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③ 일반유형자산의 회계과목을 현행 9개에서 4개로 간소화(찬성 8)
 - (찬성) 다만 체계적인 주식 공시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④ 무형자산은 기타비유동자산의 하위(관리과목)로 구분(찬성 6, 반대 2)
 - (찬성) 각 중앙부처 수준에서 무형자산이 없는 부처가 상당수이며, 그 비중이 미미함
 - (반대)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기간 간 또는 실체 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유지
- ⑤ 장기차입부채상 국채 및 공채의 하위 계정과목(관리과목) 신설(찬성 6, 반대 1)
 - (반대) 자기국채 및 자기공채를 고려하였을 경우 간소화 취지에 반하며, 국고채권 비중에 비하여 외평채, 공채 등의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효과가 미비
- ⑥ 사회보험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찬성 7)
 - (찬성) 성격이나 금액에서 중요한 항목은 가능한 '기타'가 아닌 그 계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찬성) 재정건전성 이해 측면에서 필요
- ⑦ 장기충당부채상 연금충당부채와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조정(찬성 8)
 - (찬성) 다만,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계정과목으로서 일반적 대표성을 가지므로 하향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

다. 재무제표 작성 단위 변경

- 찬성(8명)
 - 실무자 및 정보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단위금액으로 조정
 - 해외 비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금액 표기 방식이 바람직
 - 다만 주식의 경우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할지, 큰 단위로 표시함에 따라 공시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은 원단위를 유지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

2. 국가 재정운영표 간소화

가. 중앙관서 통합

- 찬성(1명)
 - 통합정보는 조직별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단위별 정보보다 유용성이 높고 인지과부하를 완화하여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조직성격상 행정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도표시 기관 중 금액과 사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현재, 선관위, 인권위)은 하단에 기타항목으로 묶어 기재하고, 주석에 세부내용을 제공하는 방안 고려
- 반대(7명)
 - 부처 하위의 청을 통합하는 것은 합리적이나, 감사원·금융위원회 등을 통합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한 개선안이 아님
 - 조직체계상 하위기관인 경우에도 상위기관과의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를 수 있음
 - 현행을 유지하되 나열하는 순서는 원칙을 정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 국정원, 방통위 등 이질적 성격의 중앙관서를 통합함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 저하가 우려됨
 - 56개가 25개가 되어 개수는 크게 줄어드나, 페이지 수를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함
 - 형식적 통합이 실질을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나. 분야별 원가정보 제공

- 1안) 현 재정운영표를 대체(3명)
 - (16대 분야) 세출예산과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16대 원가 정보 제공 필요. 12대 분야는 예산 홍보자료 기준으로 자의적 해석과 인식이 가능하며, 향후 변경 가능성도 큼
 - (12대 분야) 예결산 관련 보도·홍보자료에서 활용하는 그 취지를 반영하고, 다른 분야와 이질적인 예비비를 고려하였을 때 12대 분야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2안) 추가적으로 재정운영표를 신설(2명)
 - 재정운영표의 핵심은 국가 기능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예비비 제외 15대 분야)
-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주석으로 제공(3명)
 - 현 재정운영표가 제공하는 정보도 유용하고, 비교가능한 재정운영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는 어려움

다. 내부거래 정보 반영

○ 찬성(5명)

- 내부거래 제거 후의 순액으로 공시하고 내부거래의 상세한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적절함. 내부거래는 제거한 순액이 중앙관서별 정확한 원가정보로 볼 수 있음
- 정확한 원가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내부거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비교환수익의 공시방법과 동일하게 제거 후 금액으로 공시하는 것이 재정운영표상 수익과 비용 표시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확한 원가정보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임
- 예산사업의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자원의 순가치라는 순원가 개념에 적합한 회계정보 산출을 위해서 순원가 산정 시 내부거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

○ 반대(2명)

- 중앙관서의 재정운영순원가와 일치시키는 현재의 방향을 유지하되 내부거래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 보완
- 중앙관서와 국가결산보고서의 숫자가 일치되어야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제고됨. 정확한 원가가 내부거래 제거 전인지 후인지 논의 필요

3. 실체별 재정운영표 간소화

가. 프로그램원가

- (1안)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원가를 부문원가로 개편(2명)
 - 중앙관서별 프로그램 수가 많아 가독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국가 재무제표의 활용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
 - 원칙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 및 결산 실무의 효율성 관점에서 1안 지지
 - 다만 부문수가 1~2개로 적은 중앙관서의 경우, 부분 추가 개편 시 정보량이 저하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업무 성격, 역할 등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문의 개념 및 분류를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
- (2안) '부' 단위 중앙관서만 부문원가 공시(없음)
- (3안) 프로그램 개수(예: 10개 이상)를 기준으로 부문원가 공시(1명)
 - 획일성보다는 목적적합한 프로그램원가가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유지(5명)
 - 프로그램은 기본적 분석 단위이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며, 주석을 통해 원가 활용을 위한 단위사업 정보 제공이 필요
 - 부문별 분류는 국가의 중 기능에 따른 분류로 분류 폭이 너무 큼
 - 프로그램은 각 부처 예산 집행상황 및 모니터링의 기본단위임

나.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 찬성(8명)
 -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동의
 - '비교환수익 등'도 동일한 취지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동의하나,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의 정의, 예시 및 정책적 의미에 대한 정보, 포괄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필요

다. 계정과목 체계 개편

- 일반수용비 관련 계정과목 관리과목 조정
 - 금액적 중요성 외 정책적 의미나 국민관심이 큰 계정과목은 회계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 관리과목으로 격하할 경우 기타비용으로 포괄되지 않도록 명칭에 대한 고려 필요
 - 재정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항목으로 개선안의 순편익이 크지 않음
 -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요한 왜곡이 없는지 파악한 후에 결정 필요
- 보조비 하위 계정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 하위 관리과목으로 설정할 만한 구분항목이 적절히 도출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재정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음
- 기타이전비용 하위 계정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주석 공시 여부 검토 필요
 -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과목은 주석에서 상세보고 필요
- 기타의견
 - 금액적 크기(10조원 이상, 또는 총비용의 5% 등)를 고려하지 않은 정성적인 기준은 추후 계정과목 개편이 다시 요구될 경우 문제 발생 우려
 - 계정과목 명칭에 대해 직관적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작명 필요

4. 부속서류 위상 강화 및 다양한 정보 제공

가. 국세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2안)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에 국세징수활동표를 주석으로 제공(7명)
 -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실체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를 나타낸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할 때, 국제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이 해당 중앙관서의 재무성과(수익)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 국세수익이 일부 중앙관서에만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재무제표'보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시하는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
 - 국세수익 정보는 국가결산보고서의 'I. 결산총평'이나 'II. 세입세출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현금주의 결산정보가 발생주의 결산의 주요 재무제표로 제공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국제징수기관은 국제징수활동을 위탁받아 수행하나, 국세수익으로 징수된 현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를 신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로 보아 주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함
 - 현행 재정운영표와 국제징수활동표를 유지하고, 국세수익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나. 국세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1안) 국제징수활동표 작성을 위한 조정계정을 변경(3명)
 - 미지급국세는 부채의 성격이 아니며, 미수국세의 증감에 따른 조정계정이므로 미수국세 하위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
 - 국세청 결산조정 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지급국세(재정상태표 항목)'는 해당 중앙관서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일반적인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함
 - 중앙관서의 관리책임과 재무제표상의 자산 및 부채로 표시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중앙관서 관리책임의 표시방법은 주석 등 다른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을 것임
 - 미지급국세는 일반적인 부채를 의미하므로 자산차감계정에 알맞은 명칭으로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1안에 찬성
 - 국제징수활동정보는 매회계기간 단위의 성과를 보고하는 결산서로서 유량(flow) 개념임을 고려할 때, 관련 중앙관서의 수익 정보가 왜곡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국세징수 관련 채권·채무 등 저량(stock) 정보까지 국제징수활동표에 포괄하는 것이 적합한지, 혹은 가능할지 의문

- 조정계정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정계정'의 경제적 의미를 회계적으로 보다 적절히 표시할 것으로 기대함
- (2인)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로 통합(1명)
 - 국가 재무제표를 기업 재무제표와 유사하게 가져가는 것이 정보이용자의 편이나 전문가 양성 측면에서 도움이 됨
- 현행 국세징수활동표 유지(1명)
 - 국세징수활동표와 재정운영표를 통합할 경우 국세징수활동표의 본래 목적인 수익 왜곡 방지가 불가능
- 기타 의견(1명)
 - (1인)과 (2인)의 경우 모두 단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활동표에 국세관련 모든 계정과목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에 찬성
 - 재정운영표의 왜곡방지 논리를 재정상태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국세징수활동표와 재정운영표를 통합하는 것은 중앙부처 차원의 정보 왜곡이 심화되며 국고통일원칙이라는 정부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1인)의 경우는 (2인)에 비해 차선택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으며 미수국세의 조정계정을 주석을 통해 충분히 공시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다. 성질별 재정운영표 개선

-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주석 공시하는 방안을 지지(6명)
 - 기본 재무제표의 형식이 기업 재무제표와 이질화되는 것을 최소화
 - 주 재무제표의 종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가독성 저하를 가져옴
- 재정운영표의 구조는 정보이용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성질별, 기능별 등으로 구성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1명)

라. 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 찬성(3명)
 -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통해 회계실체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
 - 지자체와 동일하게 중앙관서도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찬성
- 반대(4명)
 -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정책적 의미가 거의 없음
 - 회계실체별 결산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효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제공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중앙관서 수준의 실체별 재무정보는 각 중앙관서의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공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
 - 중앙관서장조차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시 시기상조로 판단됨
 - 별도로 제공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음(필요하다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정보이용자 이해 가능성 제고

가. 사회보험상대표 신설

- 찬성(3명)
 - 추가적인 사회보험상대표 제공은 유용한 정보제공으로 의미가 있음
 - 국제기구도 사회보험을 별도의 제도단위(institution)로 고려하기에 별도 재무제표 신설에 찬성
 - 다만 사회보험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건강보험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상대표에서 각 기금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보여주는 것은 각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반대(5명)
 - 개선에 소요되는 노력에 비해 별도 공시의 효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사회보장사업 역시 국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사업 중 하나이므로 국가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사회보장성기금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보다, 통합정보를 일상행정부문과 사회보장성기금부문으로 구분한 부문별 정보를 제공하면 유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비교환수익명세표서(가칭) 신설

- 찬성(1명)
 - 사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부처 재정운영표에서 비교환수익을 제외하는 경우 징수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반대(7명)
 - 재정운영표를 비교환수익을 총액으로 표시하는 분야별 국가재정운영표로 대체하고, 부속명세서로 비교환수익 명세서를 공시하는 방안 제안
 - 재정운영표에서 분리할 시 재정운영결과의 산출 과정을 제시하기 어려움
 - 비교환수익 명세서를 재무제표의 하나로 격상함으로써 얻게 될 추가적인 효익이 명확하지 않음
 - 재정운영과 수익정보가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경우 국가재무정보의 한계점이자 특성이라고 판단되어, 연관성만으로 정보의 분리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음

- 교환, 비교환에 대한 IPSAS의 개념이 완전히 변경되고 있으므로 비교환수익 비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현행 재정운영표 본문에 부처별 순원가 항목을 줄이고, 비교환수익의 주요항목은 추가하여 간소화하고, 분야 및 성질별 순원가와 비교환수익의 상세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 지방재정교부금 공시 개선

○ 찬성(3명)

- 원가를 정확히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개선안 동의
- 국세수입이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가 확실한 금액은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지방재정교부금의 성질상 정부 간 이전비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반대(5명)

- 총액주의에 위배되므로 반대
-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수익과 원가로 각각 인식하는 것이 타당
- 교부세는 국가가 징수역할을 대행해 주는 것으로서 징수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고, 징수한 금액을 지자체에 교부해 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임
- 지방재정교부금과 같이 '도관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과 원가에 관한 정보를 총액으로 공시하는 것이 유용함
- 지방재정교부금은 법적으로 중앙정부의 자원으로 정책적 관점에서 지자체에 이전하는 여러 자원 중 하나이므로 현행대로 원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부 계정에 대해서만 이런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 유사한 계정에 대한 개선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

V. 결론 및 시사점

현재의 재무제표 양식은 2009년 3월 기획재정부령으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공표되면서 별지 서식으로 규정된 이후, 2015년 주석 번호를 추가하는 개정 이외에는 변함없이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지난 10년이 발생주의를 도입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발생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재무제표의 산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양질의 재무정보를 생산하고 정보이용자에게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여전히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과연 활용이 가능한지, 보다 근본적으로 산출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정책 목적의 재정 의사 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인 국가결산보고서의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발생주의 도입 주요 6개국의 결산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16개의 소과제를 쟁점사항으로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TF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점과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절차를 거쳤다. 이 중 다수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얻은 대안을 모아 실제 재무제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프로젝트 이후에는 재무제표 개선안에 따른 실제 결산 금액을 반영한 '다시 쓰는 재무제표(가칭)'를 공표하여 전문가 및 국회, 공무원, 언론,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재무제표에 한정된 본 프로젝트를 확장하여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결산개요 개선을 진행하려 하며 나아가 재정지표 보고서 발간, 감사의견 제출, 대국민보고서 등으로 재무보고 개선 프로젝트를 확장하려는 계획에 있다.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2020.
-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2019. 8. 29.
- 대한민국 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0.
- 세종특별자치시, 『2018회계연도 결산서』, 2019.
- 열린재정, 『2019회계연도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2020.
- _____, 「우리나라 재정현황」,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theme/themeProfile.do>, 검색일자: 2020. 12. 21.
- 청와대, 「정부조직도」, <https://www1.president.go.kr/about/government-organization>, 검색일자: 2020. 7. 15.
-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0.
- Government of Canada, *Public Accounts of Canada 2019*, 2019.
- Government of New Zealand, *Financial Statements 2019*, 2019.
-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9*, 2020.
- 日本 財務省, 『平成30年度 国の財務書類(一般会計特別会計)』, 2020.

부록 1. 각 국가별 재무제표

국가별 순서

1. 미국	79
2. 캐나다	86
3. 일본	90
4. 영국	95
5. 호주	100
6. 뉴질랜드	113



국가별 재무제표(미국) 1. Statement of Net Cost

United States Government Statement of Net Cost for the Year Ended September 30, 2019					
(In billions of dollars)	Gross Cost	Earned Revenue	Subtotal	(Gain)/Loss from Changes in Assumptions	Net Cost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341.4	119.1	1,222.3	-	1,222.3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101.2	0.3	1,100.9	-	1,100.9
Department of Defense	813.6	44.2	769.4	139.0	908.4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364.7	5.1	359.6	58.0	417.6
Interest on Treasury Securities Held by the Public	403.6	-	403.6	-	403.6
Department of the Treasury.....	181.0	25.3	155.7	-	155.7
Department of Agriculture	149.1	8.3	140.8	-	140.8
Department of Education	153.9	31.9	122.0	-	122.0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118.5	24.1	94.4	0.3	94.7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82.2	1.1	81.1	-	81.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77.0	14.0	63.0	0.9	63.9
Department of Energy	59.3	5.7	53.6	-	53.6
Department of Labor	40.5	-	40.5	-	40.5
Security Assistance Accounts	38.6	-	38.6	-	38.6
Department of Justice	40.8	3.5	37.3	-	37.3
Department of State	33.9	4.6	29.3	0.7	30.0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9.6	1.8	27.8	-	27.8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21.0	0.2	20.8	-	20.8
Department of the Interior	21.1	2.6	18.5	-	18.5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2.2	0.1	12.1	-	12.1
Railroad Retirement Board.....	12.1	-	12.1	-	12.1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11.2	0.4	10.8	-	10.8
Department of Commerce.....	13.8	3.6	10.2	-	10.2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8.8	0.3	8.5	-	8.5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35.7	27.8	7.9	-	7.9
National Science Foundation	7.3	-	7.3	-	7.3
U.S. Postal Service	77.5	70.2	7.3	-	7.3
Smithsonian Institution	1.5	0.4	1.1	-	1.1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0.5	-	0.5	-	0.5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0.4	0.2	0.2	-	0.2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0.8	0.7	0.1	-	0.1
Farm Credit System Insurance Corporation	0.1	0.2	(0.1)	-	(0.1)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3	0.4	(0.1)	-	(0.1)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0.2)	0.1	(0.3)	-	(0.3)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8	2.1	(0.3)	-	(0.3)
National Railroad Retirement Investment Trust.....	0.1	0.7	(0.6)	-	(0.6)
Export-Import Bank of the U.S.	(0.1)	0.5	(0.6)	-	(0.6)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0.1	0.8	(0.7)	-	(0.7)
Tennessee Valley Authority.....	9.9	11.3	(1.4)	-	(1.4)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0.4	5.0	(4.6)	-	(4.6)
All other entities	22.0	1.8	20.2	-	20.2
Total.....	5,287.2	418.4	4,868.8	198.9	5,067.7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국가별 재무제표(미국) 2. Statement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Net Position

**United States Government
Statement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Net Position
for the Year Ended September 30, 2019**

(In billions of dollars)	Funds other than those from Dedicated Collections (Combined)	Funds from Dedicated Collections (Note 20) (Combined)	Eliminations	Consolidated
	2019			
Revenue (Note 17):				
Individual income tax and tax withholdings.....	1,687.6	1,218.6	-	2,906.2
Corporate income taxes.....	322.5	-	-	322.5
Excise taxes.....	42.1	60.7	-	102.8
Unemployment taxes.....	-	39.4	-	39.4
Customs duties.....	72.6	0.1	-	72.7
Estate and gift taxes.....	16.7	-	-	16.7
Other taxes and receipts.....	102.4	42.9	-	145.3
Miscellaneous earned revenues.....	12.0	3.4	-	15.4
Intragovernmental interest.....	-	95.5	(95.5)	-
Total Revenue.....	2,255.9	1,460.6	(95.5)	3,621.0
Net Cost of Government Operations:				
Net cost.....	3,237.5	1,830.2	-	5,067.7
Intragovernmental interest.....	95.5	-	(95.5)	-
Total net cost.....	3,333.0	1,830.2	(95.5)	5,067.7
Intragovernmental transfers.....	(406.0)	406.0	-	-
Unmatched transactions and balances				
(Note 1.R).....	1.6	-	-	1.6
Net operating (cost)/revenue.....	(1,481.5)	36.4	-	(1,445.1)
Net position, beginning of period.....				
Adjustments to beginning net position	(25,001.4)	3,480.7	-	(21,520.7)
(Note 1.S).....	13.0	-	-	13.0
Net operating (cost)/revenue.....	(1,481.5)	36.4	-	(1,445.1)
Net position, end of period.....	(26,469.9)	3,517.1	-	(22,952.8)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국가별 재무제표(미국) 3. Reconciliations of Net Operating Cost and Budget Deficit

**United States Government
Reconciliations of Net Operating Cost and Budget Deficit
for the Years Ended September 30, 2019, and 2018**

(In billions of dollars)	2019	Restated 2018
Net operating cost	(1,445.1)	(1,159.0)
<i>Components of net operating cost not part of the budget deficit</i>		
Excess of accrual-basis expenses over budget outlays		
*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Pension and accrued benefits	183.1	88.4
Veterans compensation and burial benefits	173.5	146.3
Post-retirement health and accrued benefits	55.0	33.0
Other benefits	46.4	14.5
Subtotal -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458.0	282.2
* Insurance and guarantee program liabilities	24.3	(32.3)
* Environmental and disposal liabilities	18.1	112.8
* Accounts payable	11.3	15.9
* Benefits due and payable	12.5	(7.7)
* Other liabilities	31.4	5.8
Subtotal - excess of accrual-basis expenses over budget outlays	555.6	376.7
Amortized expenses not included in budget outlays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depreciation expense	88.4	72.7
Other expenses that are not reported as budget outlays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disposals and revaluations	(38.8)	(4.0)
Excess of accrual-basis revenue over budget receipts		
Accounts receivable, net	(4.0)	6.2
Taxes receivable, net	(89.1)	(7.8)
Other losses/(gains) and cost/(revenue) that are not budget receipts		
* Investments in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1.1	(20.6)
Subtotal - components of net operating cost not part of budget deficit	513.2	423.2
<i>Components of the budget deficit that are not part of net operating cost</i>		
Budget receipts not included in net operating cost		
Credit reform and other loan activities	45.3	5.0
Budget outlays not included in net operating cost		
Acquisition of capital assets	(66.0)	(72.2)
* Debt and equity securities	(6.1)	4.0
* Inventories and related property	(18.2)	(10.8)
* Other assets	1.2	35.9
Subtotal - components of the budget deficit that are not part of net operating cost	(43.8)	(38.1)
Adjustments to beginning net position	13.0	0.1
Other		
All other reconciling items	(21.7)	(5.2)
Budget deficit	(984.4)	(779.0)

* The amounts represent the year over year net change in the Balance Sheet line items.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국가별 재무제표(미국) 4. Statements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Budget and Other Activities

**United States Government
Statements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Budget and Other Activities
for the Years Ended September 30, 2019, and 2018**

(In billions of dollars)	2019	2018
Cash flow from budget activities		
Total budget receipts	3,462.2	3,328.7
Total budget outlays	(4,446.6)	(4,107.7)
<i>Budget deficit</i>	(984.4)	(779.0)
Adjustments for non-cash outlays included in the budget		
Non-cash flow amounts in the budget related to federal debt securities		
Accrued interest	305.5	268.5
Net amortization	65.7	41.9
Other	(33.3)	1.1
<i>Subtotal - adjustments for non-cash flow amounts in the budget related to federal debt securities</i>	337.9	311.5
Non-cash flow amounts in the budget related to loan financing account activity		
Interest revenue on uninvested funds	7.1	7.9
Interest expense on entity borrowings	(43.2)	(42.1)
Entities' downward reestimates/negative subsidy payments	(22.8)	(37.3)
Entities' subsidy expense/upward reestimates	47.7	35.8
<i>Subtotal - adjustments for non-cash flow amounts in the budget related to loan financing account activity</i>	(11.2)	(35.7)
<i>Total of adjustments for non-cash outlays included in the budget</i>	326.7	275.8
Cash flow from activities not included in the budget		
Cash flow from non-budget activities related to federal debt securities		
Interest paid	(305.7)	(260.4)
<i>Subtotal - cash flow from non-budget activities related to federal debt securities</i>	(305.7)	(260.4)
Cash flow from non-budget activities related to loan financing account activity		
Loan disbursements/default payments	(214.3)	(194.9)
Fees	24.5	25.0
Principal & interest repayments	125.9	117.7
Other collections on defaulted loans receivable and sale of foreclosed property	4.5	5.7
Other loan financing account activities	-	0.6
<i>Subtotal - cash flow from non-budget activities related to loan financing account activity</i>	(59.4)	(45.9)
Cash flow from financing federal debt securities		
Borrowings	11,813.4	10,080.1
Repayments	(10,732.1)	(8,993.5)
Discount/premium	(60.4)	(54.7)
<i>Subtotal - cash flow from financing federal debt securities</i>	1,020.9	1,031.9
<i>Total cash flow from activities not included in the budget</i>	655.8	725.6
Other		
<i>Total other</i>	19.0	13.9
Change in cash and other monetary assets balance	17.1	236.3
Beginning cash and other monetary assets balance	507.5	271.2
Ending cash and other monetary assets balance	524.6	507.5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국가별 재무제표(미국) 5. Balance Sheets

**United States Government
Balance Sheets
as of September 30, 2019, and 2018**

(In billions of dollars)	2019	Restated 2018
Assets:		
Cash and other monetary assets (Note 2)	524.6	507.5
Accounts and taxes receivable, net (Note 3)	238.0	144.9
Loans receivable, net (Note 4)	1,425.8	1,419.1
Inventories and related property, net (Note 5)	355.7	337.5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Note 6)	1,106.9	1,090.5
Debt and equity securities (Note 7)	118.3	112.2
Investments in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Note 8)	112.1	113.2
Other assets (Note 9)	110.6	111.8
Total assets	<u>3,992.0</u>	<u>3,836.7</u>
Stewardship land and heritage assets (Note 24)		
Liabilities:		
Accounts payable (Note 10)	98.0	86.7
Federal debt securities held by the public and accrued interest (Note 11)	16,861.0	15,812.7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Note 12)	8,440.3	7,982.3
Environmental and disposal liabilities (Note 13)	595.4	577.3
Benefits due and payable (Note 14)	223.6	211.1
Insurance and guarantee program liabilities (Note 15)	194.5	170.2
Loan guarantee liabilities (Note 4)	21.7	38.2
Other liabilities (Note 16)	510.3	478.9
Total liabilities	<u>26,944.8</u>	<u>25,357.4</u>
Contingencies (Note 18) and Commitments (Note 19)		
Net Position:		
Funds from Dedicated Collections (Note 20)	3,517.1	3,480.7
Funds other than those from Dedicated Collections	<u>(26,469.9)</u>	<u>(25,001.4)</u>
Total net position	<u>(22,952.8)</u>	<u>(21,520.7)</u>
Total liabilities and net position	<u>3,992.0</u>	<u>3,836.7</u>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국가별 재무제표(미국) 6. Statements of Long-Term Fiscal Projections

United States Government
 Statements of Long-Term Fiscal Projections (Note 23)
 Present Value of 75-Year Projections as of September 30, 2019 and 2018¹

	In trillions of dollars			Percent of GDP ²		
	2019	2018	Change	2019	2018	Change
Receipts:						
Social Security payroll taxes	65.7	60.6	5.1	4.3	4.3	-
Medicare payroll taxes.....	22.1	20.3	1.8	1.4	1.4	-
Individual income taxes	161.7	143.8	17.9	10.6	10.2	0.3
Corporation income taxes	19.3	18.8	0.5	1.3	1.3	(0.1)
Other receipts.....	21.1	18.5	2.6	1.4	1.3	0.1
Total receipts.....	289.9	262.0	27.9	18.9	18.6	0.3
Non-interest spending:						
Social Security.....	88.7	82.5	6.2	5.8	5.9	(0.1)
Medicare Part A ³	32.2	29.1	3.1	2.1	2.1	-
Medicare Parts B & D ⁴	40.7	35.7	5.0	2.7	2.5	0.1
Medicaid.....	37.3	34.1	3.2	2.4	2.4	-
Other mandatory.....	45.4	41.0	4.4	3.0	2.9	0.1
Defense discretionary.....	48.1	42.9	5.2	3.1	3.0	0.1
Non-defense discretionary	46.6	42.9	3.6	3.0	3.1	-
Total non-interest spending	338.9	308.2	30.7	22.1	21.9	0.2
Receipts less non-interest spending	(49.0)	(46.2)	(2.9)	(3.2)	(3.3)	0.1
Fiscal gap⁶.....				(3.8)	(4.1)	0.2

¹75-year present value projections for 2019 are as of 9/30/2019 for fiscal years 2020-2094; projections for 2018 are as of 9/30/2018 for fiscal years 2019-2093.

²The 75-year present value of nominal GDP, which drives the calculations above is \$1,531.8 trillion starting in fiscal year 2020, and was \$1,408.3 trillion starting in fiscal year 2019.

³Represents portions of Medicare supported by payroll taxes.

⁴Represents portions of Medicare supported by general revenues. Consistent with the President's Budget, outlays for Parts B & D are presented net of premiums.

⁵To prevent the debt-to-GDP ratio from rising over the next 75 years, a combination of non-interest spending reductions and receipt increases that amounts to 3.8 percent of GDP on average is needed (4.1 percent of GDP on average in 2018). See Note 23—Long-Term Fiscal Projections.

Totals may not equal the sum of components due to rounding.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국가별 재무제표(미국) 7. 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

United States Government
 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 (Note 22)
 Present Value of Long-Range (75 Years, except Black Lung) Actuarial Projections

(In trillions of dollars)	2019	2018	2017	2016	2015
Federal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Social Security):¹¹					
<i>Revenue (Contributions and Dedicated Taxes) from:</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age 62 and over) ..	1.5	1.5	1.4	1.3	1.2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33.6	31.6	30.2	29.3	27.8
Future participants.....	35.3	31.8	30.5	29.7	26.6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70.4	64.9	62.1	60.3	55.6
<i>Expenditures for Scheduled Future Benefits for:</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age 62 and over) ..	(16.9)	(15.9)	(14.7)	(13.6)	(12.8)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55.8)	(52.2)	(50.2)	(48.4)	(45.3)
Future participants.....	(14.5)	(13.0)	(12.6)	(12.4)	(10.9)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87.2)	(81.1)	(77.5)	(74.4)	(69.0)
<i>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i>	(16.8) ¹	(16.2) ²	(15.4) ³	(14.1) ⁴	(13.4) ⁵
Federal Hospital Insurance (Medicare Part A):¹¹					
<i>Revenue (Contributions and Dedicated Taxes) from:</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age 65 and over) ..	0.6	0.5	0.5	0.5	0.4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12.0	11.3	10.6	10.2	9.1
Future participants.....	11.8	11.0	10.6	10.0	8.4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24.4	22.8	21.7	20.7	17.9
<i>Expenditures for Scheduled Future Benefits for:</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age 65 and over) ..	(5.3)	(5.0)	(4.5)	(4.3)	(3.8)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20.0)	(18.6)	(17.2)	(16.8)	(14.5)
Future participants.....	(4.5)	(3.9)	(3.5)	(3.4)	(2.8)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29.8)	(27.5)	(25.2)	(24.5)	(21.1)
<i>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i>	(5.4) ¹	(4.7) ²	(3.5) ³	(3.8) ⁴	(3.2) ⁵
Federal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Medicare Part B):¹¹					
<i>Revenue (Premiums) from:</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age 65 and over) ..	1.5	1.3	1.1	1.0	0.9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7.5	6.6	5.9	5.3	4.6
Future participants.....	1.9	1.5	1.4	1.2	1.0
General Fund Transfers.....	28.8	25.1	22.4	20.0	17.5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39.7	34.5	30.8	27.5	24.0
<i>Expenditures for Scheduled Future Benefits for:</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age 65 and over) ..	(5.8)	(5.2)	(4.5)	(4.0)	(3.6)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27.3)	(23.9)	(21.4)	(19.2)	(16.9)
Future participants.....	(6.6)	(5.4)	(4.9)	(4.3)	(3.5)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39.7)	(34.5)	(30.8)	(27.5)	(24.0)
<i>Eliminations</i>	(28.8)	(25.1)	(22.4)	(20.0)	(17.5)
<i>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 (after eliminations)⁸</i>	(28.8) ¹	(25.1) ²	(22.4) ³	(20.0) ⁴	(17.5) ⁵
Federal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Medicare Part D):¹¹					
<i>Revenue (Premiums and State Transfers) from:</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age 65 and over) ..	0.2	0.3	0.3	0.3	0.3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2.1	2.1	2.1	2.2	1.8
Future participants.....	0.9	0.8	0.8	1.0	0.8
General Fund Transfers.....	8.0	7.9	7.6	8.7	7.3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11.2	11.1	10.8	12.2	10.2
<i>Expenditures for Scheduled Future Benefits for:</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age 65 and over) ..	(1.0)	(1.0)	(1.0)	(1.0)	(0.9)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7.2)	(7.2)	(6.9)	(7.6)	(6.5)
Future participants.....	(3.0)	(2.9)	(2.9)	(3.6)	(2.8)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11.2)	(11.1)	(10.8)	(12.2)	(10.2)
<i>Eliminations</i>	(8.0)	(7.9)	(7.6)	(8.7)	(7.3)
<i>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 (after eliminations)⁹</i>	(8.0) ¹	(7.9) ²	(7.6) ³	(8.7) ⁴	(7.3) ⁵
Other:					
<i>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⁷</i>	(0.1) ¹	(0.1) ²	(0.1) ³	(0.1) ⁴	(0.1) ⁵
Total 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8, 9, 10}	(59.1)	(54.0)	(49.0)	(46.7)	(41.5)

국가별 재무제표(캐나다) 1. Consolidated Statement of Operations and Accumulated Deficit

Government of Canada

**Consolidated Statement of Operations and Accumulated Deficit
for the year ended March 31, 2019**

(in millions of dollars)

	2019		2018
	Budget (Note 3d)	Actual	Actual Restated (Note 2a)
Revenues: (Note 4 and Note 20)			
<i>Tax revenues</i>			
Income tax revenues			
Personal.....	161,353	163,881	153,619
Corporate.....	47,348	50,368	47,805
Non-resident.....	8,265	9,370	7,845
Total income tax revenues.....	216,966	223,619	209,269
Other taxes and duties.....	56,366	57,227	53,819
Total tax revenues.....	273,332	280,846	263,088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21,716	22,295	21,140
<i>Other revenues</i>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 and other 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s.....	6,650	7,101	7,731
Other.....	17,918	20,309	17,784
Net foreign exchange.....	2,143	1,667	1,473
Total other revenues.....	26,711	29,077	26,988
Total revenues.....	320,759	332,218	311,216
Expenses: (Note 5 and Note 20)			
<i>Program expenses</i>			
Transfer payments			
Old age security benefit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nd spouse's allowance.....	53,637	53,366	50,644
Major transfer payment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73,616	75,925	70,519
Employment insurance.....	20,714	18,888	19,715
Children's benefits.....	23,708	23,882	23,432
Fuel charge proceeds returned.....	-	664	-
Other transfer payments.....	47,462	51,753	47,138
Total transfer payments.....	219,137	224,478	211,448
Other expenses.....	92,714	98,438	96,840
Total program expenses.....	311,851	322,916	308,288
Public debt charges.....	24,707	23,366	21,689
Total expenses.....	336,558	346,182	330,177
Annual deficit.....	(15,799)	(13,964)	(18,961)
Accumulated deficit at beginning of year.....	(671,254)	(671,254)	(651,540)
Other comprehensive loss: (Note 6 and Note 15).....	-	(232)	(753)
Accumulated deficit at end of year (Note 6).....	(687,053)	(685,450)	(671,254)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consolidated statements.
Details can be found in other sections (unaudited) of this volume.

국가별 재무제표(캐나다) 2. Consolidat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Government of Canada

Consolidat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s at March 31, 2019

(in millions of dollars)

	2019	2018
		Restated (Note 2a)
Liabilities		
<i>Accounts payable and accrued liabilities</i>		
Amounts payable related to tax	65,200	61,876
Other accounts payable and accrued liabilities	42,674	37,692
Provision for contingent liabilities (Note 7)	26,447	23,030
Environmental liabilities and asset retirement obligations (Note 8)	13,192	12,291
Deferred revenue	7,500	8,220
Interest and matured debt	4,694	4,690
<i>Total accounts payable and accrued liabilities</i>	<i>158,707</i>	<i>147,799</i>
<i>Interest-bearing debt</i>		
Unamortized debt (Note 9)	736,915	721,201
Pensions and other future benefits		
Public sector pensions (Note 10)	168,782	170,914
Other employee and veteran future benefits (Note 10)	113,862	104,793
<i>Total pensions and other future benefits</i>	<i>282,644</i>	<i>275,707</i>
Other liabilities (Note 11)	5,905	5,670
<i>Total interest-bearing debt</i>	<i>1,025,464</i>	<i>1,002,578</i>
Total liabilities	1,185,171	1,150,377
Financial assets		
<i>Cash and accounts receivable</i>		
Cash and cash equivalents (Note 12)	37,635	34,642
Taxes receivable (Note 13)	127,561	123,035
Other accounts receivable (Note 13)	11,845	14,380
<i>Total cash and accounts receivable</i>	<i>177,041</i>	<i>172,057</i>
<i>Foreign exchange accounts (Note 14)</i>	<i>99,688</i>	<i>96,938</i>
<i>Loans, investments and advances</i>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 and other 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s (Note 15)	108,169	100,775
Other loans, investments and advances (Note 16)	25,743	25,596
<i>Total loans, investments and advances</i>	<i>133,912</i>	<i>126,371</i>
<i>Public sector pension assets (Note 10)</i>	<i>2,406</i>	<i>2,124</i>
Total financial assets	413,047	397,490
Net debt	(772,124)	(752,887)
Non-financial assets		
Tangible capital assets (Note 17)	78,942	73,835
Inventories (Note 17)	6,601	6,679
Prepaid expenses and other	1,131	1,119
Total non-financial assets	86,674	81,633
Accumulated deficit (Note 6)	(685,450)	(671,254)
Contractual obligations and contractual rights (Note 19)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consolidated statements.
Details can be found in other sections (unaudited) of this volume.

국가별 재무제표(캐나다) 3. Consolidated Statement of Change in Net Debt

Government of Canada

**Consolidated Statement of Change in Net Debt
for the year ended March 31, 2019**

(in millions of dollars)

	2019		2018
	Budget (Note 3d)	Actual	Actual Restated (Note 2a)
Net debt at beginning of year	(752,887)	(752,887)	(729,254)
Change in net debt during the year			
Annual deficit	(15,799)	(13,964)	(18,961)
Changes due to tangible capital assets			
Acquisition of tangible capital assets	(9,045)	(11,134)	(9,793)
Amortization of tangible capital assets	5,599	5,643	5,261
Proceeds from disposal of tangible capital assets	449	465	266
Net (gain) loss on disposal of tangible capital assets, including adjustments	-	(81)	107
Total change due to tangible capital assets	(2,997)	(5,107)	(4,159)
Change due to inventories	-	78	163
Change due to prepaid expenses	-	(12)	77
Net increase in net debt due to operations	(18,796)	(19,005)	(22,880)
Other comprehensive loss (Note 6 and Note 15)	-	(232)	(753)
Net increase in net debt	(18,796)	(19,237)	(23,633)
Net debt at end of year	(771,683)	(772,124)	(752,887)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consolidated statements.
Details can be found in other sections (unaudited) of this volume.

국가별 재무제표(캐나다) 4. Consolidated Statement of Cash Flow

Government of Canada

Consolidated Statement of Cash Flow
for the year ended March 31, 2019

(in millions of dollars)

	2019	2018 Restated (Note 2a)
Operating activities		
Annual deficit	(13,964)	(18,961)
Non-cash items		
Share of annual profit in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 and other 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s	(5,920)	(6,959)
Amortization of tangible capital assets	5,643	5,261
Net (gain) loss on disposal of tangible capital assets, including adjustments	(81)	107
Cross-currency swap revaluation	(561)	71
Pensions and other future benefit and interest expenses	25,662	29,588
Change in taxes receivable	(4,526)	(12,521)
Pensions and other future benefit payments	(19,007)	(19,120)
Change in foreign exchange accounts	(2,750)	1,859
Change in accounts payable and accrued liabilities	11,908	20,949
Net change in cash collateral	1,622	(1,841)
Net change in other accounts	6,103	(2,110)
Cash provided (used) by operating activities	4,129	(3,777)
Capital investment activities		
Acquisition of tangible capital assets	(10,010)	(9,220)
Proceeds from disposal of tangible capital assets	465	266
Cash used by capital investment activities	(9,545)	(8,954)
Investing activities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 and other 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s		
Equity transactions	6,302	7,993
Issuance of loans and advances	(48,889)	(42,756)
Repayment of loans and advances	41,086	39,884
Issuance of other loans, investments and advances	(7,546)	(7,500)
Repayment of other loans, investments and advances	5,354	7,357
Cash (used) provided by investing activities	(3,693)	4,978
Financing activities		
Issuance of Canadian currency borrowings	437,135	441,307
Repayment of Canadian currency borrowings	(424,926)	(433,801)
Issuance of foreign currency borrowings	19,631	15,847
Repayment of foreign currency borrowings	(19,738)	(17,458)
Cash provided by financing activities	12,102	5,895
Net increase (decrease) in cash and cash equivalents	2,993	(1,888)
Cash and cash equivalents at beginning of year	34,642	36,500
Cash and cash equivalents at end of year (Note 12)	37,635	34,642
Supplementary information		
Cash used for interest	14,747	13,411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consolidated statements.
Details can be found in other sections (unaudited) of this volume.

국가별 재무제표(일본) 1. 貸借対照表(対次大조표)

貸借対照表

(単位：百万円)

	前会計年度 (平成30年 3月31日)	本会計年度 (平成31年 3月31日)		前会計年度 (平成30年 3月31日)	本会計年度 (平成31年 3月31日)
<資産の部>			<負債の部>		
現金・預金	47,860,071	51,327,860	未払金	10,515,848	10,520,276
有価証券	118,517,982	119,600,975	支払備金	265,380	269,838
たな卸資産	4,299,555	4,306,128	未払費用	1,220,788	1,192,054
未収金	5,458,548	5,353,180	保善金等	1,030,143	1,125,993
未収収益	716,505	729,587	前受金	49,417	52,039
未収(再)保険料	4,735,921	4,687,900	前受収益	9,289	30,422
前払費用	5,474,106	4,703,908	未経過(再)保険料	36,413	36,514
貸付金	112,809,764	108,861,002	賞与引当金	325,560	340,743
運用寄託金	111,464,931	112,693,217	政府短期証券	76,987,793	76,101,566
その他の債権等	3,264,871	3,827,748	公債	966,898,628	986,064,569
貸倒引当金	△ 1,623,059	△ 1,498,715	借入金	31,443,449	31,920,685
有形固定資産	182,452,620	184,381,760	預託金	6,505,949	6,364,850
国有財産(公共用 財産を除く)	30,305,869	31,223,110	責任準備金	9,135,615	9,374,528
土地	17,740,516	18,306,157	公的年金預り金	120,110,492	120,758,887
立木竹	2,997,650	3,120,941	退職給付引当金	6,697,342	6,420,104
建物	3,430,462	3,411,639	その他の債務等	7,643,198	7,451,601
工作物	2,658,601	2,562,840			
機械器具	0	0			
船舶	1,482,320	1,465,061			
航空機	714,501	946,131			
建設仮勘定	1,281,817	1,410,337			
公共用財産	150,267,144	150,969,096			
公共用財産用地	39,841,969	39,984,537			
公共用財産施設	110,060,581	110,660,869			
建設仮勘定	364,592	323,689			
物品	1,854,779	2,165,906			
その他の固定資産	24,826	23,647			
無形固定資産	281,123	305,438			
出資金	74,800,579	75,387,964			
資産合計	670,513,522	674,667,957	負債合計	1,238,875,311	1,258,024,676
			<資産・負債差額の部>		
			資産・負債差額	△ 568,361,788	△ 583,356,718
			負債及び資産・ 負債差額合計	670,513,522	674,667,957

(注1) 資産の部の現金・預金(本会計年度51.3兆円)は、年度末時点の実際の保有残高に出勤整理期間における現金・預金の出納を加減した金額である(年度末時点の政府預金残高は17.5兆円、外貨預金残高は12.4兆円である)。

(注2) 国が保有する資産には、国において直接公共の用に供する目的で保有している公共用財産のように、売却して現金化することを基本的に予定していない資産が相当程度含まれている。このため、資産・負債差額が必ずしも将来の国民負担となる額を示すものではない点に留意する必要がある。

(注3) 負債の部の公債(本会計年度986.1兆円)については、基本的に将来の国民負担となる普通国債残高(883.5兆円)のほか、財政投融资特別会計等の公債残高を含み、国の内部で保有するものを相殺消去している(55ページの「⑩公債の明細」参照)。

국가별 재무제표(일본) 2. 業務費用計算書(업무비용계산서)

業務費用計算書

(單位：百万円)

	前会計年度	本会計年度
	(自 平成29年 4月 1日) (至 平成30年 3月31日)	(自 平成30年 4月 1日) (至 平成31年 3月31日)
人件費	4,443,306	4,479,345
賞与引当金繰入額	307,255	322,144
退職給付引当金繰入額	239,235	423,192
基礎年金給付費	22,516,473	22,975,869
国民年金給付費	540,541	465,167
厚生年金給付費	23,578,037	23,682,636
国家公務員共済組合連合会等交付金	4,752,414	4,696,281
保険料等交付金	9,794,394	10,033,731
失業等給付費	1,493,402	1,575,014
その他の社会保険費	1,063,567	1,094,062
(再) 保険費等	33,114	55,030
公共用施設整備費等	65,016	52,244
補助金等	31,385,964	31,199,653
委託費等	2,640,476	2,404,125
地方交付税交付金等	19,306,031	19,353,497
資金援助交付費	940,600	770,200
運営費交付金	2,908,184	2,956,906
庁費等	3,354,652	3,084,953
公債事務取扱費	34,239	30,045
その他の経費	1,018,877	1,031,336
減価償却費	5,360,426	5,420,872
責任準備金繰入額等	135,646	238,912
貸倒引当金繰入額	637,817	608,786
支払利息	7,619,541	7,304,694
為替換算差損益	668	△ 104
公債償還損益	24,658	11,656
資産処分損益	554,830	460,377
出資金等評価損	278,131	331,854
本年度業務費用合計	145,027,510	145,062,489

국가별 재무제표(일본) 3. 資産・負債差額増減計算書(資産・부채차액증감계산서)

資産・負債差額増減計算書

(單位：百万円)

	前会計年度 (自 平成29年 4月 1日) (至 平成30年 3月31日)	本会計年度 (自 平成30年 4月 1日) (至 平成31年 3月31日)
I 前年度末資産・負債差額	△ 548,881,473	△ 568,361,788
II 本年度業務費用合計	△ 145,027,510	△ 145,062,489
III 財源	126,968,302	129,776,560
租税等財源	62,380,253	64,224,124
その他の財源	64,588,048	65,552,436
IV 資産評価差額	982,656	3,035,962
V 為替換算差額	△ 1,654,387	△ 4,061,229
VI 公的年金預り金の変動に伴う増減	△ 1,333,672	△ 648,394
VII その他資産・負債差額の増減	584,297	1,964,660
VIII 本年度末資産・負債差額	△ 568,361,788	△ 583,356,718

국가별 재무제표(일본) 4. 区分別収支計算書(구분별수지계산서)

区分別収支計算書

(單位：百万円)

	前会計年度 (自 平成29年 4月 1日) (至 平成30年 3月31日)	本会計年度 (自 平成30年 4月 1日) (至 平成31年 3月31日)
I 業務収支		
1 財源		
租税等収入	62,380,253	64,224,124
その他の収入	66,006,160	65,577,537
前年度剰余金受入	15,549,920	13,979,763
資金からの受入(予算上措置されたもの)	15,304,719	14,560,184
財源合計	159,241,054	158,341,610
2 業務支出		
(1)業務支出(施設整備支出を除く)		
人件費	△ 5,242,392	△ 5,284,503
恩給給付費	△ 271,092	△ 228,854
基礎年金給付費	△ 22,408,941	△ 22,904,720
国民年金給付費	△ 554,147	△ 476,986
厚生年金給付費	△ 23,543,722	△ 23,683,072
国家公務員共済組合連合会等交付金	△ 4,752,414	△ 4,696,281
保険料等交付金	△ 9,761,060	△ 9,996,938
失業等給付費	△ 1,498,848	△ 1,572,652
その他の社会保険費	△ 1,064,056	△ 1,093,380
(再)保険費等	△ 33,269	△ 53,648
公共用施設整備費等	△ 83,106	△ 65,867
補助金等	△ 31,376,674	△ 31,188,243
委託費等	△ 2,556,028	△ 2,359,188
地方交付税交付金等	△ 19,306,031	△ 19,353,497
運営費交付金	△ 2,908,184	△ 2,956,906
貸付けによる支出	△ 123,780	△ 115,496
出資による支出	△ 455,581	△ 495,559
庁費等の支出	△ 4,106,393	△ 4,011,760
その他の支出	△ 1,015,729	△ 1,016,992
資金への繰入(予算上措置されたもの)	△ 12,082,246	△ 10,629,999
業務支出(施設整備支出を除く)合計	△ 143,143,703	△ 142,184,550
(2)施設整備支出		
公共用財産用地に係る支出	△ 193,815	△ 192,284
公共用財産施設に係る支出	△ 2,761,819	△ 2,769,971
その他の施設整備支出	△ 1,482,662	△ 1,674,178
施設整備支出合計	△ 4,438,296	△ 4,636,434
業務支出合計	△ 147,581,999	△ 146,820,985

業務収支	11,659,054	11,520,625
II 財務収支		
公債の発行による収入	152,013,410	148,310,747
公債の償還による支出	△ 136,383,815	△ 131,215,350
政府短期証券の発行による収入	1,285,700	1,275,700
政府短期証券の償還による支出	△ 1,287,000	△ 1,285,700
借入による収入	30,574,137	31,029,986
借入金の返済による支出	△ 29,895,149	△ 30,552,749
リース・PFI債務の返済による支出	△ 58,089	△ 49,059
預託金利息	△ 62,166	△ 55,801
利息の支払額（預託金利息を除く）	△ 8,869,784	△ 8,694,932
公債事務取扱に係る支出	△ 34,276	△ 30,055
資金からの受入	10,564,193	9,985,626
資金への繰入	△ 11,641,038	△ 11,275,178
財務収支	6,206,121	7,443,231
本年度収支	17,865,176	18,963,857
資金からの受入（決算処理によるもの）	-	44,643
資金への繰入（決算処理によるもの）	△ 3,885,412	△ 3,306,094
翌年度繰入繰入	13,979,763	15,702,405
特別会計に関する法律第47条第1項の規定による借換国債収入額	49,440,701	52,463,126
翌年度繰入繰入の預託金への運用	△ 780,880	△ 883,102
翌年度繰入繰入の預託金以外への運用	△ 279,805	△ 189,462
収支に関する換算差額	△ 427,460	△ 249,137
資金本年度末残高	23,066,812	23,926,578
その他歳計外現金・預金本年度末残高	1,060,940	1,157,451
国庫余裕金の繰替使用	△ 38,200,000	△ 40,600,000
本年度末現金・預金残高	47,860,071	51,327,860

국가별 재무제표(영국) 1. Statement of Revenue and Expenditure

Statement of Revenue and Expenditure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19

	Note	2018-19 £bn	2017-18 Restated £bn
Taxation revenue	4	(685.7)	(661.6)
Other revenue	5	(109.9)	(102.9)
Total public services revenue		(795.6)	(764.5)
Social security benefits	6	230.3	225.9
Staff costs	7	255.7	215.8
Purchase of goods, services and other expenditure	8	206.5	207.4
Grants and subsidies	9	58.8	51.2
Depreciation and impairment	10	47.9	56.5
Interest costs on government borrowing	11	31.6	36.8
Increase/(decrease) in provisions	22	21.0	15.2
Total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851.8	808.8
Net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56.2	44.3
Financing costs of long-term liabilities, including discounting	11	(56.6)	153.7
Revalu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1.1)	4.8
Net (income)/expenditure for the year		(1.5)	202.8

국가별 재무제표(영국) 2.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and Expenditur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and Expenditure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19

	Note	2018-19 £bn	2017-18 Restated £bn
Net (income)/expenditure for the year		(1.5)	202.8
Other comprehensive income and expenditure:			
Net (gain)/loss on:			
Revaluation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49.8)	(36.1)
R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0.1)	(0.7)
Revaluation of assets measured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3.3	(1.0)
Revaluation of pension scheme liabilities		(71.1)	(38.6)
Other comprehensive income and expenditure		(117.7)	(76.4)
Total comprehensive (income)/ expenditure for the year		(119.2)	126.4

국가별 재무제표(영국) 3.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s at 31 March 2019

	Note	2018-19 £bn	2017-18 Restated £bn
Non-current assets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2	1,268.0	1,208.4
Investment property	13	22.9	20.0
Intangible assets	14	37.4	36.0
Trade and other receivables	15	17.9	19.1
Other financial assets	16	320.6	323.3
		1,666.8	1,606.8
Current assets			
Inventories	17	9.7	9.9
Trade and other receivables	15	172.4	160.8
Other financial assets	16	194.3	184.3
Cash and cash equivalents	18	44.2	34.3
Gold holdings		9.9	9.4
Assets held for sale		1.5	8.3
		432.0	407.0
Total assets		2,098.8	2,013.8
Current liabilities			
Trade and other payables	19	(133.3)	(126.8)
Government borrowings	20	(307.2)	(275.6)
Other financial liabilities	21	(652.1)	(654.0)
Provisions	22	(17.7)	(16.4)
		(1,110.3)	(1,072.8)
Non-current liabilities			
Trade and other payables	19	(58.6)	(64.4)
Government borrowings	20	(1,100.0)	(1,071.8)
Other financial liabilities	21	(98.1)	(98.8)
Provisions	22	(293.7)	(406.1)
Net public sector pension liability	24	(1,893.9)	(1,865.3)
		(3,444.3)	(3,506.4)
Total liabilities		(4,554.6)	(4,579.2)
Net liabilities			
Financed by taxpayers' equity:			
General reserve		(3,018.6)	(3,134.0)
Revaluation reserve		558.6	564.5
Other reserves		4.2	4.1
Total liabilities to be funded by future revenues		(2,455.8)	(2,565.4)

국가별 재무제표(영국) 4. Statement of Changes in Taxpayers Equity

Statement of Changes in Taxpayers Equity

As at 31 March 2019

	General reserve	Revaluation reserve	Other reserves	Total
	£bn	£bn	£bn	£bn
At 1 April 2017 (restated)	(2,955.6)	481.6	45.0	(2,429.0)
Net expenditure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18	(202.8)	-	-	(202.8)
Net gain/(loss) on:				
Revaluation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36.1	-	36.1
R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	0.7	-	0.7
Revaluation of available for sale financial assets	-	1.0	-	1.0
Revaluation of pension scheme liabilities	38.6	-	-	38.6
Other reserves movements including transfers	(14.2)	45.1	(40.9)	(10.0)
Balance at 31 March 2018 (restated)	(3,134.0)	564.5	4.1	(2,565.4)
Restatements to 31 March 2018 balances:	53.9	(53.7)	-	0.2
Restated Balance at 1 April 2018	(3,080.1)	510.8	4.1	(2,565.2)
Net income/(expenditure)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19	1.5	-	-	1.5
Net gain/(loss) on:				
Revaluation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49.8	-	49.8
R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	0.1	-	0.1
Revaluation of assets measured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	(3.3)	-	(3.3)
Revaluation of pension scheme liabilities	71.1	-	-	71.1
Other reserves movements including transfers	(11.1)	1.2	0.1	-9.8
Balance at 31 March 2019	(3,018.6)	558.6	4.2	(2,455.8)

Further details on restatements can be found in Note 1.5 and Note 33.

국가별 재무제표(영국) 5. Statement of Cash Flows

Statement of Cash Flows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19

	Note	2018-19 £bn	2017-18 restated £bn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Net operating expenditure for public services	SoRE	(56.2)	(44.3)
Adjustments for non-cash transactions		163.8	141.6
Adjustment for non-operating transactions		28.3	32.3
(Increase)/decrease in inventories		-	(0.6)
(Increase)/decrease in trade and other receivables		(12.1)	(7.5)
Increase/(decrease) in trade and other payables		0.7	5.5
Net cash movement for the provision of pensions		(42.7)	(41.5)
Use of provisions		(13.3)	(10.1)
Net cash inflow/(out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68.5	75.4
Cash flows from capital expenditure and financial investment			
Purchase of non-financial assets		(63.7)	(62.6)
Proceeds from disposal of non-financial assets		5.6	3.1
Net cash inflow/(outflow) from purchase and disposal of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16.0	(47.6)
Net cash inflow/(outflow) from capital expenditure and financial investment		(42.1)	(107.1)
Cash flows from financing activities			
Interest received		7.1	8.1
Financing costs of long-term liabilities, including discounting		(49.4)	(13.7)
Finance charges paid on finance leases and PFI contracts		(6.4)	(4.7)
Net Borrowings		32.2	48.0
Net cash inflow/(outflow) from financing activities		(16.5)	37.7
Net increase/(decrease) in cash and cash equivalents	18	9.9	6.0
Cash and cash equivalent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18	34.3	28.3
Cash and cash equivalents at the end of the year	18	44.2	34.3

국가별 재무제표(호주) 1. operating statement

Australian Government operating statement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Note	2019 \$m	2018 \$m
Revenue from transactions			
Taxation revenue	2A	455,891	426,971
Sales of goods and services	2B	27,730	21,114
Interest income	2C	6,026	4,774
Dividend income	2C	7,797	4,247
Other	2D	10,538	10,755
Total revenue		507,982	467,861
Expenses from transactions			
<i>Gross operating expenses</i>			
Wages and salaries	3A	24,337	23,571
Superannuation	3A	9,695	8,359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3B	12,666	11,684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3C	124,652	107,218
Other operating expenses	3A	8,726	7,353
Total gross operating expenses		180,076	158,185
Superannuation interest expense	3A	9,444	9,240
Interest expense	3D	19,470	18,996
<i>Current transfers</i>			
Current grants	3E	147,956	139,430
Subsidy expenses		11,363	11,070
Personal benefits		125,324	127,146
Total current transfers		284,643	277,646
<i>Capital transfers</i>			
Mutually agreed write-downs	3E	1,243	1,996
Other capital grants	3E	9,848	10,180
Total capital transfers		11,091	12,176
Total expenses	3F	504,724	476,243
Net operating balance		3,258	(8,382)
Other economic flows - included in operating result			
Net write-down of assets (including bad and doubtful debts)	4A	(7,072)	(7,941)
Net gains/(losses) from the sale of assets	4B	5,494	7,220
Net foreign exchange gains/(losses)	4C	2,268	1,982
Net interest on derivatives gains/(losses)	4C	(604)	89
Net fair value gains/(losses)	4C	(32,108)	5,578
Net other gains/(losses)	4C	(10,517)	(2,672)
Operating result(a)		(39,281)	(4,126)
Other economic flows - other non-owner movements in equity			
<i>Items that will not be reclassified to operating result</i>			
Revaluation of non-financial assets	7	3,943	2,728
Actuarial revaluations of superannuation		(92,629)	(25,293)
Other economic revaluations		(8)	62
<i>Items that may be reclassified subsequently to operating result</i>			
Revaluation of equity investments	7	1,084	515
Comprehensive result - total change in net worth		(126,891)	(26,114)
Net operating balance		3,258	(8,382)
<i>less 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i>			
Purchases of non-financial assets		24,170	22,190
<i>less Sales of non-financial assets</i>		420	4,434
<i>less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i>		12,666	11,684
<i>plus Change in inventories</i>		655	680
<i>plus Other movements in non-financial assets</i>		(1)	(31)
Total 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		11,738	6,721
Fiscal balance (Net lending/(borrowing))		(8,480)	(15,103)

(a) Includes \$18 million attributable to minority interests (2018: \$4 million).

Certain comparatives have been restated. Refer to Note 1.5 for further details.

국가별 재무제표(호주) 2. balance sheet

Australian Government balance sheet
 as at 30 June 2019

	Note	2019 \$m	2018 \$m
Assets			
<i>Financial assets</i>			
Cash and deposits		8,261	6,325
Advances paid	5A	63,918	51,765
Other receivables and accrued revenue	5A	53,179	51,105
Investments, loans and placements	5B	333,479	325,638
Equity investments	5C	67,919	59,092
Total financial assets		526,756	493,925
<i>Non-financial assets</i>			
Land	5D	13,628	13,316
Buildings	5D	30,026	29,073
Specialist military equipment	5D	66,593	62,020
Other plant,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5D	61,256	54,689
Intangibles	5D	12,731	11,571
Investment property	5D	340	341
Inventories	5E	9,145	8,831
Heritage and cultural assets	5D	11,695	11,619
Other non-financial assets	5F	5,139	3,943
Total non-financial assets		210,553	195,403
Total assets	5G	737,309	689,328
Liabilities			
<i>Interest bearing liabilities</i>			
Deposits held	6A	34,056	33,841
Government securities	6B	619,219	567,661
Loans	6C	16,240	15,181
Other borrowings	6D	10,164	8,807
Other interest bearing liabilities	6E	9,469	10,760
Total interest bearing liabilities		689,148	636,250
<i>Provisions and payables</i>			
Superannuation liability	6F	416,046	313,970
Other employee liabilities	6F	28,090	21,698
Supplier payables	6G	13,152	11,861
Personal benefits payable	6G	2,994	2,758
Subsidies payable	6G	630	602
Grants payable	6G	2,750	3,384
Australian currency on issue	6H	80,024	75,565
Other payables	6G	3,985	3,028
Other provisions	6H	45,123	37,950
Total provisions and payables		592,794	470,816
Total liabilities		1,281,942	1,107,066
Net worth			
Accumulated results		(635,192)	(500,718)
Reserves		90,376	82,869
Minority interests		183	111
Net worth		(544,633)	(417,738)

Certain comparatives have been restated. Refer to Note 1.5 for further details.

국가별 재무제표(호주) 3. cash flow statement

Australian Government cash flow statement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Note	2019 \$m	2018 \$m
OPERATING ACTIVITIES			
Operating cash received			
Taxes received		448,256	417,966
Receipts from sales of goods and services		28,041	21,357
Interest receipts		5,270	4,736
Dividend receipts		7,899	4,102
Other receipts		10,277	8,598
Total cash received		499,743	456,759
Operating cash used			
Payments for employees		(34,149)	(32,368)
Payments for goods and services		(120,991)	(105,903)
Grants and subsidies paid		(170,207)	(161,643)
Interest paid		(19,482)	(16,943)
Personal benefits paid		(126,362)	(127,940)
Other payments		(7,474)	(7,527)
Total cash used		(478,665)	(452,324)
Net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8	21,078	4,435
INVESTING ACTIVITIES			
Investments in non-financial assets			
Sales of non-financial assets		799	1,657
Purchases of non-financial assets		(22,592)	(19,838)
Net investments in non-financial assets		(21,793)	(18,181)
Investments in financial assets for policy purposes			
Receipts from policy investments		4,060	5,446
Payments for policy investments(a)		(10,375)	(17,539)
Net investments in financial assets for policy purposes		(6,315)	(12,093)
Investments in financial assets for liquidity purposes		(4,075)	(6,213)
Net cash from investing activities		(32,183)	(36,487)
FINANCING ACTIVITIES			
Net financing cash received			
Borrowings		12,088	34,481
Other financing		6,803	3,778
Net cash received		18,891	38,259
Net financing cash used			
Distributions paid		(6)	-
Other financing		(5,844)	(6,165)
Net cash used		(5,850)	(6,165)
Net cash flows from financing activities		13,041	32,094
Net (decrease)/increase in cash held		1,936	42
Cash at beginning of year		6,325	6,283
Cash at end of year		8,261	6,325
Key fiscal aggregate			
Net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21,078	4,435
Net cash flows from investments in non-financial assets		(21,793)	(18,181)
Cash surplus/(deficit)		(715)	(13,746)

(a) Includes \$6,114 million in payments to New South Wales and Victoria for their shareholdings in Snowy Hydro Limited in 2018. Refer to Note 9 for further detail.

Certain comparatives have been restated. Refer to Note 1.5 for further details.

국가별 재무제표(호주) 4.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Australian Government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net worth)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Item	Accumulated results \$m	Reserves					Total net worth \$m		
		Asset revaluation reserve \$m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reserve \$m	Investments reserve \$m	Statutory funds reserves \$m	Other reserves \$m			
Australian Government									
Adjusted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17	(468,738)	50,693	43	14,203	8,514	3,664	77,117	-	(391,621)
Dividends provided for or paid	(3)	-	-	-	-	-	-	-	(3)
Comprehensive result - change in net worth	(29,519)	2,974	16	273	-	142	3,405	-	(26,114)
Transfers to/(from)/between reserves	(2,348)	(12)	-	(809)	-	3,169	2,348	-	-
Net worth as at 30 June 2018	(500,608)	53,655	59	13,667	8,514	6,975	82,870	-	(417,738)
less: Minority interests	110	-	-	1	-	-	1	-	111
Attributable to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at 30 June 2018	(500,718)	53,655	59	13,666	8,514	6,975	82,869	-	(417,849)
Adjustment on initial application of AASB 9	46	(43)	-	-	-	-	(43)	-	3
Adjusted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18	(500,562)	53,612	59	13,667	8,514	6,975	82,827	-	(417,735)
Dividends provided for or paid	(7)	-	-	-	-	-	-	-	(7)
Comprehensive result - change in net worth	(131,613)	4,935	14	75	-	(302)	4,722	-	(126,891)
Transfers to/(from)/between reserves	(2,828)	(109)	-	14	-	2,923	2,828	-	-
Net worth as at 30 June 2019	(635,010)	68,438	73	13,756	8,514	9,596	90,377	-	(544,633)
less: Minority interests	182	-	-	1	-	-	1	-	183
Attributable to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at 30 June 2019	(635,192)	68,438	73	13,755	8,514	9,596	90,376	-	(544,816)

The above statements should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accompanying notes.

국가별 재무제표(회주) 5-1. operating statement by sector

Australian Government operating statement by sector — including General Government Sector Financial Report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Note	General Government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Public financial corporations		Eliminations and netting(a)		Australian Government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m	\$m	\$m	\$m	\$m	\$m	\$m	\$m	\$m	\$m
Revenue from transactions										
Taxation revenue	456,203	426,977	-	-	-	-	(312)	(6)	455,891	426,971
Sales of goods and services	12,488	9,770	15,644	11,770	793	734	(1,195)	(1,160)	27,730	21,114
Interest income	4,455	3,317	43	63	2,418	2,183	(890)	(789)	6,025	4,774
Dividend income	9,622	5,066	-	-	68	74	(1,893)	(922)	7,797	4,247
Other	10,722	10,971	177	476	158	151	(517)	(843)	10,538	10,755
Total revenue	493,490	456,121	15,864	12,318	3,435	3,142	(4,807)	(3,720)	507,902	467,861
Expenses from transactions										
Gross operating expenses										
Wages and salaries	19,775	19,214	4,362	4,167	200	190	-	-	24,337	23,571
Superannuation	9,136	7,791	486	493	82	81	(9)	(6)	9,695	8,359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9,013	8,790	3,578	2,824	75	70	-	-	12,666	11,684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115,308	100,324	10,282	7,882	467	425	(1,405)	(1,413)	124,652	107,218
Other operating expenses	7,893	6,721	745	578	94	59	(6)	(5)	8,725	7,353
Total gross operating expenses	161,125	142,840	19,453	15,944	918	825	(1,420)	(1,424)	180,076	158,165
Interest expense	9,444	9,240	-	-	-	-	-	-	9,444	9,240
Superannuation interest expense	18,073	17,811	1,127	702	1,161	1,272	(891)	(789)	19,470	18,996
Current transfers										
Current grants	147,992	139,426	-	-	-	-	(26)	4	147,956	139,430
Subsidy expenses	11,501	11,224	-	-	-	-	(138)	(154)	11,363	11,070
Personal benefits	125,324	127,146	-	-	-	-	-	-	125,324	127,146
Tax expenses	-	-	196	44	10	2	(206)	(46)	-	-
Total current transfers	284,807	277,790	196	44	10	2	(370)	(196)	284,643	277,646
Capital transfers										
Mutually agreed write-downs	1,243	1,996	-	-	-	-	-	-	1,243	1,996
Other capital grants	9,955	10,597	-	-	-	-	(107)	(417)	9,848	10,180
Total capital transfers	11,198	12,593	-	-	-	-	(107)	(417)	11,091	12,176
Total expenses	484,647	460,280	20,776	16,690	2,089	2,059	(2,788)	(2,826)	504,724	476,243
Net operating balance	8,843	(4,159)	(4,912)	(4,372)	1,346	1,043	(2,019)	(894)	3,258	(6,382)

(a) The eliminations and netting column includes the elimination of inter-sector transactions and the netting of gains and losses across sectors.

Australian Government operating statement by sector — including General Government Sector Financial Report
(continue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Note	General Government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Public financial corporations		Eliminations and netting(a)		Australian Government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m	\$m	\$m	\$m	\$m	\$m	\$m	\$m	\$m	\$m
Other economic flows - included in operating result											
Net write-down of assets (including bad and doubtful debts)	4A	(6,415)	(7,810)	(660)	(129)	3	(2)	-	-	(7,072)	(7,941)
Net gains/(losses) from the sale of assets	4B	5,291	7,477	6	2	197	(259)	-	-	5,494	7,220
Net foreign exchange gains/(losses)	4C	(902)	(1,269)	(9)	(9)	3,179	3,260	-	-	2,268	1,982
Net interest on derivatives gains/(losses)	4C	(622)	61	(2)	-	20	28	-	-	(604)	89
Net fair value gains/(losses)	4C	(32,206)	5,521	27	-	71	57	-	-	(32,108)	5,578
Net other gains/(losses)	4C	(10,142)	(2,511)	(26)	34	(349)	(195)	-	-	(10,517)	(2,672)
Operating result(b)		(35,153)	(2,690)	(5,576)	(4,474)	4,467	3,932	(2,019)	(894)	(39,281)	(4,126)
Other economic flows - through equity											
Will not be reclassified to operating result											
Revaluation of non-financial assets	7	1,899	2,420	1,936	232	108	76	-	-	3,943	2,728
Actuarial revaluations of superannuation		(92,165)	(25,685)	(119)	355	(345)	37	-	-	(92,629)	(25,293)
Other economic revaluations		39	44	(14)	6,924	38	2	(71)	(6,908)	(8)	62
May be reclassified to operating result											
Revaluation of equity investments	7	1,253	(869)	-	-	846	224	(1,015)	1,160	1,084	515
Comprehensive result		(125,127)	(25,780)	(3,773)	3,037	5,114	4,271	(3,105)	(6,642)	(126,891)	(25,114)
Net operating balance		8,943	(4,169)	(4,912)	(4,372)	1,346	1,043	(2,019)	(894)	3,258	(8,382)
Less 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											
Purchases of non-financial assets		14,688	13,735	9,432	8,402	50	53	-	-	24,170	22,190
less Sales of non-financial assets		188	4,280	72	174	161	1	(1)	(1)	420	4,434
less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9,013	8,790	3,578	2,824	75	70	-	-	12,666	11,664
plus Change in inventories		637	629	23	37	(5)	14	-	-	655	680
plus Other movements in non-financial assets		3	(28)	(4)	(4)	-	-	-	-	(1)	(31)
Total 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		6,127	1,285	5,801	5,437	(191)	(4)	1	2	11,738	6,721
Fiscal balance (Net lending/borrowing)		2,716	(5,445)	(10,713)	(9,809)	1,537	1,047	(2,020)	(896)	(8,480)	(15,103)

(a) The eliminations and netting column includes the elimination of inter-sector transactions and the netting of gains and losses across sectors.
(b) General Government operating result includes \$18 million attributable to minority interests (2018: \$4 million).

Certain comparatives have been restated. Refer to Note 1.5 for further details.

국가별 재무제표(호주) 5-2. balance sheet by sector

Australian Government balance sheet by sector — including General Government Sector Financial Report
as at 30 June 2019

Note	General Government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Public financial corporations		Eliminations(a)		Australian Government	
	2019 \$m	2018 \$m	2019 \$m	2018 \$m	2019 \$m	2018 \$m	2019 \$m	2018 \$m	2019 \$m	2018 \$m
Assets										
Financial assets										
Cash and deposits	8,606	6,863	2,078	1,973	2,234	636	(4,657)	(3,147)	8,261	6,325
Advances paid	75,394	56,088	19	15	2,267	2,037	(13,762)	(6,345)	63,918	51,765
Other receivables and accrued revenue	52,770	50,271	2,138	1,884	88	71	(1,817)	(1,121)	53,179	51,105
Investments, loans and placements	187,947	189,512	923	1,054	182,616	187,750	(36,007)	(52,678)	333,479	325,638
Equity investments	124,444	113,590	171	376	547	464	(67,243)	(55,338)	67,919	59,092
Total financial assets	449,161	416,294	5,329	5,302	187,752	190,958	(115,466)	(116,629)	526,766	493,925
Non-financial assets										
Land	11,834	11,598	1,569	1,535	224	183	1	-	13,628	13,316
Buildings	27,276	26,322	2,325	2,376	427	375	(2)	-	30,028	29,073
Specialist military equipment	66,593	62,020	-	-	-	-	-	-	66,593	62,020
Other plant,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15,391	15,533	45,699	38,975	170	181	(4)	-	61,256	54,689
Intangibles	8,770	7,895	3,813	3,527	97	98	51	51	12,731	11,571
Investment property	160	173	181	168	-	-	(1)	-	340	341
Inventories	8,946	8,645	171	153	28	33	-	-	9,145	8,831
Heritage and cultural assets	11,695	11,619	-	-	-	-	-	-	11,695	11,619
Tax assets	-	-	951	933	6	5	(957)	(938)	-	-
Other non-financial assets	4,609	3,471	548	410	48	155	(66)	(93)	5,139	3,943
Total non-financial assets	155,274	147,276	55,257	48,077	1,000	1,030	(978)	(980)	210,553	195,403
Total assets	604,435	563,570	60,586	53,379	188,752	191,988	(116,464)	(119,609)	737,309	689,328
Liabilities										
Interest bearing liabilities										
Deposits held	388	381	14	6	69,390	81,675	(35,736)	(48,224)	34,056	33,841
Government securities	626,368	575,450	-	-	-	-	(7,149)	(7,789)	619,219	567,661
Loans	10,380	10,468	16,558	8,418	2,795	2,394	(13,493)	(6,099)	16,240	15,181
Other borrowings	1,531	1,524	8,633	7,283	-	-	-	-	10,164	8,807
Other interest bearing liabilities	6,763	7,589	331	166	2,375	3,005	-	-	9,469	10,760
Total interest bearing liabilities	645,430	595,412	25,536	15,876	74,560	87,074	(56,378)	(62,112)	689,148	636,250

(a) Comprises the elimination of inter-sector balances.

**Australian Government balance sheet by sector — including General Government Sector Financial Report (continued)
as at 30 June 2019**

	Note	General Government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Public financial corporations		Eliminations ^(a)		Australian Government	
		2019 \$m	2018 \$m	2019 \$m	2018 \$m	2019 \$m	2018 \$m	2019 \$m	2018 \$m	2019 \$m	2018 \$m
Provisions and payables											
Superannuation liability	6F	415,286	313,552	34	25	726	393	-	-	416,046	313,970
Other employee liabilities	6F	26,090	19,813	1,773	1,696	227	199	-	-	28,090	21,698
Supplier payables	6G	8,271	7,547	4,759	4,274	100	123	22	(83)	13,152	11,861
Personal benefits payable	6G	2,994	2,758	-	-	-	-	-	-	2,994	2,758
Subsidies payable	6G	630	602	-	-	-	-	-	-	630	602
Grants payable	6G	2,742	3,384	8	-	-	-	-	-	2,750	3,384
Australian currency on issue	6H	-	-	-	-	80,024	75,565	-	-	80,024	75,565
Tax liabilities	6G	3,293	2,507	607	786	-	1	(607)	(787)	-	-
Other payables	6H	42,853	36,034	784	657	1,842	1,026	(1,934)	(1,162)	3,985	3,028
				713	614	1,547	1,302	-	-	45,123	37,950
Total provisions and payables		502,169	386,197	8,678	8,042	84,466	78,609	(2,519)	(2,032)	592,794	470,816
Total liabilities		1,147,599	981,609	34,214	23,918	159,026	165,683	(58,897)	(64,144)	1,281,942	1,107,066
Net worth											
Accumulated results		(612,189)	(483,355)	(19,415)	(13,438)	(217)	41	(3,371)	(3,966)	(635,192)	(500,718)
Reserves		68,842	65,205	9,960	8,156	29,601	25,968	(18,027)	(16,462)	90,376	82,869
Contributed equity		-	-	35,827	34,741	342	296	(36,169)	(35,037)	-	-
Minority interests		183	111	-	-	-	-	-	-	183	111
Net worth		(543,164)	(418,039)	26,372	29,461	29,726	26,305	(57,567)	(55,465)	(544,633)	(417,736)

(a) Comprises the elimination of inter-sector balances.

Certain comparatives have been restated. Refer to Note 1.5 for further details.

국가별 재무제표(호주) 5-3. cash flow statement by sector

Australian Government cash flow statement by sector — including General Government Sector Financial Report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General Government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Public financial corporations		Eliminations and netting(a)		Australian Government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m	\$m	\$m	\$m	\$m	\$m	\$m	\$m	\$m	\$m
OPERATING ACTIVITIES										
Cash received										
Taxes received	448,578	418,053	-	-	-	-	(322)	(87)	448,256	417,966
Receipts from sales of goods and services	12,863	9,941	17,137	13,064	735	701	(2,694)	(2,349)	28,041	21,357
Interest receipts	3,768	3,434	38	47	2,464	2,284	(1,000)	(1,029)	5,270	4,736
Dividend receipts	8,978	5,407	-	-	7	8	(1,086)	(1,314)	7,899	4,102
GST receipts	-	-	660	720	12	14	(672)	(734)	-	-
Other receipts	10,501	8,745	54	34	159	284	(437)	(465)	10,277	8,598
Total cash received	484,688	445,580	17,889	13,865	3,377	3,292	(6,211)	(5,978)	499,743	456,759
Cash used										
Taxes paid	-	-	(269)	(94)	(1)	-	270	94	-	-
Payments for employees	(29,120)	(27,969)	(4,802)	(4,194)	(236)	(215)	9	-	(34,149)	(32,388)
Payments for goods and services	(111,828)	(99,130)	(1,657)	(9,210)	(557)	(425)	3,049	2,862	(120,991)	(105,903)
Grants and subsidies paid	(170,467)	(161,868)	-	-	-	-	260	225	(170,207)	(161,643)
Interest paid	(18,951)	(16,568)	(446)	(122)	(1,109)	(1,318)	1,024	1,065	(19,482)	(16,943)
Personal benefits paid	(128,362)	(127,940)	-	-	-	-	-	-	(128,362)	(127,940)
GST paid	-	-	(410)	(426)	(15)	(14)	425	440	-	-
Other payments	(6,710)	(6,425)	(699)	(1,032)	(65)	(76)	-	6	(7,474)	(7,527)
Total cash used	(463,436)	(439,900)	(18,283)	(15,068)	(1,393)	(2,048)	5,037	4,692	(478,665)	(452,324)
Net cash from operating activities	21,252	5,680	(394)	(1,203)	1,394	1,244	(1,174)	(1,296)	21,078	4,435
INVESTING ACTIVITIES										
Investments in non-financial assets										
Sales of non-financial assets	597	1,325	43	332	159	-	-	-	799	1,657
Purchases of non-financial assets	(14,656)	(12,705)	(7,903)	(7,091)	(48)	(62)	15	10	(22,592)	(19,838)
Net cash from non-financial assets	(14,059)	(11,380)	(7,860)	(6,759)	111	(62)	15	10	(21,793)	(16,181)

(a) The eliminations and netting column includes the elimination of inter-sector transactions and the netting of certain cash flows across sectors.

Australian Government cash flow statement by sector – including General Government Sector Financial Report
(continue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General Government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Public financial corporations		Eliminations and netting(a)		Australian Government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m	\$m	\$m	\$m	\$m	\$m	\$m	\$m	\$m	\$m
INVESTING ACTIVITIES										
Investments in financial assets for policy purposes	3,764	5,265	-	33	383	268	(87)	(120)	4,060	5,446
Receipts from policy investments	(18,152)	(25,306)	(2)	(4)	(632)	(237)	8,411	8,008	(10,375)	(17,539)
Payments for policy investments	(14,388)	(20,041)	(2)	29	(249)	31	8,324	7,888	(6,315)	(12,093)
Net cash from policy investments	1,491	(43)	(27)	144	9,131	9,217	(14,670)	(15,531)	(4,075)	(6,213)
Investments in financial assets for liquidity purposes	(25,956)	(31,464)	(7,889)	(6,586)	8,993	9,196	(6,351)	(7,653)	(32,183)	(38,487)
Net cash from investing activities	10,415	30,564	8,120	5,382	344	(52)	(6,791)	(1,413)	12,086	34,481
FINANCING ACTIVITIES										
Cash flows from financing activities	-	-	997	2,593	(60)	1C	(837)	(2,703)	-	-
Net cash received	2,394	2,779	77	23	(8,192)	(9,153)	12,524	10,129	6,803	3,778
Net cash used	12,809	33,343	9,194	8,096	(7,908)	(9,195)	4,796	6,013	18,891	38,259
Net cash used	(6)	-	(397)	(191)	(800)	(1,129)	1,197	1,320	(6)	-
Distributions paid	(5,356)	(5,836)	(409)	(329)	(81)	-	2	-	(5,844)	(6,165)
Other financing	(6,362)	(6,836)	(806)	(520)	(881)	(1,129)	1,199	1,320	(5,850)	(6,165)
Net cash used	7,447	27,607	8,388	7,578	(6,789)	(10,324)	5,995	7,333	13,041	32,094
Net cash from financing activities	1,743	1,723	106	(211)	1,898	116	(1,510)	(1,506)	1,956	42
Net increase/(decrease) in cash	6,863	5,140	1,373	2,184	636	520	(3,147)	(1,561)	6,325	6,283
Cash at beginning of year	8,606	6,863	2,078	1,973	2,234	636	(4,657)	(3,147)	8,261	6,325
Cash at end of year	21,252	5,680	(394)	(1,203)	1,394	1,244	(1,174)	(1,286)	21,076	4,435
Key fiscal aggregate										
Net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14,059)	(11,380)	(7,860)	(6,759)	111	(52)	15	10	(21,793)	(18,181)
Net cash flows from investments in non-financial assets	7,193	(6,700)	(8,254)	(7,962)	1,505	1,192	(1,159)	(1,276)	(715)	(13,746)
Cash surplus/(deficit)										

(a) The eliminations and netting column includes the elimination of inter-sector transactions and the netting of certain cash flows across sectors.

Certain comparatives have been restated refer to Note 1.5 for further details.

국가별 재무제표(호주) 5-4.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by sector

Australian Government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net worth) by sector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Item	Accumulated results \$m	Asset revaluation reserve \$m	Reserves				Statutory funds \$m	Other reserves \$m	Total reserves \$m	Contributed equity \$m	Total Net Worth \$m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reserve \$m	Investments reserve \$m	Investment reserve \$m	Reserve \$m					
General Government											
Adjusted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17	(456,312)	44,143	41	20,827	-	-	45	65,056	-	-	(391,256)
Dividends provided for or paid	(3)	-	-	-	-	-	-	-	-	-	(3)
Comprehensive result - change in net worth	(28,349)	2,448	13	(887)	-	-	(5)	1,569	-	-	(26,780)
Transfers to/(from)/between reserves	1,415	(4)	-	(1,447)	-	-	32	(1,419)	-	-	-
Net worth as at 30 June 2018	(483,245)	46,587	54	18,493	-	-	72	65,206	-	-	(418,039)
less: Minority interests	110	-	-	1	-	-	-	1	-	-	111
Attributable to the General Government	(483,355)	46,587	54	18,492	-	-	72	65,205	-	-	(418,150)
Adjustment on initial application of AASB 9	51	(43)	-	-	-	-	-	(43)	-	-	8
Non-material changes in accounting policy and errors	-	-	-	-	-	-	-	-	-	-	-
Adjusted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18	(483,194)	46,544	54	18,493	-	-	72	65,163	-	-	(418,031)
Dividends provided for or paid	(6)	-	-	-	-	-	-	-	-	-	(6)
Comprehensive result - change in net worth	(128,293)	2,064	11	1,090	-	-	1	3,166	-	-	(125,127)
Contribution/(Distribution) of Equity	-	-	-	-	-	-	-	-	-	-	-
Transfers to/(from)/between reserves	(514)	14	-	511	-	-	(11)	514	-	-	-
Other movements	-	-	-	-	-	-	-	-	-	-	-
Net worth as at 30 June 2019	(612,007)	48,622	65	20,094	-	-	62	66,843	-	-	(543,164)
less: Minority interests	182	-	-	1	-	-	-	1	-	-	183
Attributable to the General Government	(612,189)	48,622	65	20,093	-	-	62	66,842	-	-	(543,347)

Australian Government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net worth) by sector (continue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Item	Reserves							Total Net Worth \$m	
	Accumulated results \$m	Asset revaluation reserve \$m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reserve \$m	Investments reserve \$m	Statutory funds \$m	Other reserves \$m	Total reserves \$m		Contributed equity \$m
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17	(10,274)	2,696	2	-	-	266	2,964	31,087	23,777
Other movements	-	-	-	-	-	-	-	-	-
Adjusted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17	(10,274)	2,696	2	-	-	266	2,964	31,087	23,777
Comprehensive result - change in net worth	(2,993)	5,217	3	-	-	(7)	5,213	817	3,037
Dividends provided for or paid	(190)	-	-	-	-	-	-	-	(190)
Transfers to/(from)/between reserves	19	(8)	-	-	-	(11)	(19)	-	-
Contribution/(distribution) of equity	-	-	-	-	-	-	-	2,837	2,837
Net worth as at 30 June 2018	(13,438)	7,905	5	-	-	248	8,158	34,741	29,461
Adjustment on initial application of AASB 9	(4)	-	-	-	-	-	-	-	(4)
Adjusted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18	(13,442)	7,905	5	-	-	248	8,158	34,741	29,457
Comprehensive result - change in net worth	(5,661)	1,972	3	-	-	(88)	1,887	1	(3,773)
Dividends provided for or paid	(397)	-	-	-	-	-	-	-	(397)
Transfers to/(from)/between reserves	85	(17)	-	-	-	(68)	(85)	-	-
Contribution/(distribution) of equity	-	-	-	-	-	-	-	1,085	1,085
Other movements	-	-	-	-	-	-	-	-	-
Net worth as at 30 June 2019	(19,415)	9,860	8	-	-	92	9,960	35,827	26,372

Australian Government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net worth) by sector (continue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Item	Reserves							Total Net Worth \$m	
	Accumulated results \$m	Asset revaluation reserve \$m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reserve \$m	Investments reserve \$m	Statutory funds \$m	Other reserves \$m	Total reserves \$m		Contributed equity \$m
Public financial corporations									
Adjusted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17	89	4,786	-	-	14,119	3,476	22,391	286	22,756
Comprehensive result - change in net worth	3,832	300	-	-	-	139	439	-	4,271
Dividends provided for or paid	(732)	-	-	-	-	-	-	-	(732)
Transfers to/(from)/between reserves	(3,148)	-	-	-	-	3,148	3,148	-	-
Contribution/(distribution) of equity	-	-	-	-	-	-	-	10	10
Net worth as at 30 June 2018	41	5,086	-	-	14,119	6,763	25,968	296	26,305
Adjustment on initial application of AASB 9	(1)	-	-	-	-	-	-	-	(1)
Adjusted opening balance as at 1 July 2018	40	5,086	-	-	14,119	6,763	25,968	296	26,304
Comprehensive result - change in net worth	4,341	953	-	-	-	(216)	737	36	5,114
Dividends provided for or paid	(1,596)	-	-	-	-	-	-	-	(1,596)
Transfers to/(from)/between reserves	(3,002)	(106)	-	-	-	3,002	2,896	106	-
Contribution/(distribution) of equity	-	-	-	-	-	-	-	(96)	(96)
Other movements	-	-	-	-	-	-	-	-	-
Net worth as at 30 June 2019	(217)	5,933	-	-	14,119	9,549	29,601	342	29,726

The above statements should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accompanying notes.

국가별 재무제표(뉴질랜드) 1.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2019 Forecast at				Actual	
Budget	Budget		Note	30 June	30 June
2018	2019			2019	2018
\$m	\$m			\$m	\$m
Revenue					
83,241	83,957	Taxation revenue	3	85,723	79,596
5,633	5,827	Other sovereign revenue	3	6,028	5,223
88,874	89,784	Total sovereign revenue		91,751	84,819
19,237	19,386	Sales of goods and services	4	19,885	18,228
2,966	2,694	Interest revenue	5	2,685	2,798
4,220	4,554	Other revenue	6	4,972	4,128
26,423	26,634	Total revenue earned through operations		27,542	25,154
115,297	116,418	Total revenue (excluding gains)		119,293	109,973
Expenses					
28,394	28,192	Transfer payments and subsidies	7	28,190	25,366
24,369	24,977	Personnel expenses	8	25,983	23,690
4,840	4,972	Depreciation	16	4,557	4,275
44,976	45,692	Other operating expenses	9	42,774	41,614
4,045	3,967	Interest expenses	5	4,059	4,151
4,877	5,274	Insurance expenses	11	5,876	4,918
760	265	Forecast new operating spending		-	-
(1,145)	(800)	Top-down expense adjustment		-	-
111,116	112,559	Total expenses (excluding losses)		111,439	104,014
444	394	Less minority interests share of 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 and losses		346	425
3,737	3,465	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 and losses (OBEGAL) (excluding minority interests)		7,508	5,534
2,887	1,445	Net gains/(losses) on financial instruments	5	4,397	5,331
(83)	(5,340)	Net gains/(losses) on non-financial instruments	10	(14,348)	(2,802)
2,804	(3,895)	Total gains/(losses)		(9,951)	2,529
17	76	Less minority interests share of total gains/(losses)		115	87
2,787	(3,971)	Gains/(losses) (excluding minority interests)		(10,066)	2,442
249	222	Net surplus from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284	420
6,773	(284)	Operating balance (excluding minority interests)		(2,274)	8,396
Operating balance consists of:					
6,773	(284)	Operating balance (excluding minority interests)		(2,274)	8,396
461	470	Minority interests share of operating balance	22	461	512
7,234	186	Operating balance (including minority interests)		(1,813)	8,908

Analysis of Expenses by Functional Classification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2019 Forecast at			Actual	
Budget 2018 \$m	Budget 2019 \$m		30 June 2019 \$m	30 June 2018 \$m
		Total Crown expenses		
33,660	33,777	Social security and welfare	34,006	30,195
17,507	17,850	Health	18,660	16,746
15,509	15,235	Education	15,280	14,607
4,755	4,914	Core government services	4,880	4,495
4,816	5,182	Law and order	5,050	4,494
9,150	9,982	Economic and industrial services	10,433	8,928
10,938	11,205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8,429	9,940
2,366	2,410	Defence	2,390	2,239
1,057	1,123	Environmental protection	1,108	1,227
2,603	2,582	Heritage, culture and recreation	2,503	2,518
2,090	2,428	Primary services	2,395	2,134
2,318	2,132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2,020	1,878
135	173	GSF pension expenses	130	163
552	114	Other	96	299
4,045	3,987	Finance costs	4,059	4,151
760	265	Forecast new operating spending	-	-
(1,145)	(800)	Top-down expense adjustment	-	-
111,116	112,559	Total Crown expenses (excluding losses)	111,439	104,014

Below is an analysis of core Crown expenses by functional classification. Core Crown expenses include expenses incurred by Ministers, Departments, Offices of Parliament, the NZ Superannuation Fund and the Reserve Bank, but not Crown entiti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Details of unappropriated expenditure can be found on pages 141 to 148.

2019 Forecast at			Actual	
Budget 2018 \$m	Budget 2019 \$m		30 June 2019 \$m	30 June 2018 \$m
		Core Crown expenses		
28,949	28,961	Social security and welfare	28,844	25,999
18,071	18,277	Health	18,268	17,159
14,663	14,312	Education	14,293	13,629
5,046	5,326	Core government services	5,314	4,670
4,419	4,757	Law and order	4,625	4,184
3,307	3,028	Economic and industrial services	3,006	2,732
2,622	3,212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2,889	2,559
2,374	2,418	Defence	2,395	2,251
1,058	1,125	Environmental protection	1,119	1,238
756	1,088	Primary services	960	807
880	913	Heritage, culture and recreation	918	850
878	711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727	552
122	159	GSF pension expenses	116	150
552	114	Other	96	299
3,408	3,434	Finance costs	3,452	3,497
760	265	Forecast new operating spending	-	-
(1,145)	(800)	Top-down expense adjustment	-	-
86,720	87,300	Total core Crown expenses (excluding losses)	87,022	80,576

국가별 재무제표(뉴질랜드) 3. Statement of Changes in Net Worth

Statement of Changes in Net Worth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2019 Forecast at			Note	Actual			Total net worth
Budget 2018	Budget 2019			Taxpayer funds	Reserves	Minority interests	
\$m	\$m			\$m	\$m	\$m	
116,472	116,472	Net worth at 30 June 2017		26,456	84,076	5,940	116,472
7,446	8,908	Operating balance		8,396	-	512	8,908
(22)	10,668	Net revaluations	16	-	10,598	70	10,668
273	59	Transfers to/(from) reserves (Gains)/losses transferred to the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12	49	(2)	59
5	(25)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differences on foreign operations		-	(25)	-	(25)
32	122	Other movements		-	115	7	122
(97)	(34)			(23)	(10)	(1)	(34)
7,637	19,698	Total comprehensive revenue and expense		8,385	10,727	586	19,698
(542)	(533)	Transactions with minority interests	22	-	-	(533)	(533)
123,567	135,637	Net worth at 30 June 2018		34,841	94,803	5,993	135,637
-	628	Impact of adoption NZ PBE IFRS 9	27	599	60	-	659
123,567	136,265	Adjusted opening net worth		35,440	94,863	5,993	136,296
7,234	186	Operating balance		(2,274)	-	461	(1,813)
-	(33)	Net revaluations	16	-	11,884	589	12,473
69	240	Transfers to/(from) reserves (Gains)/losses transferred to the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130	(255)	(77)	(202)
-	9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differences on foreign operations		-	(2)	-	(2)
-	-	Other movements		-	(39)	(10)	(49)
(50)	(24)			(18)	17	(11)	(12)
7,253	378	Total comprehensive revenue and expense		(2,162)	11,605	952	10,395
(503)	(477)	Transactions with minority interests	22	-	-	(378)	(378)
130,317	136,166	Net worth at 30 June 2019		33,278	106,468	6,567	146,313

국가별 재무제표(뉴질랜드) 4. Statement of Cash Flows

Statement of Cash Flow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9

2019 Forecast at		Actual	
Budget 2018 \$m	Budget 2019 \$m	30 June 2019 \$m	30 June 2018 \$m
		Cash Flows From Operations	
		Cash was provided from	
81,963	82,622	83,018	78,566
4,710	4,860	5,187	4,594
19,260	19,331	19,817	18,387
2,462	2,462	2,562	2,466
4,909	4,271	4,566	4,038
113,304	113,546	115,170	108,051
		Cash was disbursed to	
29,308	28,156	27,982	25,382
71,438	73,036	72,177	67,687
4,052	4,056	4,025	4,098
760	265	-	-
(1,145)	(800)	-	-
104,413	104,713	104,184	97,167
8,891	8,833	10,986	10,884
		Cash Flows From Investing Activities	
		Cash was provided from	
300	182	305	418
108,834	125,116	104,587	102,569
-	-	1	-
3,165	1,834	2,268	1,898
42	111	280	127
112,341	127,243	107,441	105,012
		Cash was disbursed to	
10,491	10,025	8,830	8,090
102,717	115,523	100,642	107,361
723	913	792	817
3,368	3,563	4,170	2,397
462	146	144	505
1,267	458	-	-
(600)	(1,250)	-	-
118,428	129,378	114,578	119,170
(6,087)	(2,135)	(7,137)	(14,158)
2,804	6,698	3,849	(3,274)

2019 Forecast at			Actual	
Budget	Budget		30 June	30 June
2018	2019		2019	2018
\$m	\$m		\$m	\$m
2,804	6,698	Net cash flows from operating and investing activities	3,849	(3,274)
		Cash Flows From Financing Activities		
		Cash was provided from		
196	233	Issue of circulating currency	437	395
7,862	8,430	Issue of Government bonds	8,372	7,043
449	241	Issue of foreign currency borrowings	1,877	358
11,912	18,332	Issue of other New Zealand dollar borrowings	16,344	16,950
<u>20,419</u>	<u>27,236</u>	Total cash provided from financing activities	<u>27,030</u>	<u>24,746</u>
		Cash was disbursed to		
11,240	11,974	Repayment of Government bonds	11,908	6,828
(9)	2,392	Repayment of foreign currency borrowings	389	1,028
12,554	16,083	Repayment of other New Zealand dollar borrowings	16,874	13,895
532	518	Dividends paid to minority interests	504	541
<u>24,317</u>	<u>30,967</u>	Total cash disbursed to financing activities	<u>29,675</u>	<u>22,292</u>
<u>(3,898)</u>	<u>(3,731)</u>	Net cash flows from financing activities	<u>(2,645)</u>	<u>2,454</u>
(1,094)	2,967	Net movement in cash	1,204	(820)
18,068	19,340	Opening cash balance	19,340	18,732
2	(93)	Foreign-exchange gains/(losses) on opening cash	348	1,428
<u>16,976</u>	<u>22,214</u>	Closing cash balance	<u>20,892</u>	<u>19,340</u>

2019 Forecast at		Reconciliation Between the Net Cash Flows from Operations and the Operating Balance	Actual	
Budget 2018	Budget 2019		30 June 2019	30 June 2018
\$m	\$m		\$m	\$m
8,891	8,833	Net Cash Flows from Operations	10,986	10,884
		Gains/(losses)		
2,887	1,445	Net gains/(losses) on financial instruments	4,397	5,331
(83)	(5,340)	Net gains/(losses) on non-financial instruments	(14,348)	(2,802)
17	76	Less minority interests share of net gains/(losses)	115	87
2,787	(3,971)	Total gains/(losses)	(10,066)	2,442
		Other Non-cash Items in Operating Balance		
(4,840)	(4,972)	Depreciation	(4,557)	(4,275)
(729)	(751)	Amortisation and impairment of non-financial assets	(934)	(906)
(762)	(902)	Cost of concessionary lending	(763)	(704)
(16)	158	Impairment of financial assets (excl receivables)	(41)	105
-	-	Reversal of Rail network impairment	2,576	-
592	594	Change in accumulating pension expenses	571	568
(623)	(824)	Change in accumulating insurance expenses	(1,703)	(628)
264	(532)	Other non-cash items	(39)	529
(6,114)	(7,229)	Total other non-cash items in operating balance	(4,890)	(5,311)
		Movements in Working Capital		
1,270	1,163	Increase/(decrease) in receivables	4,188	1,614
485	53	Increase/(decrease) in accrued interest	48	265
(23)	75	Increase/(decrease) in inventories	175	177
(7)	67	Increase/(decrease) in prepayments	36	(8)
(108)	39	Decrease/(increase) in deferred revenue	(97)	(200)
(408)	686	Decrease/(increase) in payables/provisions	(2,654)	(1,467)
1,209	2,083	Total movements in working capital	1,696	381
6,773	(284)	Operating balance (excluding minority interests)	(2,274)	8,396

국가별 재무제표(뉴질랜드) 5.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s at 30 June 2019

2019 Forecast at		Actual		Note		
Budget 2018 \$m	Budget 2019 \$m	30 June 2019 \$m	30 June 2018 \$m			
Assets						
16,976	22,214	Cash and cash equivalents	20,892		19,340	
20,770	21,622	Receivables	12 24,287		21,385	
42,630	38,533	Marketable securities, deposits and derivatives in gain	13 44,453		51,117	
39,344	39,267	Share investments	14 40,615		36,256	
29,942	32,131	Advances	15 33,057		29,422	
1,036	1,418	Inventory		1,519	1,344	
2,637	2,914	Other assets		2,887	2,817	
155,867	164,316	Property, plant & equipment	16 178,025		159,018	
15,384	15,729	Equity accounted investments	17 16,109		15,416	
3,980	4,026	Intangible assets and goodwill		3,912	3,817	
1,452	458	Forecast new capital spending		-	-	
(1,085)	(1,250)	Top-down capital adjustment		-	-	
328,933	341,378	Total assets		365,756	339,932	
Liabilities						
6,636	6,609	Issued currency		6,813	6,375	
13,484	13,726	Payables	18 17,723		14,877	
2,414	2,384	Deferred revenue		2,523	2,424	
112,890	112,057	Borrowings	19 110,477		115,652	
44,732	49,794	Insurance liabilities	11 58,364		45,294	
9,987	11,414	Retirement plan liabilities	20 13,179		10,991	
8,473	9,228	Provisions	21 10,364		8,682	
198,616	205,212	Total liabilities		219,443	204,295	
130,317	136,166	Total assets less total liabilities		146,313	135,637	
Net Worth						
40,293	35,205	Taxpayer funds		33,278	34,841	
84,089	94,68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revaluation reserve	16 106,502		94,750	
75	108	Other reserves		(34)	53	
124,457	129,999	Total net worth attributable to the Crown		139,746	129,644	
5,860	6,167	Net worth attributable to minority interests	22 6,567		5,993	
130,317	136,166	Total net worth		146,313	135,637	

국가별 재무제표(뉴질랜드) 6. Statement of Seg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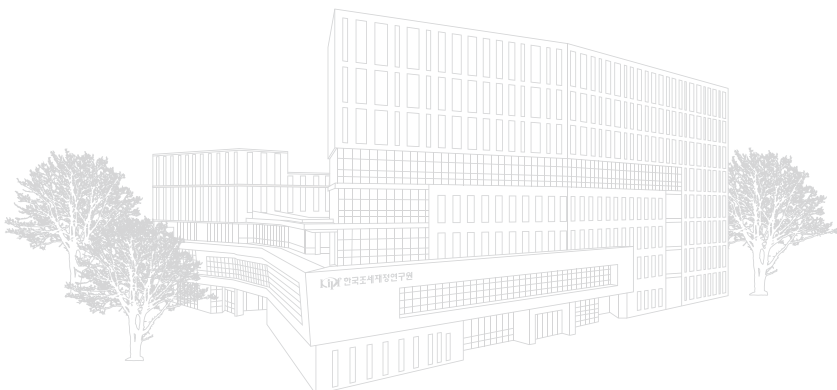
Statement of Segments

	Current Year Actual vs Estimated Actuals (Budget 2019)									
	Core Crown		Crown entities		State-owned enterprises		Inter-segment eliminations		Total Crown	
	Actual 2019 \$m	Forecast Budget 2019 \$m	Actual 2019 \$m	Forecast Budget 2019 \$m	Actual 2019 \$m	Forecast Budget 2019 \$m	Actual 2019 \$m	Forecast Budget 2019 \$m	Actual 2019 \$m	Forecast Budget 2019 \$m
Revenue										
Taxation revenue	86,468	84,650	-	-	-	-	(745)	(693)	85,723	83,957
Other sovereign revenue	1,977	1,963	5,588	5,399	-	-	(1,537)	(1,535)	6,028	5,827
Revenue from core Crown funding	-	-	30,602	30,940	216	191	(30,818)	(31,131)	-	-
Sales of goods and services	1,672	1,638	2,224	2,251	16,533	16,092	(544)	(595)	19,885	19,386
Interest revenue	1,099	1,098	1,016	1,054	1,014	987	(444)	(445)	2,685	2,694
Other revenue	2,409	2,250	3,845	3,591	873	867	(2,155)	(2,154)	4,972	4,554
Total Revenue (excluding gains)	93,625	91,599	43,276	43,235	18,636	18,137	(36,243)	(36,563)	119,293	116,418
Expenses										
Transfer payments and subsidies	29,119	29,128	-	-	-	-	(929)	(936)	28,190	28,192
Personnel expenses	7,844	7,662	15,085	14,321	3,096	3,033	(42)	(39)	25,983	24,977
Other operating expenses	46,608	47,611	29,528	29,491	10,945	13,126	(33,874)	(34,262)	53,207	55,938
Interest expenses	3,451	3,434	117	79	1,045	1,041	(554)	(566)	4,059	3,987
Forecast new operating spending	-	265	-	-	-	-	-	-	-	265
Top-down expense adjustment	-	(850)	-	-	-	-	-	-	-	(850)
Total Expenses (excluding losses)	87,022	87,300	44,730	43,880	15,086	17,202	(35,399)	(35,823)	111,439	112,559
Minority interest share of 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losses	(9)	-	-	-	(355)	(414)	18	20	(346)	(394)
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 and losses (excluding minority interests)	6,594	4,299	(1,456)	(646)	3,195	521	(824)	(710)	7,508	3,465
Gains/losses and other items	463	562	(7,739)	(2,319)	168	144	(2,674)	(2,136)	(9,782)	(3,749)
Operating Balance (excluding minority interests)	7,057	4,861	(9,194)	(2,964)	3,363	665	(3,509)	(2,846)	(2,274)	(284)
Assets										
Financial assets	106,471	99,866	57,604	52,577	27,624	26,935	(28,395)	(25,611)	163,304	153,787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44,064	42,677	93,731	87,878	40,210	33,762	-	(1)	178,025	164,316
Investments in associates, CEs and SOEs	48,432	48,728	13,311	12,858	290	322	(45,924)	(46,179)	16,109	15,729
Other assets	3,912	3,963	1,795	1,696	2,682	2,727	(71)	(58)	8,318	8,358
Forecast adjustments	-	(792)	-	-	-	-	-	-	-	(792)
Total Assets	202,899	194,472	166,441	155,009	70,806	63,746	(74,390)	(71,849)	365,756	341,378
Liabilities										
Borrowings	91,739	91,722	6,931	6,838	32,563	32,418	(20,756)	(18,921)	110,477	112,057
Other liabilities	39,271	34,684	69,507	58,214	9,315	8,423	(9,127)	(8,169)	108,966	93,155
Total Liabilities	131,010	126,406	76,438	65,052	41,878	40,841	(29,883)	(27,097)	219,443	205,212
Net Worth	71,889	68,066	90,003	89,957	28,928	22,905	(44,507)	(44,762)	146,313	136,166
Cost of Acquisition of Physical Assets (Cash)	2,748	2,933	4,295	4,875	1,787	2,217	-	-	8,830	10,025

	Current Year Actual vs Prior Year Actual									
	Core Crown		Crown entities		State-owned enterprises		Inter-segment eliminations		Total Crown	
	Actual 2019 \$m	Actual 2018 \$m	Actual 2019 \$m	Actual 2018 \$m	Actual 2019 \$m	Actual 2018 \$m	Actual 2019 \$m	Actual 2018 \$m	Actual 2019 \$m	Actual 2018 \$m
Revenue										
Taxation revenue	86,468	80,224	-	-	-	-	(745)	(628)	85,723	79,596
Other sovereign revenue	1,977	1,638	5,588	4,966	-	-	(1,537)	(1,381)	6,028	5,223
Revenue from core Crown funding	-	-	30,602	29,017	216	139	(30,818)	(25,165)	-	-
Sales of goods and services	1,672	1,598	2,224	2,269	16,533	14,911	(544)	(550)	19,885	18,228
Interest revenue	1,099	1,175	1,016	1,032	1,014	964	(444)	(373)	2,685	2,798
Other revenue	2,409	2,143	3,845	3,176	873	858	(2,155)	(2,049)	4,972	4,126
Total Revenue (excluding gains)	93,625	86,778	43,275	40,460	18,636	16,872	(36,243)	(34,137)	119,293	109,973
Expenses										
Transfer payments and subsidies	29,119	26,237	-	-	-	-	(929)	(871)	28,190	25,366
Personnel expenses	7,844	7,249	15,085	13,546	3,096	2,935	(42)	(40)	25,983	23,690
Other operating expenses	46,608	43,593	29,528	27,564	10,945	11,731	(33,874)	(32,101)	53,207	50,807
Interest expenses	3,451	3,497	117	95	1,045	1,058	(554)	(499)	4,059	4,151
Total Expenses (excluding losses)	87,022	80,576	44,730	41,225	15,086	15,724	(35,399)	(33,511)	111,439	104,014
Minority interest share of 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losses	(9)	(2)	-	-	(355)	(448)	18	25	(346)	(425)
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 and losses (excluding minority interests)	6,594	6,200	(1,455)	(165)	3,195	700	(826)	(601)	7,508	5,334
Gains/losses and other items	463	3,243	(7,739)	291	168	161	(2,674)	(833)	(9,782)	2,862
Operating Balance (excluding minority interests)	7,057	9,443	(9,194)	(474)	3,363	861	(3,509)	(1,434)	(2,274)	8,396
Assets										
Financial assets	106,471	104,255	57,604	51,302	27,624	25,287	(28,395)	(23,324)	163,304	157,520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44,064	41,279	93,731	84,300	40,210	33,438	-	1	178,025	159,018
Investments in associates, CEs and SOEs	48,432	45,838	13,311	12,698	290	250	(45,924)	(43,370)	16,109	15,416
Other assets	3,912	3,656	1,795	1,659	2,682	2,729	(71)	(66)	8,318	7,978
Total Assets	202,899	195,028	166,441	149,959	70,806	61,704	(74,390)	(66,759)	365,756	339,532
Liabilities										
Borrowings	91,739	97,749	6,931	5,517	32,563	30,628	(20,756)	(18,242)	110,477	115,652
Other liabilities	39,271	34,758	69,507	53,974	9,315	8,517	(9,127)	(8,606)	108,966	88,543
Total Liabilities	131,010	132,507	76,438	59,491	41,878	39,145	(29,883)	(26,849)	219,443	204,295
Net Worth	71,889	62,521	90,003	90,468	28,928	22,559	(44,507)	(39,911)	146,313	135,637
Cost of Acquisition of Physical Assets (Cash)	2,748	2,334	4,295	3,991	1,787	1,765	-	-	8,830	8,090

부록 2. 재무보고 개선 자문 TF 최종보고서

김봉환	125
유승원	133
윤재원	145
이아영	167
전중열	178
정도진	189
지현미	201
최연식	218



2020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 TF 최종보고서

연구자문위원

김 봉 환

- ① 부처별 원가를 공시하는 목적은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으로 조직체계에 맞춰 통합 공시

<중앙관서 통합(안)>

구분	하위 중앙관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등 5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슴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개 부처	하위 17개 청
별도 표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의견

대통령과 국무총리 하위기관인 감사원이나 금융위원회 등을 통합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8개 부처 하위의 청을 통합하는 것과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를 통합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임.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쓰면서 통합된 내용을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 가능

- ② 현행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 대신 분야별 원가(16대 또는 12대) 정보 제공
 (1안) 現 재정운영표 대체
 (2안) 現 재정운영표는 유지하고 재무제표 신설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 주석 제공

자문의견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③ 국가재정운영표 상 내부거래 정보를 한줄로 차감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 제거 후 금액 반영

자문의견

내부거래제거 전이 정확한 원가인지 내부거래제거 후가 정확한 원가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둘 다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됨.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순원가와 국가재무제표의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가의 숫자가 일치되도록 해야 정보이용자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따라서, 만약 내부거래를 반영한 재정운영순원가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내부거래진 순원가를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 표시하여 이용자가 대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국세징수활동 공시 강화

(1안) 국세징수활동표를 재무제표로 위상 강화

(2안) 국세징수활동정보를 주석으로 제공

자문의견

저는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가능하면 국가재무제표를 기업 재무제표와 유사하게 가져가는 것이 정보이용자의 편의나 전문가의 양성이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 국세징수활동표를 별도 작성함에 따라 '미지급국세' 유동부채 인식 등 재무정보가 왜곡되는 부분이 존재

5-1. 조정계정을 유동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변경

5-2.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

자문의견

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정운영표와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6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공시계정과목이 과다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재정운영표와 중복 문제 제기

6-1.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분류(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는 재정운영표에서 총액으로만 제공

자문의견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면 성질별 재정운영표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2.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1안) 재무제표로 위상강화 / (2안) 주석으로 공시 강화

자문의견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기본 재무제표의 형식이 기업 재무제표와 이질화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2안을 지지합니다.

- [7]-1. 현 재무제표 상 중앙관서별 원가를 제공하고,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 [7]-2. 국가통합 수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

자문의견

정보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 [8]-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상태표 재무제표 신설**

- [8]-2. 국가재무제표에서 사회보험상태표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제외(혹은 구분 공시)하여 단순 자산·부채 정보가 아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자문의견

찬성합니다. 국가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금이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현 상황에서 법 개정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사회보험상태표의 제공은 유용한 정보제공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9] 사회복지, 국방, 보건 등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분야와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 수익 정보는 연관성이 높지 않으므로 비교환수익(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에 대한 정보는 비교환수익명세표를 통해 분리 제공**

자문의견

사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처 재정운영표에서도 비교환수익이 빠지게 되면, 비교환수익에 대한 징수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이 고민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교환수익 명세표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현재 재정운영표의 비교환 수익 부분을 비교환수익 명세표와 같이 자세하게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㉔-1. 중앙정부의 원가와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국세 수익의 차감항목 또는 비교환수익 중 정부간 이전비용 등으로 인식

자문의견
원가를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비교환수익에 반영하는 안을 찬성합니다.

㉔-2. 지방재정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처리

자문의견
찬성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자원) ① 교부세의 자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② 교부금 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㉕ 회계과목이 일괄 공시됨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이 모두 표시되어 공시과목이 과다(일반유형자산 11개, 사회기반시설 15개 등 총 40개)하므로 금액적 중요성이 큰 '자기국채', '자기공채'를 제외한 차감계정 모두를 공시과목에서 제외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1. 610조원 규모 국민연금 운용자산 별도 계정과목 신설(회계과목)

자문의견

국민적 관심과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 신설에 동의합니다

☐-2.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

자문의견

공시과목 축소를 위해 통합에 동의합니다.

☐-3.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기타일반유형자산, 전비품)과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하천, 기타사회기반시설) 계정과목 간소화

자문의견

간소화에 동의.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과목은 주석에서 상세보고할 수 있다고 판단됨

☐-4. 무형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 하위(관리과목)으로 구분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5. 장기차입부채의 국채 및 공채의 하위 계정과목 신설(국고채, 외평채 등)

자문의견

성격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신설에 동의합니다.

☐-6.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금별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험부채를 공시과목으로 상향

자문의견

재정건전성 이해 측면에서 필요. 동의합니다.

☐-7.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급여 성격의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 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계정과목 하향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8.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를 개별법 결산과 연관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으로 구성

자문의견
현재의 방식대로 유지하고 개별법 결산과 연계는 주석에 표시

☐9.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정부내 자산·부채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리하여 계정과목명으로 내부거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13 현 재무제표 작성단위(원)는 최대 16자리로 표현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기방식(만, 억, 조) 또는 (2안) 금액 표기 기준(백만, 십억, 조) 단위로 조정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현재 표시 방법은 숫자가 너무 커서 가독성이 떨어짐

☐14 각 중앙관서별로 프로그램 수가 다수(최대 39개)인 경우가 있고, 한 페이지에 25개의 프로그램이 공시됨에 따라 프로그램원가 부분만 1페이지 초과

☐14-1. 직관적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별 원가를 프로그램원가 대신 공시

- (1안)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 분야별원가 적용
- (2안) '부' 단위 중앙관서에 한하여 부문별원가로 개편
- (3안) 프로그램 개수 10개 이상인 중앙관서만 부문별원가로 개편
- (4안) 현행 유지

자문의견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분석단위이므로 프로그램을 유지하되 부문에 상관없이 부처내의 동일 프로그램은 하나로 보고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4-2. 재정운영표 상 순원가 금액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㉔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 2개로만 구분하여 공시하고, 현재 공시하는 회계 과목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성질별 재징운영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㉕ 비배분 수익·비용의 하위 회계과목으로 공시에서 제외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주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㉖-1. 일반수용비(210번대) 예산 관련 계정과목 등 금액적 중요성이 적은 계정과목을 관리과목으로 조정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㉖-2. 보조비의 하위 과목(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지방제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하위 과목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㉖-3. 기타이전비용의 하위과목(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등)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㉖-4. 기타비용, 기타수익 중 금액적 중요성 및 정보이용자 유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목 회계과목 격상

자문의견

동의합니다.

[총평] 재무제표 개선 TF 총괄 의견**자문의견**

재정상태표를 간소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단지 공시과목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부 신설하는 공시과목도 있어, 공시과목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불필요한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요약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가독성을 높이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항목을 상세히 보고하는 개편안에 대체로 동의하나, 프로그램에 대한 원가 표시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 TF 최종보고서

연구자문위원

유 승 원

- 부처별 원가를 공시하는 목적은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으로 조직체계에 맞춰 통합 공시

<중앙관서 통합(안)>

구분	하위 중앙관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등 5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슴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개 부처	하위 17개 청
별도 표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의견

1. 재정운영순원가는 예산회계, 재무회계 등 여타 회계정보에서의 구분 방식과 동일하게 구분해야 할 것임. 별도의 회계 정보만 독특한 구분체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2. 구분 기준(안)이 대통령, 국무총리, 18개 부처, 별도 표시 등 4구분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또는 목적적합성을 유의하게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행정상 편의적인 구분에 그칠 수 있음.
3. 또한, 국제기구(UN, OECD 등)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정부를 각각 하나의 제도단위(institution)로 구분할 뿐이지 중앙정부 이내 각 소관을 별도의 제도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각 소관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조직 관점에서 기준단위(unit)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위배되지 않음. 그러나, 대통령, 국무총리, 부처, 별도표시 등 4구분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경우 국제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음.
4. 위의 사항을 종합할 경우, 기존대로 소관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중앙관서를 통합하더라도 현재에 비해 차별화된 유의한 정책 정보가 제공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여겨짐.

- ② 현행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 대신 분야별 원가(16대 또는 12대) 정보 제공**
 (1안) 現 재정운영표 대체
 (2안) 現 재정운영표는 유지하고 재무제표 신설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 주석 제공

자문의견

- 16대 분야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이때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와, 예비비를 포함할 경우 등 두가지 정보를 제공하면 될 것임. 예를 들어, 예비비 제외시를 기본으로 하고 예비비 포함시를 각주로 추가할 수도 있음.
- 12대 분야와 16대 분야의 차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16대 분야를 공식 분야로 설정하였음 (본 자문위원이 당시 담당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이후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명분으로 12대 분야를 추가로 만들어 사용함. 그런데 12대 분야는, '사회복지'와 '보건'이라는 각각이 매우 큰 분야가 보건복지고용이라는 더 큰 분야로 합쳐졌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 보건이 과거보다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재정규모가 커지는 시점에서 이 두 분야를 하나로 합친 것은 정책적 관점 및 여타 분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작지 않음. '교통 및 물류'를 '국토 및 지역개발'과 합친 것도 유사한 문제가 있음.
- 또한, R&D의 경우 여타 분야와 매우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R&D는 다기능(분야) 속성을 가진 정보로서 여타 분야로부터 독립적인(independent)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중 하나로 선정되어 비판을 받음. R&D는 (여타 분야와 독립되는 별도의) 분야가 아니라, 속성정보로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임. 예를 들어, 어떠한 분야의 사업이든 노인,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분야의 사업이든 연구개발 사업은 R&D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즉, 노인, 청소년, 여성 예산을 속성정보로 관리하는 것처럼 R&D 사업은 속성정보로 관리되어야 함. 이러한 문제 때문에 12대 분야의 예산 합계가 전체 분야의 예산 합계가 상이함. 이러한 한계를 가진 정보는 정책적 의미가 퇴색됨. 12대 분야 사용을 지양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임. 참고로 국제기구(UN, OECD)도 정부기능분류(COFOG)에서 R&D를 별도의 기능으로 구분하지 않음.

- ③ 국가재정운영표 상 내부거래 정보를 한줄로 차감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 제거 후 금액 반영**

자문의견

- 예산사업의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자원의 순가치라는 순원가 개념에 적합한 회계정보 산출을 위해서 각 소관별 순원가 산정시 내부거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임.
- 순원가 정보는 소관별 정보이든 국가 전체 정보이든 내부거래가 제거되어야 할 것임.
- 성질별 원가 정보는 부처별 원가 정보든 원가 정책 관점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사료됨. 원가 정책 관점에서는 (동일한 사업의) 지역별 비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비교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업별 (프로그램, 단위사업 등) 정보가 의미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성질별 원가 정보와 부처별 원가 정보의 정보 유용성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사료됨.

4 국세징수활동 공시 강화

(1안) 국세징수활동표를 재무제표로 위상 강화

(2안) 국세징수활동정보를 주석으로 제공

자문의견

아래의 조세연 회계센터 의견에 대체로 동감함.

1. 현행 재정운영표와 국세징수활동표를 유지하고, 국세수의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2. 현금결산 정보에 이미 각 국세의 세부금액이 공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발생주의에 따른 국세수익을 세분화하여 공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

5 국세징수활동표를 별도 작성함에 따라 '미지급국세' 유동부채 인식 등 재무정보가 왜곡되는 부분이 존재

5-1. 조정계정을 유동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변경

자문의견

아래의 조세연 회계센터 의견에 대체로 동감함.

1. 미수국세의 차감계정으로 미지급국세를 인식할 경우 순액 기준으로는 채권관리책임이 있는 중앙관서(국세청 등)의 재무제표에 자산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2. 국세징수활동표와 재정운영표를 통합할 경우 국세징수활동표의 본래 목적인 수익 왜곡 방지가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국세수익 외 모든 비교환수익은 해당 중앙관서의 성과에 반영할 수 있는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르게 처리하는 유용성이 저하됨
3. 국세징수활동표에 국세수익, 대손상각비 등 수익비용계정뿐 아니라 미수국세, 대손충당금 등 국세관련 모든 계정과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5-2.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

자문의견

아래의 조세연 회계센터 의견에 대체로 동감함.

1. 미수국세의 차감계정으로 미지급국세를 인식할 경우 순액 기준으로는 채권관리책임이 있는 중앙관서(국세청 등)의 재무제표에 자산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2. 국세징수활동표와 재정운영표를 통합할 경우 국세징수활동표의 본래 목적인 수익 왜곡 방지가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국세수익 외 모든 비교환수익은 해당 중앙관서의 성과에 반영할 수 있는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르게 처리하는 유용성이 저하됨
3. 국세징수활동표에 국세수익, 대손상각비 등 수익비용계정뿐 아니라 미수국세, 대손충당금 등 국세관련 모든 계정과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⑥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공시계정과목이 과다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재정운영표와 중복 문제 제기

⑥-1.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분류(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는 재정운영표에서 총액으로만 제공

자문의견
 관리운영비 중 일부는 재정정책 관점에서 중요한 항목으로서 통합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예시: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외주용역비, 출연비 등). 이 경우, 비배분비용도 통합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과적으로 비배분수익만을 통합할 실익이 작아진다고 사료됨.

⑥-2.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1안) 재무제표로 위상강화 / (2안) 주석으로 공시 강화

자문의견
 성질별 정보를 주 재무제표로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예산제도인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과거의 성질별 정보(비목) 중심의 재정운영에서 사업(프로그램)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현재 프로그램의 유용성이 여전히 강하지 않고 이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성질별 정보의 위상만 강화한다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따라서 1안은 피해야 하는 대안으로 사료됨.

⑦-1. 현 재무제표 상 중앙관서별 원가를 제공하고,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여기서 회계실체가 소관을 의미한다면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음. 그러나, 회계실체를 일반 회계별, 특별회계별, 기금별을 의미한다면 동의하기 어려움 (아래 ② 참조). 회계실체가 소관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각 소관별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사료됨. 대신, 호주의 방식을 대체로 좇아서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중앙정부(중앙행정기관+중앙산하의 비영리단체), 지방정부(지사체+지방교육청+지방 산하의 비영리단체), 공공부문(일반정부+중앙공기업+지방공기업) 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UN, OECD 등 국제기구가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단위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며,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상당함. 반면, 소관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제비교의 의미 자체가 희소하며, 정책적 의미가 거의 없다고 사료됨. 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부문에 대한 재무제표 제공은 바람직하나, 이들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각 소관별 재무제표만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다만, 사회보험의 경우에만 별도로 공시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도 부합하는 만큼 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7-2. 국가통합 수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

자문의견

본 사항은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회계, 기금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과거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관행을 따르는 것임. 현행 정부의 예산제도인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회계, 기금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예산 사업을 정책적 관점에서 운용하는 제도임. 또한, 과거 기금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회계, 기금별 구분은 사실상 차이가 없으며, 회계·기금간 이전(transfer)이 가능하고 모두가 국회의 심의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을 고려할 때 회계, 기금별 칸막이식 운영 또는 각 회계, 기금별 별도 정보 제공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정부 예산제도의 취지 및 정보의 가치 측면에서 높지 않다고 사료됨. 참고로, UN, OECD 등 국제기구도 회계, 기금별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음 (위 4-1 자문의견 참조). 또한, 센터가 예시로 제시한 지자체와 일본의 방식은 과거 관행을 좇는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따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8-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상태표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좋은 아이디어임. 국제기구도 사회보험을 별도의 제도단위(institution)로 고려하기에 별도로 측정, 기록, 보고하고 있음. 다만, 사회보험에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은 국제기준에 따르면 사회보험 및 일반정부에 포함되나 우리나라는 변칙적으로 재정外(off-budget)로 처리되고 있음. 참고로, 직전 기획재정부 2차관계서 2020년에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해보겠다고 선언한바 있으나 올해의 경우 지켜질 것인지 확실치 않음.

향후, 본 사회보험상태표가 마련되어 대외에 공개될 경우 건강보험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짐.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로서 여타 사회보험과 상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 사회보험상태표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제외할 경우와 포함할 경우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임. 사회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제외하는 것은 어금니 하나를 빼고 치아 건강을 얘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여겨짐.

8-2. 국가재무제표에서 사회보험상태표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제외(혹은 구분 공시)하여 단순 자산·부채 정보가 아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자문의견

취지와 개선안에 동감함. 다만, 순자산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 항목에도 사회보험 포함시와 사회보험 자체의 수치를 함께 적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재정당국의 경우 이것을 가지고 고민이 많을 수 있지만 회계 정보의 유용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⑨ 사회복지, 국방, 보건 등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분야와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 수익 정보는 연관성이 높지 않으므로 비교환수익(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에 대한 정보는 비교환수익명세표를 통해 분리 제공

자문의견

아래 조세연 회계센터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함.

1. 재정운영표에서 분리할 시 재정운영결과의 산출 과정을 제시하기 어렵고, 전체 수익과 비용의 파악 및 비교를 위해 분석해야 할 재무제표의 수가 많아져 간소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2. 만일 비교환수익명세서를 개발할 경우 세목별 정수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각 세목별로 대손상각비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고려
3.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경우 미국은 IPSAS와 방향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정합화하는 기준을 선행적으로 결정할 필요
 -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않는 비교환거래가 다수이므로 비교환수익 정보를 분리할 경우 재정운영표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의미가 축소
4. 공공부문의 특성을 강조하여 자국 특유의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IPSAS, IFRS와 정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
 - 기존 회계전문가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것이 더 나음

㉞-1. 중앙정부의 원가와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국제 수익의 차감항목 또는 비교환수익 중 정부간 이전비용 등으로 인식

자문의견

기존 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지방재정교부금의 정책적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의견때문에 회계처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함. 지방재정교부금은 법적으로 중앙정부의 자원이며 중앙정부가 정책적 관점에서 지자체에 이전 하는 여러 재원 중 하나이기에, 현재와 같이 원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도 생각함. 반면, 지방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의 회계를 잠시 이용할 뿐 원래 지자체의 자원이라고 볼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대두될 수 있음. 현재 중앙 재정당국은 첫 번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센터에서 참고해 필요가 있음.

더불어, 관련 전문가분들 중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두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심. 그러나, 그분들 중에, 두 번째 입장으로 전환될 경우 재정 건전성, 책임성, 성과관리 측면에서 후퇴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취하시는 분도 계심. 즉, 종합적 관점에서 볼 때 중단기적으로는 첫 번째 입장이 견지될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고 사료됨.

㉞-2. 지방재정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처리

자문의견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위 ①에서 말씀드린 사유, 방식으로 동일하게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여겨짐. 두가지 교부금은 사실상 동일함. 현재 많은 학자가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저출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반면, 지방재정교부금은 반대의 상황에 처해있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방 현장에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갈라서 고려할 수 없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기 때문임.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자원) ① 교부세의 자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② 교부금 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회계과목이 일괄 공시됨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이 모두 표시되어 공시과목이 과다(일반유형자산 11개, 사회기반시설 15개 등 총 40개)하므로 금액적 중요성이 큰 '자기국채', '자기공채'를 제외한 차감계정 모두를 공시과목에서 제외

자문의견
아래 조세연 회계센터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함.
1. 국가재정상태표에 한정하는 것인지, 중앙관서 등 회계실체 재정상태표도 동일하게 반영하는지 기준이 필요함
2. 간소화에 따른 투명성 논란, 정보 제공 분량 저하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3. 결산개요를 통해 중분류(Lv. II)로 이미 공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주식 등 부속서류가 더 과다해지는 것도 고려하여야 함

☞-1. 610조원 규모 국민연금 운용자산 별도 계정과목 신설(회계과목)

자문의견
조세연 회계센터의 검토 의견에 동의함.

☞-2.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

자문의견
조세연 회계센터의 검토 의견에 동의함.

㉔-3.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기타일반유형자산, 전비품)과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하천, 기타사회기반시설) 계정과목 간소화

자문의견

조세연 회계센터의 검토 의견에 동의함.

㉔-4. 무형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 하위(관리과목)으로 구분

자문의견

무형자산의 다양한 무형적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여 하위 과목으로 위치시키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후 언론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㉔-5. 장기차입부채의 국제 및 공채의 하위 계정과목 신설(국고채, 외평채 등)

자문의견

조세연 회계센터의 검토 의견에 동의함.

㉔-6.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금별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험부채를 공시과목으로 상향

자문의견

취지에는 동감하나 금액적 중요도와 기금별 재정건전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㉔-7.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급여 성격의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계정과목 하향

자문의견

취지에는 동감하나 금액적 중요도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㉔-8.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를 개별법 결산과 연관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으로 구성

자문의견

조세연 회계센터의 의견에 동의함.

㉔-9.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정부내 자산·부채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리하여 계정과목명으로 내부거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

자문의견

조세연 회계센터의 의견에 동의함.

㉓ 현 재무제표 작성단위(원)는 최대 16자리로 표현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기방식(만, 억, 조) 또는 (2안) 금액 표기 기준(백만, 십억, 조) 단위로 조정

자문의견
 조세연 회계센터의 의견에 동의함.

㉔ 각 중앙관서별로 프로그램 수가 다수(최대 39개)인 경우가 있고, 한 페이지에 25개의 프로그램이 공시됨에 따라 프로그램원가 부분만 1페이지 초과

㉔-1. 직관적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별 원가를 프로그램원가 대신 공시

- (1안)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 분야별원가 적용
- (2안) '부' 단위 중앙관서에 한하여 부문별원가로 개편
- (3안) 프로그램 개수 10개 이상인 중앙관서만 부문별원가로 개편
- (4안) 현행 유지

자문의견
 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1,2,3안의 방법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부문별 원가 정보 또는 개수 기준의 원가 정보 공시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manage)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위의 센터의 의견마찬가지로 현행유지(4안)를 지지함.

㉔-2. 재정운영표 상 순원가 금액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

자문의견
 현행 방식과 개선안 간에 내용상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사료됨. 정보의 사용자 관점에서 증장 기적으로 순서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유용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금액 절대값보다는 프로그램명 가나다 순서가 다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㉔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 2개로만 구분하여 공시하고, 현재 공시하는 회계 과목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

자문의견

관리운영비는 경제성질별 분류에 해당하며, 경제성질별 분류는 정책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사항임. 회계결산 관점에서는 인건비와 경비로만 구분하여도 무방하나, 정책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성질별 분류 정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경제성질별 분류는 세출비목에 해당하며, 현재 크게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 이전지출, 진출금등, 상환지출,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함. 재정운영표상 순원가 금액도 동일한 구분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는 발생주의 회계 정보와 현금주의 회계 정보의 연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임.

예를 들어, 출연비는 이전지출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진출금 등에 해당하는 반면, 여비교통비는 물건비에 해당함. 경제성질별 성격이 매우 상이한 것을 모두 모아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㉕ 비배분 수익·비용의 하위 회계과목으로 공시에서 제외

자문의견

조세연 회계센터의 개선안에 동의함. 다만, 비배분 비용 및 비배분 수익의 정의, 예시, 정책적 의미에 대한 정보 및 포괄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은 경우 투명성 저해 등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생길 수 있음.

㉖-1. 일반수용비(210번대) 예산 관련 계정과목 등 금액적 중요성이 적은 계정과목을 관리과목으로 조정

자문의견

재정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항목으로서, 개선안의 순편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경우 혼란 방지를 위해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㉖-2. 보조비의 하위 과목(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하위 과목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회계과목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일견 가능하나, 이때 관리과목 및 세부관리과목으로 설정할만한 세부 구분항목이 적절히 도출되어야 할 것임.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선안의 순편익이 크지 않은 반면 재정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현행방식 유지가 바람직할 수 있다고 사료됨.

㉔-3. 기타이전비용의 하위과목(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등)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회계과목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일견 가능하나, 이때 관리과목 및 세부관리과목으로 설정할만한 세부 구분항목이 적절히 도출되어야 할 것임.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선안의 순편익이 크지 않은 반면 재정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현행방식 유지가 바람직할 수 있다고 사료됨.

㉔-4. 기타비용, 기타수익 중 금액적 중요성 및 정보이용자 유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목 회계과목 격상

자문의견

회계과목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일견 가능하나, 이때 관리과목 및 세부관리과목으로 설정할만한 세부 구분항목이 적절히 도출되어야 할 것임.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선안의 순편익이 크지 않은 반면 재정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현행방식 유지가 바람직할 수 있다고 사료됨.

[총평] 재무제표 개선 TF 총괄 의견

자문의견

정부회계는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상 필요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신뢰성을 갖추고 목적 적합하도록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제도 개편안을 검토시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상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이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20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 TF 최종보고서

연구자문위원

윤 재 원

- ① 부처별 원가를 공시하는 목적은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으로 조직체계에 맞춰 통합 공시

<중앙관서 통합(안)>

구분	하위 중앙관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등 5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개 부처	하위 17개 청
별도 표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의견

대통령, 국무총리실, 19개 부처 및 별도기관별로 하위관서를 통합하여 보고 하는 안에 찬성

통합정보는 조직별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단위별 정보보다 유용성이 높고 인지와 부화를 완화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조직성격상 행정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도표시 기관 중 금액과 사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헌재, 선관위, 인권위)은 하단에 기타항목으로 묶어 기재하고, 주석에 세부내용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조직의 성격에 따라, 국회와 대법원의 운영순원가를 하단으로 이동하는 방법 검토

- ② 현행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 대신 분야별 원가(16대 또는 12대) 정보 제공
 (1안) 現 재정운영표 대체
 (2안) 現 재정운영표는 유지하고 재무제표 신설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 주석 제공

자문의견

분야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찬성. 비용의 분야별 정보는 국민의 정부정책평가에 목적적합한 정보로 유용성이 큼

현행 부처별 원가를 주재무제표로 제공하고 분야별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3안을 지지함. 또는 분야별 정보를 F/S 본문에 제공하되, 통합된 조직별 원가정보를 주석에 제공하는 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내부거래가 제거된 통합 조직별 원가정보는 중앙관서별 재무제표로부터 획득할 수 없으며, 일목요연하게 비교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유용성이 높아 이를 대체하거나 삭제하는 안에는 동의하지 않음

세출예산과 비교가능하도록 16대 분야로 제공하되, 금액의 중요성 및 내용(12대 분야로 통합 가능한 분야의 경우 인접하여 배치)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표시

③ 국가재정운영표 상 내부거래 정보를 한줄로 차감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 제거 후 금액 반영

자문의견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를 제고하여 중앙관서별 정확한 원가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찬성

④ 국세징수활동 공시 강화

(1안) 국세징수활동표를 재무제표로 위상 강화

(2안) 국세징수활동정보를 주석으로 제공

자문의견

국가통합재무제표에 비교환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에 찬성함. 구체적으로 (2안)을 지지함

국세징수기관은 국세징수활동을 위탁받아 수행하나, 국세수익으로 징수된 현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를 자신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가로 보아 주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함. 또한, 국세징수활동표를 주재무제표로 격상하여 공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재무보고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함. 당초와 같이 보충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석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국가통합보고서에는 국가통합관점에서 중앙관서의 필수보충정보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주석에 중앙관서의 필수보충정보의 refer 또는 link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음

전반적으로 재무보고는 국가의 재무상태와 운영성적을 큰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소화하고, 주석도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되 전자보고서 자동 링크기능을 활용해 하부실체의 상세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5 국세징수활동표를 별도 작성함에 따라 '미지급국세' 유동부채 인식 등 재무정보가 왜곡되는 부분이 존재

5-1. 조정계정을 유동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변경

자문의견

우선 현재 주석정보에 국세징수활동에 따른 미수국세와 미지급국세의 회계처리방법과 세부금액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국세청 2019년 재무제표 참고) 본문의 미수채권과 기타유동부채의 세부정보가 주석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그 외 주석공시도 지극히 형식적이며 충분하지 못함

재정상태표에 반영하는 미수국세와 그 대손충당금은 징수기관의 다른 자산과는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징수관리중인 미수국세는 징수기관에 궁극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으나 관리책임하에 있는 자산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미수국세자산과 징수기관 자신의 자산을 따로 구분하여 본문에 표시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정보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본문에 구분표시하고 주석에 그 내용을 적절히 공시한다면, 미수국세자산과 미지급국세부채를 대응하여 각기 표시하더라도 왜곡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차감하여 순액으로 처리하는 경우, 미수국세의 장단기 구분, 충당금의 정보가 소실되고 미수국세자산의 정보가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미수국세와 미지급국세의 회계처리방법과 세부정보에 관한 사항을 주석으로 적절히 공시할 필요가 있음

5-2.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

자문의견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하면, 국세징수 중앙관서의 수익이 아닌 국세수익 등이 수익으로 인식되어 정보가 왜곡되므로 반대함

6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공시계정과목이 과다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재정운영표와 중복 문제 제기

6-1.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분류(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는 재정운영표에서 총액으로만 제공

자문의견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을 총액표시하는 것에 찬성함. 다만, 현행과 같이 보충정보로 제공되면 별도 주석이 없어 주요항목에 대한 세부 금액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몇 가지 주요 개별 항목과 기타로 그룹핑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6-2.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1안) 재무제표로 위상강화 / (2안) 주석으로 공시 강화

자문의견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주석에 포함하여 공시하는 안을 지지함. 주재무제표는 하나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결산의 평가에 있어, 성질별 재정운영표보다 부처별 또는 분야별 재정운영표가 직관적이며 유용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행과 같이 부처별 재정운영표를 주재무제표로 제공하되 통합하여 최대한 간략히 제공하고, 주석에서 분야와 성질별 재정운영원가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는 순위가 보고체계를 사용하는 미국의 사례와도 일관성이 있음.

7-1. 현 재무제표 상 중앙관서별 원가를 제공하고,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통합재무보고 간소화 차원에서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함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음(필요하다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7-2. 국가통합 수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

자문의견

국가통합 재무보고 측면에서 일반/특별/기금 정보의 유용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유용성이 있다면 p23에 예시된 수준의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8-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상태표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부문별 정보의 일종으로 사회보장성기금의 주요정보를 주석의 형태로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작성비용과 유용성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의 형태로 완전하게 제공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사회보장성기금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 보다, 통합정보를 일상행정부문과 사회보장성기금부문으로 구분한 부문별 정보를 제공하면 유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8]-2. 국가재무제표에서 사회보험상대표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제외(혹은 구분 공시) 하여 단순 자산·부채 정보가 아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자문의견

이는 통합회계실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하위 회계실체의 성격이 달라 특수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통합회계실체의 범위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임

8-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과 같이 통합정보를 제공하되 주석에서 일상행정부문과 사회보장성기금부문을 구분하여 부문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9] 사회복지, 국방, 보건 등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분야와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 수익 정보는 연관성이 높지 않으므로 비교환수익(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에 대한 정보는 비교환수익명세표를 통해 분리 제공

자문의견

재무제표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요약된 형태로 제공할 때에 유용성이 높음. 주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나 다른 형태의 재무제표를 복수로 제공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통합재정운영표 본문에 부처별 순위가 항목을 줄이고, 비교환수익의 주요항목은 추가하여 간소화하고, 분야 및 성질별 순위가와 비교환수익의 상세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미국의 net cost와 statement of operation을 합쳐놓은 것과 일관됨

10]-1. 중앙정부의 원가와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국세 수익의 차감항목 또는 비교환수익 중 정부간 이전비용 등으로 인식

자문의견

국세수입이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가 확실한 금액은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정부간이전비용은 중앙정부간 거래를 뜻하는 것이므로, 지방정부가이전비용 등 적절한 계정을 신설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10]-2. 지방재정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처리

자문의견

상기 10-1과 같은 근거로 찬성함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자원) ① 교부세의 자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② 교부금 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㉒ 회계과목이 일괄 공시됨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이 모두 표시되어 공시과목이 과다(일반유형자산 11개, 사회기반시설 15개 등 총 40개)하므로 금액적 중요성이 큰 '자기국채', '자기공채'를 제외한 차감계정 모두를 공시과목에서 제외

자문의견

차감계정은 일괄적으로 제외하여 본문에서 순액표시하는 것에 찬성함. 자기국채 및 자기공채의 경우에도 주식공시 고려

㉒-1. 610조원 규모 국민연금 운용자산 별도 계정과목 신설(회계과목)

자문의견

본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보다 주석에 부문별 정보로 비교공시하는 방안 검토

㉒-2.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

자문의견

금융상품은 자산의 성질로 구분한 것으로, 유동자산에 포함된 대부분의 자산이 이에 속하게 되어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금융상품은 부채가 될 수도 있어, (장기)금융자산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부채의 구분과도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㉔-3.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기타일반유형자산, 전비품)과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하천, 기타사회기반시설) 계정과목 간소화

자문의견

계정과목의 성질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본문에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충분한 주석공시를 하는 방안은 전적으로 찬성함

㉔-4. 무형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 하위(관리과목)으로 구분

자문의견

정부자산으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

12-2에서 12-4의 내용을 종합하면, 1. 유동자산, 2. (장기)금융(투자)자산, 3. 일반유형자산, 4.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정도로 재분류하는 것을 검토 가능한. 장기금융자산과 기타의 경우 1. 유동자산이 아니므로 '비유동'문구삭제 고려. 다만, 부채의 대분류도 일관성있게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㉔-5. 장기차입부채의 국채 및 공채의 하위 계정과목 신설(국고채, 외평채 등)

자문의견

본문에 하위 계정과목 표시하는 것은 간소화 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종류별 금액은 주석에 제공하는 방안 검토

㉔-6.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금별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험부채를 공시과목으로 상향

자문의견

본문에 하위 계정과목 신설은 간소화 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주석에 제공하는 방안 검토

㉔-7.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급여 성격의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계정과목 하향

자문의견

충당부채의 내용과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조정 후 간소화하는 방향에 찬성함. 중요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먼저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

㉔-8.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를 개별법 결산과 연관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으로 구성

자문의견

기업회계와 유사한 보편적인 표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㉒-9.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정부내 자산·부채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리하여
계정과목명으로 내부거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

자문의견
간소화 차원에서 반대함

㉒ 현 재무제표 작성단위(원)는 최대 16자리로 표현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기방식(만, 억, 조) 또는 (2안) 금액 표기
기준(백만, 십억, 조) 단위로 조정

자문의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금액 표기 기준단위로 조정

㉒ 각 중앙관서별로 프로그램 수가 다수(최대 39개)인 경우가 있고, 한 페이지에
25개의 프로그램이 공시됨에 따라 프로그램원가 부분만 1페이지 초과

㉒-1. 직관적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별
원가를 프로그램원가 대신 공시

- (1안)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 분야별원가 적용
- (2안) '부' 단위 중앙관서에 한하여 부문별원가로 개편
- (3안) 프로그램 개수 10개 이상인 중앙관서만 부문별원가로 개편
- (4안) 현행 유지

자문의견
<p>사업의 성격이 다양한 부처와 부와 청 등 level이 다른 관서에 획일적인 프로그램 수준을 강 제하는 것은 이용자 측면의 목적적합성이 떨어짐.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목적적합성을 훼손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p> <p>획일성보다는 간소화를 통해 목적적합한 프로그램원가가 제공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1개 부문 다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관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수를 10개 이내로 조정하고, 대부분 부처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예에서 기재부와 환 경부는 부문별 원가를 제공하는 안에 찬성하며, 청 단위와 외교부의 경우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p>

㉔-2. 재정운영표 상 순원가 금액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

자문의견

프로그램순원가는 사업의 체계와 중요성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적절. 작성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실무지침 등을 통해 질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㉕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 2개로만 구분하여 공시하고, 현재 공시하는 회계 과목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

자문의견

간소화 차원에서 찬성함

㉖ 비배분 수익·비용의 하위 회계과목으로 공시에서 제외

자문의견

간소화 차원에서 찬성함

㉗-1. 일반수용비(210번대) 예산 관련 계정과목 등 금액적 중요성이 적은 계정과목을 관리과목으로 조정

자문의견

정책적 필요, 국민의 관심, 금액의 중요성, 관서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과목과 회계과목을 조정하여야 함. 획일적인 기준적용시 관서별 회계과목 표시의 유용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요한 왜곡이 없는지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접근방식이 필요

㉗-2. 보조비의 하위 과목(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하위 과목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17-1과 같음) 정책적 필요, 국민의 관심, 금액의 중요성, 관서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과목과 회계과목을 조정하여야 함. 획일적인 기준적용시 관서별 회계과목 표시의 유용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요한 왜곡이 없는지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접근방식이 필요

㉔-3. 기타이전비용의 하위과목(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등)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17-1과 같음) 정책적 필요, 국민의 관심, 금액의 중요성, 관서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과목과 회계과목을 조정하여야 함. 획일적인 기준적용시 관서별 회계과목 표시의 유용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요한 왜곡이 없는지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접근방식이 필요

㉔-4. 기타비용, 기타수익 중 금액적 중요성 및 정보이용자 유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목 회계과목 격상

자문의견

(4-1과 같음) 정책적 필요, 국민의 관심, 금액의 중요성, 관서(실체)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과목과 회계과목을 조정하여야 함. 획일적인 기준적용시 관서별 회계과목 표시의 유용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요한 왜곡이 없는지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접근방식이 필요

[총평] 재무제표 개선 TF 총괄 의견**자문의견**

본 프로젝트는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목적적합성과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본문은 간소화하되 꼭 필요한 정보는 추가하거나 재배치하여 체계화하는 것에 목적을 둠

재무제표의 본문은 회계실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한눈에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나의 형태로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추가하거나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재무제표로 위상강화하고, 사회보장성기금의 별도 재무제표를 신설하는 방안 등에는 반대함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공시과목은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향에 적극 지지하며, 제안된 여러 간소화 방안에 관해 대부분 찬성함. 각각 최대 2면을 넘지 않도록 디자인할 것을 제안함

한편 현재 주석과 필수보충정보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가 많아 정보유용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복잡한 장표가 설명없이 제공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재무제표와 주석으로 정부의 재정과 운영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본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16대 분야별 원가정보 등 몇 가지 추가 정보는 정보유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분야별 원가정보는 국민의 관심이 크고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현행 부처별 원가정보를 대체하여 주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현재 국가재무제표에 누락된 주요정보인 국제징수활동정보를 주석에 보완하는 것도 찬성함

다만, 주석에 보고되는 내용도 지나치게 방대하면 정보과부화를 야기하게 되므로, 잘 요약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주재무제표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추가정보(예를 들어, 부처별/성질별 원가정보)는 가능한 간략한 표로 제공하고 이해가능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필요함. 국제징수 활동표와 같은 상세한 정보는 정보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전자보고서 자동 링크기능을 활용해 하부실체의 재무제표로 바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끝으로 사회보장성기금정보는 국가회계실체관점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되, 주석에서 일상행정부문과 사회보장성기금부문을 구분한 부문별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함

2020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 TF 최종보고서

연구자문위원

윤 재 원

- ① 부처별 원가를 공시하는 목적은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으로 조직체계에 맞춰 통합 공시

<중앙관서 통합(안)>

구분	하위 중앙관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등 5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개 부처	하위 17개 청
별도 표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의견

대통령, 국무총리실, 19개 부처 및 별도기관별로 하위관서를 통합하여 보고 하는 안에 찬성

통합정보는 조직별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단위별 정보보다 유용성이 높고 인지와 부화를 완화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조직성격상 행정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도표시 기관 중 금액과 사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헌재, 선관위, 인권위)은 하단에 기타항목으로 묶어 기재하고, 주석에 세부내용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조직의 성격에 따라, 국회와 대법원의 운영순원가를 하단으로 이동하는 방법 검토

- ② 현행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 대신 분야별 원가(16대 또는 12대) 정보 제공
 (1안) 現 재정운영표 대체
 (2안) 現 재정운영표는 유지하고 재무제표 신설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 주석 제공

자문의견

분야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찬성. 비용의 분야별 정보는 국민의 정부정책평가에 목적적합한 정보로 유용성이 큼

현행 부처별 원가를 주재무제표로 제공하고 분야별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3안을 지지함. 또는 분야별 정보를 F/S 본문에 제공하되, 통합된 조직별 원가정보를 주석에 제공하는 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내부거래가 제거된 통합 조직별 원가정보는 중앙관서별 재무제표로부터 획득할 수 없으며, 일목요연하게 비교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유용성이 높아 이를 대체하거나 삭제하는 안에는 동의하지 않음

세출예산과 비교가능하도록 16대 분야로 제공하되, 금액의 중요성 및 내용(12대 분야로 통합 가능한 분야의 경우 인접하여 배치)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표시

③ 국가재정운영표 상 내부거래 정보를 한줄로 차감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 제거 후 금액 반영

자문의견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를 제고하여 중앙관서별 정확한 원가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찬성

④ 국세징수활동 공시 강화

(1안) 국세징수활동표를 재무제표로 위상 강화

(2안) 국세징수활동정보를 주석으로 제공

자문의견

국가통합재무제표에 비교환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에 찬성함. 구체적으로 (2안)을 지지함

국세징수기관은 국세징수활동을 위탁받아 수행하나, 국세수익으로 징수된 현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를 자신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로 보아 주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함. 또한, 국세징수활동표를 주재무제표로 격상하여 공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재무보고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함. 당초와 같이 보충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석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국가통합보고서에는 국가통합관점에서 중앙관서의 필수보충정보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주석에 중앙관서의 필수보충정보의 refer 또는 link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음

전반적으로 재무보고는 국가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큰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소화하고, 주석도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되 전자보고서 자동 링크기능을 활용해 하부실체의 상세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5 국세징수활동표를 별도 작성함에 따라 '미지급국세' 유동부채 인식 등 재무정보가 왜곡되는 부분이 존재

5-1. 조정계정을 유동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변경

자문의견
<p>우선 현재 주석정보에 국세징수활동에 따른 미수국세와 미지급국세의 회계처리방법과 세부금액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국세청 2019년 재무제표 참고) 본문의 미수채권과 기타유동부채의 세부정보가 주석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그 외 주석공시도 지극히 형식적이며 충분하지 못함</p> <p>재정상태표에 반영하는 미수국세와 그 대손충당금은 징수기관의 다른 자산과는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징수관리중인 미수국세는 징수기관에 궁극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으나 관리책임하에 있는 자산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미수국세자산과 징수기관 자신의 자산을 따로 구분하여 본문에 표시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p> <p>정보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본문에 구분표시하고 주석에 그 내용을 적절히 공시한다면, 미수국세자산과 미지급국세부채를 대응하여 각기 표시하더라도 왜곡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차감하여 순액으로 처리하는 경우, 미수국세의 장단기 구분, 충당금의 정보가 소실되고 미수국세자산의 정보가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미수국세와 미지급국세의 회계처리방법과 세부정보에 관한 사항을 주석으로 적절히 공시할 필요가 있음</p>

5-2.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

자문의견
<p>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하면, 국세징수 중앙관서의 수익이 아닌 국세수익 등이 수익으로 인식되어 정보가 왜곡되므로 반대함</p>

6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공시계정과목이 과다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재정운영표와 중복 문제 제기

6-1.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분류(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는 재정운영표에서 총액으로만 제공

자문의견
<p>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을 총액표시하는 것에 찬성함. 다만, 현행과 같이 보충정보로 제공되면 별도 주석이 없어 주요항목에 대한 세부 금액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몇 가지 주요 개별 항목과 기타로 그룹핑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p>

6]-2.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1안) 재무제표로 위상강화 / (2안) 주석으로 공시 강화

자문의견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주석에 포함하여 공시하는 안을 지지함. 주재무제표는 하나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결산의 평가에 있어, 성질별 재정운영표보다 부처별 또는 분야별 재정운영표가 직관적이며 유용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행과 같이 부처별 재정운영표를 주재무제표로 제공하되 통합하여 최대한 간략히 제공하고, 주석에서 분야와 성질별 재정운영원가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는 순위가 보고체계를 사용하는 미국의 사례와도 일관성이 있음.

7]-1. 현 재무제표 상 중앙관서별 원가를 제공하고,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통합재무보고 간소화 차원에서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함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음(필요하다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7]-2. 국가통합 수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

자문의견

국가통합 재무보고 측면에서 일반/특별/기금 정보의 유용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유용성이 있다면 p23에 예시된 수준의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8]-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상태표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부문별 정보의 일종으로 사회보장성기금의 주요정보를 주석의 형태로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작성비용과 유용성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의 형태로 완전하게 제공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사회보장성기금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 보다, 통합정보를 일상행정부문과 사회보장성기금부문으로 구분한 부문별 정보를 제공하면 유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8]-2. 국가재무제표에서 사회보험상태표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제외(혹은 구분 공시) 하여 단순 자산·부채 정보가 아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자문의견

이는 통합회계실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하위 회계실체의 성격이 달라 특수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통합회계실체의 범위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임

8-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과 같이 통합정보를 제공하되 주식에서 일상행정부문과 사회보장성기금부문을 구분하여 부문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9] 사회복지, 국방, 보건 등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분야와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 수익 정보는 연관성이 높지 않으므로 비교환수익(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에 대한 정보는 비교환수익명세표를 통해 분리 제공

자문의견

재무제표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요약된 형태로 제공할 때에 유용성이 높음. 주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나 다른 형태의 재무제표를 복수로 제공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통합재정운영표 본문에 부처별 순위가 항목을 줄이고, 비교환수익의 주요항목을 추가하여 간소화하고, 분야 및 성질별 순위가와 비교환수익의 상세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미국의 net cost와 statement of operation을 합쳐놓은 것과 일관됨

10]-1. 중앙정부의 원가와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국세 수익의 차감항목 또는 비교환수익 중 정부간 이전비용 등으로 인식

자문의견

국세수입이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가 확실한 금액은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정부간이전비용은 중앙정부간 거래를 뜻하는 것이므로, 지방정부가이전비용 등 적절한 계정을 신설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10]-2. 지방재정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처리

자문의견

상기 10-1과 같은 근거로 찬성함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자원) ① 교부세의 자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② 교부금 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㉒ 회계과목이 일괄 공시됨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이 모두 표시되어 공시과목이 과다(일반유형자산 11개, 사회기반시설 15개 등 총 40개)하므로 금액적 중요성이 큰 '자기국채', '자기공채'를 제외한 차감계정 모두를 공시과목에서 제외

자문의견

차감계정은 일괄적으로 제외하여 본문에서 순액표시하는 것에 찬성함. 자기국채 및 자기공채의 경우에도 주식공시 고려

㉒-1. 610조원 규모 국민연금 운용자산 별도 계정과목 신설(회계과목)

자문의견

본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보다 주석에 부문별 정보로 비교공시하는 방안 검토

㉒-2.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

자문의견

금융상품은 자산의 성질로 구분한 것으로, 유동자산에 포함된 대부분의 자산이 이에 속하게 되어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금융상품은 부채가 될 수도 있어, (장기)금융자산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부채의 구분과도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㉔-3.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기타일반유형자산, 전비품)과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하천, 기타사회기반시설) 계정과목 간소화

자문의견

계정과목의 성질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본문에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충분한 주석공시를 하는 방안은 전적으로 찬성함

㉔-4. 무형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 하위(관리과목)으로 구분

자문의견

정부자산으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

12-2에서 12-4의 내용을 종합하면, 1. 유동자산, 2. (장기)금융(투자)자산, 3. 일반유형자산, 4.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정도로 재분류하는 것을 검토 가능한. 장기금융자산과 기타의 경우 1. 유동자산이 아니므로 '비유동'문구삭제 고려. 다만, 부채의 대분류도 일관성있게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㉔-5. 장기차입부채의 국채 및 공채의 하위 계정과목 신설(국고채, 외평채 등)

자문의견

본문에 하위 계정과목 표시하는 것은 간소화 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종류별 금액은 주석에 제공하는 방안 검토

㉔-6.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금별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험부채를 공시과목으로 상향

자문의견

본문에 하위 계정과목 신설은 간소화 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주석에 제공하는 방안 검토

㉔-7.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급여 성격의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계정과목 하향

자문의견

충당부채의 내용과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조정 후 간소화하는 방향에 찬성함. 중요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먼저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

㉔-8.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를 개별법 결산과 연관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으로 구성

자문의견

기업회계와 유사한 보편적인 표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㉒-9.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정부내 자산·부채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리하여
계정과목명으로 내부거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

자문의견
간소화 차원에서 반대함

㉒ 현 재무제표 작성단위(원)는 최대 16자리로 표현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기방식(만, 억, 조) 또는 (2안) 금액 표기
기준(백만, 십억, 조) 단위로 조정

자문의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금액 표기 기준단위로 조정

㉒ 각 중앙관서별로 프로그램 수가 다수(최대 39개)인 경우가 있고, 한 페이지에
25개의 프로그램이 공시됨에 따라 프로그램원가 부분만 1페이지 초과

㉒-1. 직관적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별
원가를 프로그램원가 대신 공시

- (1안)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 분야별원가 적용
- (2안) '부' 단위 중앙관서에 한하여 부문별원가로 개편
- (3안) 프로그램 개수 10개 이상인 중앙관서만 부문별원가로 개편
- (4안) 현행 유지

자문의견
<p>사업의 성격이 다양한 부처와 부와 청 등 level이 다른 관서에 획일적인 프로그램 수준을 강 제하는 것은 이용자 측면의 목적적합성이 떨어짐.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목적적합성을 훼손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p> <p>획일성보다는 간소화를 통해 목적적합한 프로그램원가가 제공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1개 부문 다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관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수를 10개 이내로 조정하고, 대부분 부처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예에서 기재부와 환 경부는 부문별 원가를 제공하는 안에 찬성하며, 청 단위와 외교부의 경우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p>

㉔-2. 재정운영표 상 순원가 금액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

자문의견

프로그램순원가는 사업의 체계와 중요성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적절. 작성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실무지침 등을 통해 질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㉕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 2개로만 구분하여 공시하고, 현재 공시하는 회계 과목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

자문의견

간소화 차원에서 찬성함

㉖ 비배분 수익·비용의 하위 회계과목으로 공시에서 제외

자문의견

간소화 차원에서 찬성함

㉗-1. 일반수용비(210번대) 예산 관련 계정과목 등 금액적 중요성이 적은 계정과목을 관리과목으로 조정

자문의견

정책적 필요, 국민의 관심, 금액의 중요성, 관서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과목과 회계과목을 조정하여야 함. 획일적인 기준적용시 관서별 회계과목 표시의 유용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요한 왜곡이 없는지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접근방식이 필요

㉗-2. 보조비의 하위 과목(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하위 과목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17-1과 같음) 정책적 필요, 국민의 관심, 금액의 중요성, 관서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과목과 회계과목을 조정하여야 함. 획일적인 기준적용시 관서별 회계과목 표시의 유용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요한 왜곡이 없는지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접근방식이 필요

17-3. 기타이전비용의 하위과목(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등)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17-1과 같음) 정책적 필요, 국민의 관심, 금액의 중요성, 관서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과목과 회계과목을 조정하여야 함. 획일적인 기준적용시 관서별 회계과목 표시의 유용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요한 왜곡이 없는지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접근방식이 필요

17-4. 기타비용, 기타수익 중 금액적 중요성 및 정보이용자 유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목 회계과목 격상

자문의견

(4-1과 같음) 정책적 필요, 국민의 관심, 금액의 중요성, 관서(실체)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과목과 회계과목을 조정하여야 함. 획일적인 기준적용시 관서별 회계과목 표시의 유용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요한 왜곡이 없는지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접근방식이 필요

[총평] 재무제표 개선 TF 총괄 의견

자문의견

본 프로젝트는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목적적합성과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본문은 간소화하되 꼭 필요한 정보는 추가하거나 재배치하여 체계화하는 것에 목적을 둠

재무제표의 본문은 회계실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한눈에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나의 형태로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추가하거나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재무제표로 위상강화하고, 사회보장성기금의 별도 재무제표를 신설하는 방안 등에는 반대함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공시과목은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향에 적극 지지하며, 제안된 여러 간소화 방안에 관해 대부분 찬성함. 각각 최대 2면을 넘지 않도록 디자인할 것을 제안함

한편 현재 주석과 필수보충정보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가 많아 정보유용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복잡한 장표가 설명없이 제공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재무제표와 주석으로 정부의 재정과 운영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본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16대 분야별 원가정보 등 몇 가지 추가 정보는 정보유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분야별 원가정보는 국민의 관심이 크고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현행 부처별 원가정보를 대체하여 주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현재 국가재무제표에 누락된 주요정보인 국제징수활동정보를 주석에 보완하는 것도 찬성함

다만, 주석에 보고되는 내용도 지나치게 방대하면 정보과부화를 야기하게 되므로, 잘 요약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주재무제표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추가정보(예를 들어, 부처별/성질별 원가정보)는 가능한 간략한 표로 제공하고 이해가능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필요함. 국제징수 활동표와 같은 상세한 정보는 정보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전자보고서 자동 링크기능을 활용해 하부실체의 재무제표로 바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끝으로 사회보장성기금정보는 국가회계실체관점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되, 주석에서 일상행정부문과 사회보장성기금부문을 구분한 부문별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함

2020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 TF 최종보고서

연구자문위원

이 아 영

Ⅰ 부처별 원가를 공시하는 목적은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으로 조직체계에 맞춰 통합 공시

<중앙관서 통합(안)>

구분	하위 중앙관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등 5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개 부처	하위 17개 청
별도 표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의견

(의견) 국가 재정운영표의 간소화를 위한 중앙관서 통합 공시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앙관서의 조직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56개의 중앙관서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조직체계상 하위기관이지만 상위기관과의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 상 통합하여 공시하는 것이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저해할 수 있으며 형식적 통합이 실질을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주식에 하위기관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재무제표 본문의 정보와 주식 정보의 중요성과 유용성이 다른 만큼 간소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앙부처의 조직체계를 일반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하위부처가 속하는 상위부처를 파악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해당 부처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도 제한될 우려가 있음

(추가 의견) 국가 재정운영표 간소화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간소화를 통해 재무제표 구조의 일관성이 왜곡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앙관서 정보를 통합으로 공시하는 방향은 현재 중앙관서별로 제공되는 재무제표와의 일관성을 저해할 측면이 있음.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 정보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의 수효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 측면에서의 일관성과 정보제공의 충분성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음

- ② **현행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 대신 분야별 원가(16대 또는 12대) 정보 제공**
 - (1안) 現 재정운영표 대체
 - (2안) 現 재정운영표는 유지하고 재무제표 신설
 -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 주석 제공

자문의견

(의견) 국가 재정운영표상 분야별 원가정보 제공에 찬성하며, 세출예산과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야를 16대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함. 또한 과도기 단계로 기존 재정운영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고 궁극적으로 기존 재정운영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중앙부처 수준에서는 프로그램별 원가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국가통합 재정운영표에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 중앙부처 수준과 국가통합 수준의 재정운영표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음
-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는 통합수준에서도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부처별 원가정보는 이미 각 중앙부처에서 재정운영표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제공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12대 분야는 예산 홍보자료 기준이며 향후 변경가능성도 크며, 센터의 의견과 같이 12대 분야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16대 분야를 제공하여 세출예산과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③ **국가재정운영표 상 내부거래 정보를 한줄로 차감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 제거 후 금액 반영**

자문의견

(의견) 국가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를 내부거래 제거 후의 순액으로 공시하는 것에 동의함

-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액으로 공시하는 것이 중앙관서별 정확한 정보가 통합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함
- 다만, 내부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 측면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는 있음

4 국세징수활동 공시 강화

(1안) 국세징수활동표를 재무제표로 위상 강화

(2안) 국세징수활동정보를 주석으로 제공

자문의견

(의견) 2안인 국가통합 결산보고서 국제징수활동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에 찬성함. 이러한 대안이 어렵다면 (1안)에 오히려 동의함

- 현재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수의 세부정보가 국가 통합 결산보고서에 제공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현행 재정운영표와 국제징수활동표를 유지하고, 국세수의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5 국세징수활동표를 별도 작성함에 따라 '미지급국세' 유동부채 인식 등 재무정보가 왜곡되는 부분이 존재

5-1. 조정계정을 유동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변경

자문의견

- 중앙관서 차원에서의 수익 왜곡방지를 위해 국세 수익을 재정운영표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세관련 계정을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하여 국제징수활동표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타당함. 즉 재정운영표의 왜곡방지 논리를 재정상태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국제징수활동표에 국제징수관련 수익과 비용 계정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징수관련 자산등의 계정을 제공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음

5-2.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

자문의견

(의견) 국제징수활동표와 재정운영표를 통합하는 것은 중앙부처 차원의 정보 왜곡이 심화되며 국고통일원칙이라는 정부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재정상태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운영표의 왜곡을 희생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은 될 수 없음

- (1안)(조정계정을 자산의 차감으로 처리)의 경우는 (2안)(국제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에 비해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으며 미수국세의 조정계정을 주석을 통해 충분히 공시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⑥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공시계정과목이 과다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재정운영표와 중복 문제 제기

⑥-1.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분류(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는 재정운영표에서 총액으로만 제공

자문의견

(의견) 중복으로 제공되는 것을 해소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분류는 재정운영표에서 총액으로 제공하는 것에 찬성함

⑦-2.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1안) 재무제표로 위상강화 / (2안) 주석으로 공시 강화

자문의견

(의견) (2안)에 동의함.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제공하는 정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함. 특히 프로그램별 원가 정보는 국가 정책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주 재무제표로 유지해야 함

⑦-1. 현 재무제표 상 중앙관서별 원가를 제공하고,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신설하는 것에는 회의적임. 센터의 의견과 같이 중앙관서 수준의 실체별 재무정보는 각 중앙관서의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공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함. 단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 접근의 용이성은 확보되어야 함

⑦-2. 국가통합 수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

자문의견

- 국가 통합 수준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여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찬성함. 이로 인해 지자체 재무제표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⑧-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상태표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의견) 사회보험상태표 신설에는 찬성하지 않음

- 만일 사회보험상태표를 신설한다면, 사회보험상태표인지 사회보장상태표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있음. 사회보험성기금은 사회보장성기금에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을 합한 것임.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성기금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보험상태표'가 아니라 '사회보장상태표'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⑧-2. 국가재무제표에서 사회보험상태표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제외(혹은 구분 공시)하여 단순 자산·부채 정보가 아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자문의견

(의견) 사회보험 별도 공시 재정상태표로 개선하는 것에 찬성

- 센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상태표를 신설하여 국가통합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
- 사회보장성기금도 국가회계실체이기 때문에 국가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며 사회보험과 관련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순액으로 국가통합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센터에서 제시한 사회보험별도 공시 재정상태표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재무제표에 포함하면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성기금의 포함으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을 완화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순액으로 포함된 사회보험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주석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통합재정수지보다 관리재정수지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무제표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⑨ 사회복지, 국방, 보건 등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분야와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 수익 정보는 연관성이 높지 않으므로 비교환수익(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에 대한 정보는 비교환수익명세표를 통해 분리 제공

자문의견

(의견) 비교환수익명세서 신설에는 찬성하지 않음

- 센터의 의견과 같이 재정운영표에서 분리하는 경우 재정운영결과의 산출과정을 제시하여 어렵고 많은 보고서의 신설로 간소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㉞-1. 중앙정부의 원가와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국제수익의 차감항목 또는 비교환수익 중 정부간 이전비용 등으로 인식

자문의견

(의견) 지방재정교부금을 국제수익의 차감항목, 비교환수익 중 정부간 이전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에 반대함

- 센터의 의견과 같이 지자체에 자금을 이전해주는 성격의 원가 등 국가가 징수역할을 대행해주는 모든 원가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즉 지방재정교부금만 한정하여 논의할 수 없음
-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보이용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임.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부 계정에 대해서만 이런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 유사한 계정에 대한 개선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

㉞-2. 지방재정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처리

자문의견

(의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회계처리도 위의 지방재정교부금 회계처리에 대해 의견과 동일함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자원) ① 교부세의 자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② 교부금 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㉒ 회계과목이 일괄 공시됨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이 모두 표시되어 공시과목이 과다(일반유형자산 11개, 사회기반시설 15개 등 총 40개)하므로 금액적 중요성이 큰 '자기국채', '자기공채'를 제외한 차감계정 모두를 공시과목에서 제외

자문의견

(의견) 차감계정 공시 제외에 동의함

- 재정상태표 본문의 계정과목이 타국가에 비해 훨씬 많으며 본문 정보의 정보제공 분량이 과다한 것이 오히려 정보유용성을 저해할 수 있음. 현재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주식공시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감계정을 주식으로 공시하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체 계정과목의 차감계정을 모두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목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사용수익권 정보는 해당 자산을 이해하는데 중요성이 큰 항목으로 판단되며 그 이외에 금액 및 성격 상 중요한 차감계정은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㉓-1. 610조원 규모 국민연금 운용자산 별도 계정과목 신설(회계과목)

자문의견

(의견) 국민연금 운용자산 신설에 동의

- 현재 국민연금운용자산이 장단기 투자증권에 포함 공시되어 있으며 장단기투자증권의 규모도 국가 자산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함. 또한 국민연금 운용자산은 다른 금융자산과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 인식해야 함
- 다만, 국민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주식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장단기투자증권의 주식공시는 거의 없으며 부속명세서 내역도 아주 미흡한 수준임
-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을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이해가능하기 쉬운 분류항목을 사용하여 그 내역을 공시할 필요가 있음

㉓-2.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

자문의견

(의견) 동의하지 않음

- 우선 금융상품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민간기준에 적용되는 IFRS에서 금융상품=금융자산+금융부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국가회계기준의 내용도 민간기업 기준은 상당부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부분에 금융상품이라는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렇다면 금융자산이라는 항목으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가 고려했을 때, 개념적으로 무리는 없지만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좀 더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투자자산이라는 분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됨

㉔-3.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기타일반유형자산, 전비품)과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하천, 기타사회기반시설) 계정과목 간소화

자문의견

(의견) 동의함

- 금액 및 성격상 중요한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회계과목만 재정상태표이 인식하는 것이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㉔-4. 무형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 하위(관리과목)으로 구분

자문의견

(의견) 동의함

- 실제로 각 중앙부처 수준에서 무형자산이 없는 부처가 상당수이며 따라서 국가통합 재정상태표의 무형자산 수준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음. 지자체의 경우도 무형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있음

㉔-5. 장기차입부채의 국채 및 공채의 하위 계정과목 신설(국고채, 외평채 등)

자문의견

(의견) 동의함

㉔-6.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금별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험부채를 공시과목으로 상향

자문의견

(의견) 동의함

- 기타비유동부채 중에서 사회보험부채가 대부분 차지하는 기타의 기타비유동부채를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보의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되도록 기타로 인식된 항목 중 성격이나 금액에서 중요한 항목은 '기타'가 아닌 그 계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 또한 국가의 사회보험 사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재정상태표에 인식할 필요성은 있음

㉔-7.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급여 성격의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계정과목 하향

자문의견

(의견) 동의함

㉔-8.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를 개별법 결산과 연관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으로 구성

자문의견
(의견) 동의하지 않음
- 일반 유형자산을 국유재산, 물품, 채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국민 등 정보이용자에게 덜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됨

㉔-9.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정부내 자산·부채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리하여 계정과목명으로 내부거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

자문의견
(의견) 동의함

㉕ 현 재무제표 작성단위(원)는 최대 16자리로 표현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기방식(만, 억, 조) 또는 (2안) 금액 표기 기준(백만, 십억, 조) 단위로 조정

자문의견
(의견) 동의함
- 실무자 및 정보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단위금액이 무엇인지 찾을 필요는 있음

㉖ 각 중앙관서별로 프로그램 수가 다수(최대 39개)인 경우가 있고, 한 페이지에 25개의 프로그램이 공시됨에 따라 프로그램원가 부분만 1페이지 초과

㉖-1. 직관적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별 원가를 프로그램원가 대신 공시

- (1안)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 분야별원가 적용
- (2안) '부' 단위 중앙관서에 한하여 부문별원가로 개편
- (3안) 프로그램 개수 10개 이상인 중앙관서만 부문별원가로 개편
- (4안) 현행 유지

자문의견
(의견) 4안(현행 유지)에 동의함
- 재정운영표가 발생주의에 따른 원가 활용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오히려 프로그램 원가 정보 뿐만 아니라 중요한 단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함. 단, 단위사업에 대한 정보를 재정운영표에 인식하게 된다면 재정운영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단위사업 정보를 주석공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음

㉔-2. 재정운영표 상 순원가 금액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

자문의견

(의견) 절대값 순으로 배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 중요성의 판단기준이 금액 뿐 만 아니라 순원가 자체의 고유한 성격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순원가 금액 절대값 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또한 절대값 순으로 배치하여 순원가가 배치되는 순서가 변경되어 전년도와 비교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으며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음

㉕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 2개로만 구분하여 공시하고, 현재 공시하는 회계과목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

자문의견

(의견) 관리운영비를 인건비와 경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하위 회계과목을 공시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는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주석공시 사항으로 격상할 필요는 있음

- 주석공시로 격상이 어렵다면 하위 회계과목을 따로 주석에 공시할 필요는 있음. 하위 회계과목 중 금액적으로 크거나 계정과목의 성격상 정보유용성이 있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표에 인식은 하지 않더라도 주석에 공시는 되어야 함

㉖ 비배분 수익·비용의 하위 회계과목으로 공시에서 제외

자문의견

(의견) 재정운영표 간소화의 취지라면 비배분비용과 비배분비용의 수익의 세부내역을 재정운영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공시하는 것에 동의함

㉗-1. 일반수용비(210번대) 예산 관련 계정과목 등 금액적 중요성이 적은 계정과목을 관리과목으로 조정

자문의견

(의견) 210번대 일반수용비 예산관련 계정과목 등을 관리과목으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함. 단 금액적 중요성만을 고려하여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성격상 중요한(정책적 의미나 국민 관심이 큰) 계정과목을 회계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함. 추가적으로 성격상 중요한 계정과목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㉔-2. 보조비의 하위 과목(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하위 과목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의견) 보조비의 하위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하는 것에 동의함

㉔-3. 기타이전비용의 하위과목(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등)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의견) 기타이전비용의 하위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하는 것에 동의함. 단, 회계과목으로 격상된 비용항목을 재정운영표 본문에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주석공시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㉔-4. 기타비용, 기타수의 중 금액적 중요성 및 정보이용자 유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목 회계과목 격상

자문의견

(의견) 센터의 의견에 동의함

[총평] 재무제표 개선 TF 총괄 의견

자문의견

현행 재무제표 본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 '재무제표 간소화' 프로젝트는 시의적절하고 국가 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된다. 단 재무제표 본문의 간소화 판단에 있어 중요성을 금액 뿐만 아니라 계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 본문의 간소화가 주석공시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석공시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세심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석공시에 대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주석공시의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개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 TF 최종보고서

연구자문위원

전 중 열

- ① 부처별 원가를 공시하는 목적은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으로 조직체계에 맞춰 통합 공시

<중앙관서 통합(안)>

구분	하위 중앙관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등 5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개 부처	하위 17개 청
별도 표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의견 : 개선방안에 반대

- (1) 통합한 후에 중앙관서 숫자가 56개에서 25개로 축소되어, 관서 개수는 크게 감소함. 그러나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를 표시하는 56개 줄을 25개로 줄인다고 하여, 국가재정운영표의 페이지 수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함.
- (2) 중앙관서를 25개로 통합한다면, 개별 중앙관서의 재정운영순원가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예를 들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이질적인 성격의 중앙관서를 '대통령'이라는 단일 관서로 통합함으로써, 개별 관서에 대한 재정운영순원가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게 됨.
- (3) 또한 중앙관서를 25개로 통합함에 따라, 중앙관서별 재정운영표도 25개로 축소한다면,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음.
- (4) 만약 중앙관서를 25개로 통합하되 중앙관서별 재정운영표는 현행대로 56개로 유지한다면, 통합된 국가재정운영표 상의 재정운영순원가 정보가 중앙관서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와 불일치하게 될 것임.

㉒ 현행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 대신 분야별 원가(16대 또는 12대) 정보 제공

- (1안) 現 재정운영표 대체
- (2안) 現 재정운영표는 유지하고 재무제표 신설
-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 주석 제공

자문의견: 2안에 찬성

- (1) 사업별 예산제도를 2007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할 때, 분야(혹은 대기능)-부문(혹은 중기능)-정책사업(혹은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예산구조를 설정하였으며, 이 예산구조에 따라 예산이 현재까지 편성되고 있음.
- (2) 재정운영표의 핵심은 국가 기능에 따른 세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능별 재정운영표가 국가회계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상황이었음. 그러나 중앙관서의 재정운영순원가 정보도 중요한 정보이므로, 現(現) 재정운영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3) 세출예산의 구조가 예비비를 포함하여 16대 분야로 되어 있지만, 예비비는 국가의 대기능을 나타내는 분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분야를 제외하면 15대 분야가 됨. 만약 15대 분야를 더 축소하여 12대 분야로 재정운영표를 작성한다면, 현행 세출예산의 분야(대기능) 구조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4) 결론적으로, 現(現) 재정운영표를 유지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15대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또한 신설하는 재정운영표의 명칭으로 '기능별 재정운영표'를 제안함.

㉓ 국가재정운영표 상 내부거래 정보를 한줄로 차감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 제거 후 금액 반영

자문의견 : 현행 방안 유지 및 항목57(내부거래 금액)의 세부 내역에 대한 주석 공시를 제안

- (1) 개선방안의 의미가 ①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를 내부거래제거 후(後) 순액으로만 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를 내부거래제거 전(前) 금액, 내부거래 금액 제거, 그리고 내부거래제거 후 순액 등으로 모두 표시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본인은 ①의 의미로 해석하고자 함.
- (2) '국가재정운영표'에서 중앙관서의 재정운영순원가를 내부거래제거 후(後)의 순액으로 표시한다고 하여, 모든 불일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중앙관서별 재정운영표' 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내부거래제거 전(前) 금액으로 공시되고 있기 때문임.
- (3) 결론적으로, 하나의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현행 방안의 유지 및 항목57(내부거래 금액)의 세부 내역에 대한 주석 공시를 제안함.

4 국세징수활동 공시 강화

(1안) 국세징수활동표를 재무제표로 위상 강화

(2안) 국세징수활동정보를 주석으로 제공

자문의견 : 현행 유지 제안

- (1) 국세징수활동표가 국세징수 중앙관서(국세청 등)의 필수보충정보이므로, 개선방안 1안(국세징수활동표를 국세징수 중앙관서의 필수보충정보가 아닌 재무제표로 위상 강화)과 2안(국세징수활동정보를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의 주석으로 제공)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국가회계비(非)전문가들은 국세징수활동표를 국가통합 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라고 오해할 수 있음. 왜냐하면, 비록 국가회계기준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중앙관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국가회계실체로 정의하였지만, 국가회계기준 별지 서식에서의 대한민국 정부도 국가회계실체로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개선방안 1안과 2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국가회계기준 제54조(필수보충정보)에서의 국세징수활동표가 중앙관서의 필수보충정보임을 명확히 전제할 필요가 있음.
- (2) 개선방안 1안은 국세징수 중앙관서의 필수보충정보를 국세징수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로 격상하는 방안인데, 큰 실익은 없으며 오히려 국세징수 중앙관서의 수익이 왜곡됨.
- (3) 개선방안 2안은 국세징수활동정보를 국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제공하는 방안인데, 국세징수 중앙관서의 필수보충정보인 국세징수활동표를 국가 재무제표 주석으로 다시 중복하거나 혹은 격상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함.
- (4) 결론적으로, 현행 유지를 제안함.

5 국세징수활동표를 별도 작성함에 따라 '미지급국세' 유동부채 인식 등 재무정보가 왜곡되는 부분이 존재

5-1. 조정계정을 유동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변경

자문의견 : 개선방안에 찬성하되, "미지급국세"를 다른 계정명으로 대체하도록 제안

- (1) 개선방안 1안(조정계정으로 자산차감계정 사용)에 대한 조정 회계처리와 이를 반영한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도 추가 제시한다면 연구보고서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2) 미수국세 증감의 조정계정으로 "미지급국세"를 사용하는 대신에 자산차감 계정을 사용하는데 찬성함. "미지급국세"는 부채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수국세 조정계정으로는 부적합한 명칭임. 자산차감 계정에 알맞은 명칭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함.

5-2.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

자문의견

개선방안은 국세징수 중앙관서의 수익을 심각히 왜곡할 수 있으므로 반대함.

⑥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공시계정과목이 과다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재정운영표와 중복 문제 제기

⑥-1.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분류(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는 재정운영표에서 총액으로만 제공

자문의견 : 관리운영비 등을 총액으로 표시하는데 찬성
(1) 성질별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는 이미 존재하므로 (국가회계기준 제54조에서 중앙관서 필수보충정보로 규정), 현행 프로그램별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상에서 관리운영비 등을 총액으로만 표시하는 개선방안에 찬성함.
(2) 성질별 국가재정운영표는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앞으로 규정된다면, 기능별 국가재정운영표(아직 미규정) 상에서 관리운영비 등을 총액으로만 표시하는 개선방안에 찬성함.

⑥-2.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1안) 재무제표로 위상강화 / (2안) 주석으로 공시 강화

자문의견 : 중앙관서의 경우 1안과 2안에 모두 반대, 국가의 경우 1안은 반대 하되 2안은 찬성
(1) 현행대로 프로그램별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를 주(主) 재정운영표로, 그리고 성질별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를 필수보충정보로 유지하도록 함.
(2) 기능별 및 성질별 국가재정운영표는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음. 기능별 국가재정운영표가 규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1안은 반대하되, 2안은 찬성함.

⑦-1. 현 재무제표 상 중앙관서별 원가를 제공하고,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 찬성
중앙관서의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찬성함. 단, 중앙관서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별도 페이지로 작성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처럼 칸을 회계실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

⑦-2. 국가통합 수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

자문의견 : 찬성
국가의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찬성함.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대한민국 정부) 자체도 회계실체에 포함되도록 국가회계기준에 정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회계기준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중앙관서의 회계단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만을 회계실체로 정의하고 있음.

㉘-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상태표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 필수보충정보 공시는 찬성
 사회보험 재무제표를 신설하여, 현행 국가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는 것은 찬성함.

㉘-2. 국가재무제표에서 사회보험상태표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제외(혹은 구분 공시)하여 단순 자산·부채 정보가 아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자문의견 : 반대
 사회보험에 속하는 회계실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현행 국가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대함.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곳이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는 국가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것이 논리 적임. 다만, 현행 국가재무제표 안에 사회보험 회계실체를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 만, 국가재무제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반대함.

㉙ 사회복지, 국방, 보건 등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분야와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 수의 정보는 연관성이 높지 않으므로 비교환수익(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에 대한 정보는 비교환수익명세표를 통해 분리 제공

자문의견 : 비교환수익명세표 작성은 찬성하되, 현행 재정운영표에서 비교환수익을 제외하는 것은 반대
 (1) 비교환수익을 국가재정운영표에서 분리(즉, 제외)한다면, 국가재정운영표(개선안)은 어떤 형태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만약 분야별 국가재정운영표를 작성한다면, 그 구조가 “분야별 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재정운영순원가=재정운영결과”의 형태인가?
 (2)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운영표(Statement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Net Position)(참고 6)에서도 비교환수익을 공시하고 있음.
 (3) 현행 국가재정운영표를 분야별 국가재정운영표로 대체할 경우, 비교환수익은 총액으로 표시 하고, 비교환수익명세표(참고 5에서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를 미포함 하도록 수정한 명세표)를 공시하는 것은 찬성함.

㉚-1. 중앙정부의 원가와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국세 수익의 차감항목 또는 비교환수익 중 정부간 이전비용 등으로 인식

자문의견 : 반대
 지방재정교부 활동은 이를 집행하는 중앙관서(행정안전부)의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지방재정 교부금을 중앙관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공시하는 현행 방안이 국가재정운영표 상의 국세수익 차감항목 혹은 비교환수익 중 정부간 이전비용으로 공시하는 개선안보다 더 논리적으로 타당함.

㉔-2. 지방재정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처리

자문의견 : 반대

㉔-1의 경우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관련 중앙관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공시하는 현행 방안이 예산집행(프로그램)과 관련부서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더 타당한 방안임.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자원) ① 교부세의 자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② 교부금 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㉔ 회계과목이 일괄 공시됨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이 모두 표시되어 공시과목이 과다(일반유형자산 11개, 사회기반시설 15개 등 총 40개)하므로 금액적 중요성이 큰 '자기국채', '자기공채'를 제외한 차감계정 모두를 공시과목에서 제외

자문의견 : 찬성

(1) '차감계정 공시 제외'를 국가재정상태표 및 회계실체 재정상태표에 모두 적용한다면, 일관성 있게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찬성함. 다만 간소화 및 정보제공 분량저하에 따른 논란은 주석 등의 부속서류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므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함.

(2) 또한 주석 등의 정보공시가 과다해지는 것은 재무상태표가 간소화되는 장점에 따른 결과이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임. 다만, 결산개요에 공시된 정보는 이후 정보공시에는 '결산개요 및 쪽 참조'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중복되지 않도록 함.

㉔-1. 610조원 규모 국민연금 운용자산 별도 계정과목 신설(회계과목)

자문의견 : 찬성

- (1) '국민연금운용자산' 제정의 신설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함. 그러나 610조 규모의 자산계정 신설 시에, 국민연금운용자산 제정이 과거에 이미 계상된 항목(예: 장기투자증권)에서 분리하여 대체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항목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 국민연금은 연금회계처리지침 문단35의 문단제정근거20에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만약 국민연금충당부채가 과거에 인식되었더라면, 국민연금운용자산은 이미 국민연금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설정되었거나, 자산계정으로 설정되었을 것임.
- (3) 부채(국민연금충당부채)의 인식 없이 자산(국민연금운용자산)만을 인식하는 것은 자산(연금충당부채관련 자산: 기업의 '사외적립자산'에 해당)의 인식 없이 부채(공무원연금충당부채 및 군인연금충당부채)만을 인식하는 회계처리와는 정반대가 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문제가 됨. 따라서 국민연금운용자산의 계정과목 신설 시에 국민연금충당부채의 설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㉔-2.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

자문의견 : 찬성

- (1) 금융상품으로 통합하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함. 그러나 공정가치평가 유무와 투자목적 유무를 연결하는 것(예, 공정가치 측정=투자목적)에는 반대함. 예를 들어, 회사채를 만기보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목적이지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므로, '투자목적=공정가치 측정'의 등식이 성립될 수 없음. 현행 국가회계기준 제33조(유가증권의 평가) 제3항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의 규정도 다른 규정(예: IFRS 및 IPSAS 규정)을 참고하여 변경 여부를 고려하기 바람.
- (2) 비투자목적(=투자목적외)은 무엇인가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분증권 투자 시에 '유의적인 영향력' 혹은 '통제'가 '비투자목적'인데, 현행 정부회계 분류로는 출자금에 주로 해당하는 것임. 출자금에 대한 현행 정부회계처리를 지분법 혹은 연결채무제표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투자목적 유무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임.
- (3) 현행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장기미수채권을 투자자산 항목의 비투자목적으로 분류한다는 뜻인가요? 장기미수채권은 장기미수금(예: 장기미수국세)이 대부분인데, 미수금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㉒-3.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기타일반유형자산, 전비품)과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하천, 기타사회기반시설) 계정과목 간소화

자문의견 : 찬성

간소화 방안에 찬성함.

㉒-4. 무형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 하위(관리과목)으로 구분

자문의견 : 찬성

개편 방안에 찬성함.

㉒-5. 장기차입부채의 국채 및 공채의 하위 계정과목 신설(국고채, 외평채 등)

자문의견 : 찬성

신설 방안에 찬성함.

㉒-6.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금별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험부채를 공시과목으로 상향

자문의견 : 찬성

개편 방안에 찬성함.

㉒-7.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급여 성격의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계정과목 하향

자문의견 : 찬성

개편 방안에 찬성함.

㉒-8.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를 개별법 결산과 연관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으로 구성

자문의견 : 반대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의 구분이 정책담당자에게 더 친밀한 감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분류가 더욱 객관성 있는 방안이므로 분류 변경에 반대함.

㉒-9.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정부내 자산·부채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리하여 계정과목명으로 내부거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

자문의견 : 찬성

개편 방안에 찬성함.

㉓ 현 재무제표 작성단위(원)는 최대 16자리로 표현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기방식(만, 억, 조) 또는 (2안) 금액 표기 기준(백만, 십억, 조) 단위로 조정

자문의견 : 2안(금액 표기기준 단위로의 조정) 찬성
 백만원 단위(금액 표기기준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㉔ 각 중앙관서별로 프로그램 수가 다수(최대 39개)인 경우가 있고, 한 페이지에 25개의 프로그램이 공시됨에 따라 프로그램원가 부분만 1페이지 초과

㉔-1. 직관적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별 원가를 프로그램원가 대신 공시

- (1안)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 분야별원가 적용
- (2안) '부' 단위 중앙관서에 한하여 부문별원가로 개편
- (3안) 프로그램 개수 10개 이상인 중앙관서만 부문별원가로 개편
- (4안) 현행 유지

자문의견 : 4안(현행 유지) 찬성
 (1) 부문별 분류는 국가의 증기능에 따른 분류인데, 증기능의 분류 간격이 너무 크므로, 현행대로 프로그램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2안과 3안은 기준에 해당되는 중앙관서만 부문별 원가를 공시하는 것이므로, 일관성이 결여됨. 따라서 4안(현행 유지)을 찬성하되, 중복되는 프로그램명은 각 부처와 상의하여 차별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명으로 개명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합하도록 함.
 (2) 부문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즉, 부문명을 공시하고 그 하위에 동일 부문에 속한 프로그램들을 공시한다면 정보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㉔-2. 재정운영표 상 순원가 금액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

자문의견 : 찬성
 개선안에 찬성함.

㉕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 2개로만 구분하여 공시하고, 현재 공시하는 회계 과목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

자문의견 : 찬성
 개선안에 찬성함.

㉖ 비배분 수익·비용의 하위 회계과목으로 공시에서 제외

자문의견 : 찬성
 개선안에 찬성함.

㉔-1. 일반수용비(210번대) 예산 관련 계정과목 등 금액적 중요성이 적은 계정과목을 관리과목으로 조정

자문의견 : 찬성

- (1) 개선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함.
- (2)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등을 관리과목(레벨 IV)로 조정한다면, 이 관리과목들의 상위 레벨 III의 명칭은 '기타비용'이 되나요? 만일 소액의 비용을 모두 기타비용에 포함한다면, 기타비용이 너무 커질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㉔-2. 보조비의 하위 과목(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하위 과목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 찬성

개선안에 찬성함.

㉔-3. 기타이전비용의 하위과목(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등)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 찬성

개선안에 찬성함.

㉔-4. 기타비용, 기타수의 중 금액적 중요성 및 정보이용자 유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목 회계과목 격상

자문의견 : 찬성

개선안에 찬성함.

[총평] 재무제표 개선 TF 총괄 의견

자문의견

- (1) 재무제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기 보다는, 현행 국가회계기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큰 틀을 심사숙고하여 재설정된 후에, 국가회계기준을 먼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현행 국가회계기준은 미국 연방정부회계기준을 모델로 하여 2009년도에 설정되었으나, 이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으로의 방향 선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함.
- (2) 제안서에 제시된 개선사항이 중앙관서에 관련된 것인지, 국가(대한민국 정부)에 관련된 것인지, 혹은 양쪽 모두에 관련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최종보고서 작성 시에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함.
- (3) 안건의 개선안을 반영하는 재무제표(안)을 최종보고서에 제시하고 자세히 설명하기 바람. 특히 과제 3(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공시 개선)에서 분야별 국가재정운영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면, 안건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4) 재무회계는 예산회계와 연계성이 높아야 하므로, 항상 예산회계 계정과목을 염두에 두고 재무회계 계정과목을 개정하기를 제안함.
- (5) 2007년도에 처음 설정된 사업별(혹은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사용되면서 중앙관서별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예산 체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단위사업)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 예산 체계와 프로그램명의 점검은 중앙관서의 성과평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또한 전체 중앙관서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효과적일 것임.

2020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 TF 최종보고서

연구자문위원

정 도 진

- ① 부처별 원가를 공시하는 목적은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으로 조직체계에 맞춰 통합 공시

<중앙관서 통합(안)>

구분	하위 중앙관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등 5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사력안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개 부처	하위 17개 청
별도 표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의견

- 부처별 원가 공시의 목적이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원가 공시는 원가 통제와 원가 관리에 대한 책임부여도 있음
- 그러한 측면에서 부처의 장이 다른데 통합 공시할 경우 오히려 유용한 정보제공이 축소될 수 있음 (예,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원가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지야 함)
- 그러한 측면에서 부처의 장이 다른데 통합 공시할 경우 오히려 유용한 정보제공이 축소될 수 있음
- 원가의 통합공시를 추진한다면, 통합공시의 유용성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재논의를 제안함

- ② 현행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 대신 분야별 원가(16대 또는 12대) 정보 제공
- (1안) 現 재정운영표 대체
- (2안) 現 재정운영표는 유지하고 재무제표 신설
-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 주석 제공

자문의견

- 현 재정운영표를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신설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체계에 부합되지 않음
-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간 관계와 정보요소를 고려하여 현재 체계로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재무제표를 신설하면 재무제표의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
- 또한, 현재 재정운영순원가 정보가 분야별 원가로 대체되고 삭제되어야 할 정도로 정보 유용성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분야별 재정운영표 주석 제공은 주석의 과도한 분량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지지함
- 더불어 1안과 3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재무제표로 제공하고, 현행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국가재정운영표 상 내부거래 정보를 한줄로 차감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 제거 후 금액 반영**자문의견**

- 국가재정운영표 상 내부거래 정보도 나름대로 정보요소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내부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은 재고려할 것을 제안함

④ 국세징수활동 공시 강화**(1안) 국세징수활동표를 재무제표로 위상 강화****(2안) 국세징수활동정보를 주석으로 제공****자문의견**

- (2안) 지지
- 재무제표와 주석이 제공하는 정보의 역할은 차이가 있음
- 또한,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기존에 사용해 오던 재무제표와 주석에 대한 개념과 범위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국세, 관세 등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수의 세부정보가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에서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에 동의하지만,
- 국세징수활동표를 재무제표로 공시하는 것보다 주석으로 제공하는 2안에 동의함

5 국세징수활동표를 별도 작성함에 따라 '미지급국세' 유동부채 인식 등 재무정보가 왜곡되는 부분이 존재

5-1. 조정계정을 유동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변경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급국세가 부채의 성격이 아니고 미수국세(채권)의 증감에 따른 조정계정이므로 미수국세 하위 차감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소 방안으로 판단됨

5-2.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할 수 있으나, 현재 체제에서 국세징수활동표와 재정운영표의 통합은 정부의 지속가능성과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6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공시계정과목이 과다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재정운영표와 중복 문제 제기

6-1.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분류(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는 재정운영표에서 총액으로만 제공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히 중요도가 낮은 분류는 총액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정보의 유용성과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함 ○ 다만, 그 중요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원칙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3-2.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1안) 재무제표로 위상강화 / (2안) 주석으로 공시 강화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은 간접적으로 확인됨 ○ 다만,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주 재무제표로 강화할 경우, 어떠한 정보(계정과목)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함 ○ 제시된 각국의 재정운영표가 제공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듯이, 국내 정보이용자들이 국가재무정보를 활용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주 재무제표화를 검토해야 함

7-1. 현 재무제표 상 중앙관서별 원가를 제공하고,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 실체별 또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국가(중앙관서)에 포함되는 중앙관서(회계실체)는 그 성격에 따라 특성이 다름에도 합산 정보만 제공되는 문제점에 동의
- 또한, 중앙관서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 회계실체에 따라 성격이 상당히 구분되는 것에도 동의
- 그럼에도 현재 정보이용자가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유용하게 사용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의구심이 재무제표 작성의 원가 대 효익 측면에서 고려할 수 밖에 없음
- 회계실체별 재무제표에 비해 중앙관서 재무제표의 제공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할 수 있으나, 중앙관서장조차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시 시기상조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만, 국가재무제표를 둘러싼 사회·경제 환경에서 시행시기의 적절성과 면밀한 준비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2. 국가통합 수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

자문의견

- 앞서 기술한 자문의견처럼, 현재 정보이용자의 수준과 활용도를 고려할 경우 국가통합 수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가 제공될 효익이 원가보다 높을지 의문시 됨
- 우선, 이러한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8-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상태표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 사회보장성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보험상태표로 보여주는 것은 나름대로 정보의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회보험상태표에서 각 기금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보여주는 것은 각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정보도 총량주의가 있어 재무제표의 신설은 기존 재무제표와 관계 및 체계를 고려해야 함. 단순히, 추가적인 정보제공으로 재무제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님. 즉, 사회보험상태표 재무제표를 신설하더라도 이 재무제표가 기존 재무제표와 동일한 수준에서 공시되어야 할지, 아니면 별도 체계에서 공시되어야 할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㉔-2. 국가재무제표에서 사회보험상태표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제외(혹은 구분 공시) 하여 단순 자산·부채 정보가 아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제안은 사회보험상태표를 국가재무제표에서 구분하여 별도 재무제표로 공시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상황에서는 제외하는 방안보다는 구분 공시하는 방안을 지지함

㉕ 사회복지, 국방, 보건 등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분야와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 수익 정보는 연관성이 높지 않으므로 비교환수익(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에 대한 정보는 비교환수익명세표를 통해 분리 제공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운영과 수익정보가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경우 국가재무정보의 한계점이자 특성이라고 판단되어, 연관성만으로 정보의 분리여부 판단을 한계가 있음 ○ 교환, 비교환에 대한 IPSAS의 개념이 완전히 변경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교환 비교환수익 비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㉕-1. 중앙정부의 원가와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국세 수익의 차감항목 또는 비교환수익 중 정부간 이전비용 등으로 인식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교부금의 성질 상 정부간 이전비용이 다당할 것으로 판단됨

㉕-2. 지방재정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처리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의견과 동일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자원) ① 교부세의 자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② 교부금 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㉞ 회계과목이 일괄 공시됨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이 모두 표시되어 공시과목이 과다(일반유형자산 11개, 사회기반시설 15개 등 총 40개)하므로 금액적 중요성이 큰 '자기국채', '자기공채'를 제외한 차감계정 모두를 공시과목에서 제외

자문의견

- 계정과목이 많지 않은 민간기업의 재무제표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여전히 본문에 제시하고 있지만, 계정과목이 많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주석으로 공시한 지 오래됨
- 현재 국가재무제표는 본문과 주석 정보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이번에 본문 정보와 주석 정보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에 제시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차감계정을 본문 표시 여부를 금액적 중요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성격의 중요성(예, 정보유용성)도 고려할 것을 제안함

㉞-1. 610조원 규모 국민연금 운용자산 별도 계정과목 신설(회계과목)

자문의견

- 국민의 관심과 정책의 중요성 및 금액 측면에서도 국민연금 운용자산의 별도 계정과목 신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함

㉔-2.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자문의견**

- 민간에서도 금융상품과 금융자산에 대한 혼동이 아직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하는 것은 시기를 조금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

㉔-3.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기타일반유형자산, 전비품)과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하천, 기타사회기반시설) 계정과목 간소화**자문의견**

- 민간부문에서는 이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만을 본문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주석으로 표기하고 있음
- 국가재무제표 본문의 간소화를 통한 이해가능성 증대와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바람
- 다만, 주석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에 많은 본문 정보가 주석 정보로 이전될 경우, 오히려 주석 정보 활용이 더욱 떨어질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함

㉔-4. 무형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 하위(관리과목)으로 구분**자문의견**

- 국가재무제표에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형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의 대표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유지하는 방안을 지지
- 민간부문에서도 금액이 적더라도 기간간 또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그 성질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㉔-5. 장기차입부채의 국채 및 공채의 하위 계정과목 신설(국고채, 외평채 등)**자문의견**

- 국고채와 외평채는 국가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며,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위 계정과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렇게 하위 계정과목을 신설하는 경우와 통합하는 경우 등 계정과목 체계개편에 있어서 원칙을 먼저 명확히 세우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㉔-6.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금별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험부채를 공시과목으로 상향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취지대로 사회보험부채를 공시과목으로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며, 더불어 필요한 주석 정보도 확인할 것을 제안함 ○ 다만, 위에 기술한 것처럼 하위 계정과목을 신설하는 경우와 통합하는 경우 등 계정과목 체계개편에 있어서 원칙을 먼저 명확히 세우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제시함

㉔-7.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급여 성격의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계정과목 하향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성격의 계정과목을 같은 수준으로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연금충당부채와 동일하게 퇴직수당충당부채를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단순히 금액적 중요성만으로 하향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계정과목으로서 일반적 대표성이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㉔-8.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를 개별법 결산과 연관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으로 구성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무제표 개선방안은 간소화와 정보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됨 ○ 그런데 개별법 결산과 연관되어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류체계를 제안한 것은 위의 기본적인 접근방법과 다름 ○ 일반유형자산의 분류체계를 재검토할 때도 다른 접근방법처럼 간소화와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㉔-9.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정부내 자산·부채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리하여 계정과목명으로 내부거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거래는 1차 논의에서도 다루졌지만, 기본적으로 내부거래 정보가 제공될 경우의 정보유용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기를 바램 ○ 그 검토를 바탕으로 내부거래 정보의 한 줄 제공이나 위 개선방안에 대해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㉓ **현 재무제표 작성단위(원)는 최대 16자리로 표현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기방식(만, 억, 조) 또는 (2안) 금액 표기 기준(백만, 십억, 조) 단위로 조정**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단위를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표기방식으로 가독성을 제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작성단위를 조정한다면 금액 표기 기준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지

㉔ **각 중앙관서별로 프로그램 수가 다수(최대 39개)인 경우가 있고, 한 페이지에 25개의 프로그램이 공시됨에 따라 프로그램원가 부분만 1페이지 초과**

㉔-1. **직관적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별 원가를 프로그램원가 대신 공시**

- (1안)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 분야별원가 적용
- (2안) '부' 단위 중앙관서에 한하여 부문별원가로 개편
- (3안) 프로그램 개수 10개 이상인 중앙관서만 부문별원가로 개편
- (4안) 현행 유지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관서별 프로그램 수가 상당하여 가독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국가재무제표의 활용성을 낮추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임 ○ 직관적으로는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개선안 I의 2안인 '부' 단위 중앙관서 등 기준을 설정하여 부문별 원가를 공시하는 것이 이해가능성과 정보활용성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시된 단점을 간과할 수 없음 ○ 따라서 개선안 I의 1안이 가능한 대안이지만,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원가를 부문원가로 개편하는 작업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㉔-2. **재정운영표 상 순위가 금액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최소한 개선안 II처럼 재정운영표 상 순위가 금액의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라도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함 ○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개선안 II처럼 재정운영표 상 순위가 금액의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하고, 개선안 I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연구와 접근을 제안함

㉔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 2개로만 구분하여 공시하고, 현재 공시하는 회계 과목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본문에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많은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무제표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임 ○ 더욱이 적절한 주석 정보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위의 제시된 개선안을 시급히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됨

㉕ 비배분 수익·비용의 하위 회계과목으로 공시에서 제외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자문의견과 동일하게, 재무제표 본문에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많은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무제표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임 ○ 또한, 주석을 통해 비배분 수익·비용 내역 공시로 보완 가능하므로, 위의 제시된 개선안을 시급히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됨

㉖-1. 일반수용비(210번대) 예산 관련 계정과목 등 금액적 중요성이 적은 계정과목을 관리과목으로 조정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중심의 계정과목을 정보이용자 중심의 계정과목 체계로 개편하는 취지에 동의 ○ 회계과목과 관리과목을 중요성에 따라 개편하는 것에도 동의하며, 더불어 회계과목과 관리과목의 구분 기준(예: 중요성)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 다만, 이러한 개편이 기존 예산 중심의 회계시스템이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 사전 확인 필요함

㉖-2. 보조비의 하위 과목(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하위 과목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기술한 자문의견의 취지대로, 보조비의 하위과목의 하위 과목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시키는 것에 동의 ○ 다만, 중요성의 판단기준을 금액만으로 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함. 가령, 지금은 금액이 적더라도 그 정보요소가 의사결정자에게 중요할 수 있음

㉔-3. 기타이전비용의 하위과목(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등)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 보조비와 마찬가지로 기타이전비용의 경우에도 앞서 기술한 자문의견의 취지대로,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시키는 것에 동의
- 그러나 역시 중요성의 판단기준을 금액만으로 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함. 물론 위에 제시된 사회보험비용과 연금비용은 정보요소로서도 중요성이 있음

㉔-4. 기타비용, 기타수익 중 금액적 중요성 및 정보이용자 유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목 회계과목 격상

자문의견

- 원칙적으로 금액적 중요성과 정보이용자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회계과목과 관리과목을 재조정하는 것에 동의
- 다만, 중요성과 유용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하여 개념적으로 일관성을 갖추어야 이후에 이러한 개편논의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총평] 재무제표 개선 TF 총괄 의견

자문의견

- 국가재무제표의 활용도 제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극복해야 할 공통된 과제로, 이번 TF에서 제시한 간소화 방안, 다양한 정보 제공, 이해가능성 제고는 적절한 개선방향임
- 이러한 개선방향에 따라 단위조정 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적은 안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를 희망함
- 다만, 이번 개선방안을 접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게 됨
- 예를 들어, 중요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와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 정보의 구분에 대한 기준도 개념적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임
- 재무제표의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 재무제표와의 체계를 혼들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 무엇보다 개선이 오히려 현재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현재 정보이용자들에 대한 정보이용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추가로 IPSAS 등 해외의 동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선방안이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국가재무제표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의지와 실천을 기대함

2020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 TF 최종보고서

연구자문위원

지 현 미

1] 부처별 원가를 공시하는 목적은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으로 조직체계에 맞춰 통합 공시

<중앙관서 통합(안)>

구분	하위 중앙관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등 5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슴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개 부처	하위 17개 청
별도 표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의견

- 국가 재정운영표는 각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기능별(각 중앙관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기능) 재정운영표라고 할 수 있음
 - 중앙관서별 원가 공시의 목적이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모나 조직체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중앙관서별 특성(행정서비스의 기능)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방안과 같이, 중앙관서를 임의로 묶어서 통합 공시하는 것(현재 56줄로 표시되는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를 절반 이하로 표시하는 것)은 중앙관서별 특성(행정서비스의 기능)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아 오히려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또한 중앙관서별(행정서비스의 기능) 원가정보의 양적·질적 충분성 및 완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다만, 2011 회계연도 이후 신설부처는 모두 하위에 위치하는 등 현재와 같이 56개를 단순하게 일렬로 나열하는 방식보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중앙관서를 통합하여 구분 표시하되 그 하부에 하위 중앙관서를 나열하는 방식이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 중앙관서별(행정서비스의 기능) 원가정보의 양적·질적 충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보이용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시 (참고2)의 중앙관서 재분류 국가 재정운영표(안)의 일부 수정(안)
 1. 재정운영순원가

- 1. 대통령
 - 1.1 대통령비서실
 - 1.2
- 2. 국무총리
 - 2.1 국무조정실
 - 2.2
- 3. ○○부처
 - 3.1 ○○청
 - 3.2

또한 현재 56줄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중에서 통합하여 표시하더라도 중앙관서별 특성(행정서비스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통합하여 표시함으로써 현재의 56줄 보다는 다소 적은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가 표시될 수는 있음

- 이를 통해 중앙관서를 임의로 묶어서 통합 공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룹핑의 임의성, 왜곡가능성과 이해가능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와의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㉔ 현행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 대신 분야별 원가(16대 또는 12대) 정보 제공**
- (1안) 現 재정운영표 대체**
- (2안) 現 재정운영표는 유지하고 재무제표 신설**
-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 주석 제공**

자문의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는 프로그램(정책사업)에 대한 원가정보임

- 프로그램에 대한 원가정보를 회계실체,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서 집계하고 있으며, 분야-부문-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기존에 생성되고 있는 프로그램 원가를 공시하고 유용한 회계정보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국가회계정보 이용에 따른 혜택(Benefit)이 국가회계정보 생산에 따른 비용(Cost)을 초과하도록 하여 국가회계정보가 경제적 재화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음

다만, 예산 홍보자료 기준인 12대 분야보다, 세출예산 기준으로 16대 분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홍보자료 기준은 정부에 따라 홍보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 변동될 수도 있으나, 세출예산 기준은 어느 정부인지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세출예산 기준 16대 분야 공시가 기간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개선방안 중에서는 (제3안) 현 재정운영표를 유지하고,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제1안)과 같이 현 재정운영표를 대체하는 것은 현 재정운영표가 제공하는 정보도 정보로서의 유용성이 충분히 있고, 과거와 비교 가능한 재정운영표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현 재정운영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제2안)과 같이 현 재정운영표는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신설하는 것은 본문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두 재정운영표 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다만, (제3안)과 같이 주석으로 공시하는 경우 주석 공시 분야별 재정운영표가 본문에 공시하는 재정운영표와 어떻게 다르고, 공시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정보이용자가 어떻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③ 국가재정운영표 상 내부거래 정보를 한줄로 차감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 제거 후 금액 반영

자문의견

- 내부거래가 제거된 비교환수익의 공시방법과 마찬가지로,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를 제거한 금액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국가 재정운영표상 수익과 비용의 표시 방식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앙관서별 정확한 원가정보가 공시될 수 있음
- 또한 중앙관서의 수익과 비용이 내부거래를 제거한, 그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음
- 다만, 개선방안과 같이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 수익비용을 반영한다면
- 현재의 전체 내부거래 수익비용을 공시하는 내부거래금액 행은 본문에서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석이나 주기로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4 국세징수활동 공시 강화

(1안) 국세징수활동표를 재무제표로 위상 강화

(2안) 국세징수활동정보를 주석으로 제공

자문의견

- 중앙관서 국세수익의 경우, 재정운영표가 아닌 별도의 국세징수활동표에 계상하는 이유는 국세수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원을 해당 회계실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임
 - 지방세수익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운영표에 포함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순자산의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
 - 그러나 국세수익의 경우 모두 국고로 귀속되어 모든 중앙관서 세출의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중앙관서의 성과로 보기 어려운 바, 국세수익을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가 아닌 국세징수활동표에 인식하는 것임
- 만약 (1안)에서와 같이 국세징수활동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중앙관서의 필수보충정보가 아닌 재무제표로 격상하여 국세징수활동표를 공시한다면
 -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실체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를 나타낸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할 때,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이 해당 중앙관서의 재무성과(수익)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국세수익이 일부 중앙관서(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에만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재무제표'보다는 중앙관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시하는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2안)과 같이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에 국세징수활동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국세징수활동표를 별도 작성함에 따라 '미지급국세' 유동부채 인식 등 재무정보가 왜곡되는 부분이 존재

5-1. 조정계정을 유동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변경

자문의견

- 신고납부의 경우 국세청은 국세징수활동표에 해당세목의 국세수익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국고 이전지출의 계정과목으로 국고로 이전하는 회계처리를 함
 - 반면, 부과지되는 국세의 경우 부과지 시점에 해당세목의 국세수익을 인식하고, 동시에 '미수국세(재정상태표 항목)'를 계상하였다가 납부시점에 미수국세의 회수 처리를 한 후 국고로 이전되는 수납액을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함

- 국세청 결산조정 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지급국세(재정상태표 항목)'는 해당 중앙관서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일반적인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다만, '미수국세(재정상태표 항목)'가 해당 중앙관서에만 귀속되는 일반적인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자산이 재정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미지급국세(재정상태표 항목)'를 부채로 계상하는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미지급국세는 부채의 성격이 아니며, 미수국세의 증감에 따른 조정계정이므로 미수국세 하위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센터 내 주요 의견>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미수국세의 차감계정으로 미지급국세를 인식할 경우 순액 기준으로 채권관리책임이 있는 중앙관서(국세청 등)의 재무제표에 자산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 중앙관서의 관리책임과 재무제표상의 자산 및 부채로 표시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됨
-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며, 중앙관서 관리책임의 표시방법은 주식 등 다른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을 것임

5-2.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

자문의견

- 국세징수활동표와 재정운영표를 통합할 경우 국세징수활동표의 본래 목적인 수익 왜곡 방지가 불가능함

6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공시계정과목이 과다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재정운영표와 중복 문제 제기

6-1.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분류(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는 재정운영표에서 총액으로만 제공

자문의견

- 국가 특성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현행 계정과목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개선방향이며, 중요성에 따라 구분표시 및 통합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2.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1안) 재무제표로 위상강화 / (2안) 주식으로 공시 강화

자문의견

-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주 재무제표로 위상 강화하는 것보다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 재무제표의 종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가독성을 저하시키고, 중요한 재무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다만, 그 명칭에 있어서 '성질별'이라는 것이 직관적인지, 아니면 '성격별'이라는 것이 직관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성격별, 기능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7-1. 현 재무제표 상 중앙관서별 원가를 제공하고,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신설**자문의견**

-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통해 회계실체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함

7-2. 국가통합 수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자문의견**

- 각 중앙관서에 구분되어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회계 특성별로 통합하여 국가통합 수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은
 - 회계 특성별 정보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가회계정보이용자의 목적별 정보수요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재무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특성별 정보의 기간 간 비교가능성 및 추세 분석이 가능하여 재무정보 유용성을 제고될 수 있음

8-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상태표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 국가회계란 국가(중앙정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를 통한 자원의 변동을 화폐의 흐름으로 측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함
 - 즉, 국가회계는 한국의 중앙정부인 국가재정법상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중앙관서 및 국가(통합)에서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임
 - 또한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국가회계실체를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성기금도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며, 사회보장사업 역시 국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사업 중 하나이므로 국가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실체(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국가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회보장성기금을 국가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계’란 일련의 행위 과정(process)인 accounti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체 즉, accounts를 의미함
 -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그 하나하나가 정책활동의 실체(accounts)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정’의 성격이 강함
 - 본 안건의 (문제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성기금과 같이 회계실체의 역할과 목적이 다른 회계실체가 단순 합산된 국가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저하’한다기 보다는
 - 오히려 그 하나하나가 ‘정책활동의 실체(계정)’를 의미하므로 사회보장성기금이 국가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만이 국가회계실체에 대한 목적적합하고 표현이 충실한 자산부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본 안건과 같이 사회보험상태표 재무제표를 신설하는 경우 분석해야 할 재무제표의 수가 많아져서 재무정보 간소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8-2. 국가재무제표에서 사회보험상태표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제외(혹은 구분 공시)하여 단순 자산·부채 정보가 아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자문의견

- 미국의 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본 안전의 (개선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상태표와는 성격이 상이함
 -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굳이 공시하고자 한다면, 사회보장성 기금을 국가재무제표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 국가재무제표에 포함하되 사회보장성기금 관련 정보를 별도로 주석 공시할 수 있을 것임

㉑ 사회복지, 국방, 보건 등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분야와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 수익 정보는 연관성이 높지 않으므로 비교환수익(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에 대한 정보는 비교환수익명세표를 통해 분리 제공

자문의견

- <센터 내 주요 의견>과 같이 재정운영표에서 분리할 시 재정운영결과의 산출 과정을 제시하기 어렵고, 전체 수익과 비용의 파악 및 비교를 위해 분석해야 할 재무제표의 수가 많아져서 간소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재무제표의 수를 증가시키기보다 기존 회계전문가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여 별도의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적합성 및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 분석해야 할 재무제표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다만,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경우 공공부문의 특성을 강조하여 IPSAS, IFRS와 정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

㉒-1. 중앙정부의 원가와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국세 수익의 차감항목 또는 비교환수익 중 정부간 이전비용 등으로 인식

자문의견

- 유용한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일정한 회계기간 동안 재무성과 및 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 즉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정보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공시하는 것이 목적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음
 - 또한 교부세는 국가가 징수역할을 대행해 주는 것으로서 징수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고, 징수한 금액을 지자체에 교부해 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인 바,
 -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수익과 원가로 각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국가의 재정활동에서는 기업에서와 같이 당기순이익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수된 조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에 사용(교부)되었는가 하는 정보가 중요함
- 특정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원이 소요되었는지,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다른 정책사업과의 배분은 적절하였는지, 정책사업 배분을 위한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 따라서 지방재정교부금과 같이 ‘도관 성격’ 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과 원가에 관한 정보를 서로 차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공시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㉔-2. 지방재정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처리

자문의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지방재정교부금과 동일하게 ‘도관 성격’ 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과 원가에 관한 정보를 서로 차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공시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한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자원) ① 교부세의 자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② 교부금 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㉑ 회계과목이 일괄 공시됨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이 모두 표시되어 공시과목이 과다(일반유형자산 11개, 사회기반시설 15개 등 총 40개)하므로 금액적 중요성이 큰 '자기국채', '자기공채'를 제외한 차감계정 모두를 공시과목에서 제외

자문의견

- (개선안) 차감계정 공시계정과목 제외에 찬성함
 - 다만,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차감계정 중 '자기국채' 및 '자기공채' 를 공시계정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차감계정과 공시의 일관성이 저하되므로 모든 차감계정을 공시계정과목에 제외하고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금액적 중요성' 을 고려하여 그 공시(차감계정 또는 주석)를 달리하는 경우, '금액적 중요성' 판단에 재량성이 개입될 수 있고 재무정보이용자 입장에서 공시계정과목인 차감계정과 주석공시과목인 차감계정 간의 차이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차감계정이 재정상태표 공시계정과목에 표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모든 차감계정을 공시계정과목에서 제외하여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센터 내 주요 의견과 관련하여,
 - 국가재정상태표 뿐만아니라, 중앙관서 등 회계실체 재정상태표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간소화에 따른 투명성 논란, 정보 제공 분량 저하 등의 논란은 충분하고 완전한 주석공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㉒-1. 610조원 규모 국민연금 운용자산 별도 계정과목 신설(회계과목)

자문의견

- (개선안)에 찬성함

㉒-2.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

자문의견

- (개선안)에 찬성함

㉔-3.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기타일반유형자산, 전비품)과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하천, 기타사회기반시설) 계정과목 간소화

자문의견

- 계정과목 간소화 취지에 부합하게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로만 공시하고, 그 하위 과목(토지, 건물, 기타일반유형자산, 전비품,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도로, 철도, 하천,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은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㉔-4. 무형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 하위(관리과목)으로 구분

자문의견

- (개선안)에 찬성함

㉔-5. 장기차입부채의 국채 및 공채의 하위 계정과목 신설(국고채, 외명채 등)

자문의견

- ‘국채’ 와 ‘공채’ 가 그 종류별 성격이 상이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국공채’ 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굳이 하위 계정과목을 신설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임
 - 계정과목 간소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신설의 필요성은 적어 보임

㉔-6.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금별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험부채를 공시과목으로 상향

자문의견

- (개선안) 사회보험부채(기타부채)를 회계과목(Level III)으로 상향하는 것에 찬성함
 - 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금별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험부채를 공시과목으로 상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회보험부채를 ‘기타비유동부채’ 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그리고 장기충당부채 내의 ‘보험충당부채’ 와 기타비유동부채 내의 ‘사회보험부채’ 의 직관적 의미가 잘 와 지 아니함. 즉, 두 계정과목 명칭이 비슷해 보이고 둘 간의 차이가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아니함

㉔-7.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급여 성격의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계정과목 하향

자문의견

-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급여 성격의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함
 - 다만, <참고 2>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보험충당부채를 삭제하고 관리과목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보험충당부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㉔-8.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를 개별법 결산과 연관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으로 구성

자문의견
<input type="checkbox"/> (개선안)에 찬성함

㉔-9.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정부내 자산·부채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리하여 계정과목명으로 내부거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

자문의견
<input type="checkbox"/> (개선안)에 찬성함

㉔ 현 재무제표 작성단위(원)는 최대 16자리로 표현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기방식(만, 억, 조) 또는 (2안) 금액 표기 기준(백만, 십억, 조) 단위로 조정

자문의견
<input type="checkbox"/> (개선안)에 찬성함 - 다만, 재정상태표 외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및 가독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㉔ 각 중앙관서별로 프로그램 수가 다수(최대 39개)인 경우가 있고, 한 페이지에 25개의 프로그램이 공시됨에 따라 프로그램원가 부분만 1페이지 초과

㉔-1. 직관적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별 원가를 프로그램원가 대신 공시

- (1안)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 분야별원가 적용
- (2안) '부' 단위 중앙관서에 한하여 부문별원가로 개편
- (3안) 프로그램 개수 10개 이상인 중앙관서만 부문별원가로 개편
- (4안) 현행 유지

자문의견

- 프로그램 총원가는 회계기금이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원가를 일종의 기능(사업)별로 집계한 것을 의미함
 - 프로그램이란 회계실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사업 단위로서 일종의 기능별 분류를 의미하며,
 - 프로그램(기능)별로 총원가를 산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임
 - 따라서 프로그램(기능)별로 총원가를 산출하여 공시하는 것은 국민 삶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개선안 1) (1안)과 같이 모든 중앙관서가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원가를 ‘부문 원가’로 개편하는 경우,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부문에 걸쳐 존재하게 되어 각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부문’을 정확히 매칭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즉, 안건 2페이지 상단의 <환경부 중복 프로그램명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프로그램이 ‘국정운영’, ‘재정금융’, ‘기후대기및환경안전’, ‘농업농촌’, ‘물류등기타’의 여러 ‘부문’에 걸쳐 존재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프로그램’에서 ‘부문’으로의 개편에 분류 자의성 및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개선안 1) (2안)과 (3안)의 경우에도 부처별 재정운영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분야 - 부문’은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시 자원배분 방향 및 한도결정의 기준단위이고, ‘프로그램’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시 기획재정부와 중앙관서간 협의조정단위로서 특히 ‘프로그램’은 각 부처 예산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의 기본단위에 해당함

- 따라서 현행과 같이 프로그램단위로 순원가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㉔-2. 재정운영표 상 순원가 금액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

자문의견

- 재정운영표 상 순원가 금액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하는 경우 순원가가 양(+)인 경우와, 순원가가 음(-)인 경우가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
 - 순원가를 기준으로 한 정책사업별 성과 및 효율성 파악이 양(+)에서 음(-)으로 (순차적으로) 일목요연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순원가 금액 절대값 순서로 재배치하는 경우 매년 그 배열순서가 달라지게 되어 연도별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이 낮아지고, 각 중앙관서별 비교가능성도 저해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과 같이 프로그램코드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연도별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각 중앙관서별 비교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㉔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 2개로만 구분하여 공시하고, 현재 공시하는 회계과목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

자문의견

- (개선안)과 같이 관리운영비를 인건비와 경비로 구분하여 보여주되, 하위 회계과목은 공시에서 제외하고 필요시 주석 공시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㉔ 비배분 수익·비용의 하위 회계과목으로 공시에서 제외

자문의견

- (개선안)과 같이 비배분 수익·비용의 하위 회계과목은 공시에서 제외하되, 주석 공시를 통해 비배분 수익·비용 내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다만, 재정운영표 간소화 취지와 일관성 있게 부합되도록, <참고4>의 ‘Ⅵ. 비교환수익 등’도 현재 1~4 항목(1. 부담금수익, 2. 제재금수익, 3. 채무면제이익, 4.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을 공시에서 제외하고 주석으로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㉔-1. 일반수용비(210번대) 예산 관련 계정과목 등 금액적 중요성이 적은 계정과목을 관리과목으로 조정

자문의견
<input type="checkbox"/> (개선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반수용비’ 중 ‘피복비와 급량비’는 성격상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보다 가까운 항목임 - 따라서 정책적 의미나 국민 관심이 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두는 경우 ‘피복비와 급량비’로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㉔-2. 보조비의 하위 과목(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하위 과목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input type="checkbox"/> (개선안)과 같이 유용한 정보와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정과목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㉔-3. 기타이전비용의 하위과목(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등)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input type="checkbox"/> (개선안)과 같이 유용한 정보와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정과목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㉔-4. 기타비용, 기타수익 중 금액적 중요성 및 정보이용자 유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목 회계과목 격상

자문의견
<input type="checkbox"/> (개선안)과 같이 유용한 정보와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정과목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총평] 재무제표 개선 TF 총괄 의견

자문의견

1. 기타 국가 재정운영표 간소화 관련 의견

- 국가 재정운영표가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목적은 국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국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 소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따라서 국가 재정운영표는 수익 위주가 아닌 비용(원가) 위주로 작성되는 바, III. 재정운영 결과는 I. 재정운영순원가에서 II.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것으로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순비용을, (-)면 순수익을 의미함
 - 즉, 국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국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 소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순비용을 나타내므로 그 의미를 ‘재정운영결과’ 옆에 주기 표시 (예시: 순비용, 투입되는 세금 등)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용어를 병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재정운영결과가 (-)면 순수익을 나타내므로 그 의미를 ‘재정운영결과’ 옆에 주기 표시(예시: 순수익, 남은 세금 등)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용어를 병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 계정과목 체계 개편 관련 포괄의견 또는 기타 의견사항

- 계정과목 체계의 전체적인 분류와 관련하여, 해외 각국은 다음과 같이 대분류하고 있음
- (미국) 자산과 부채 내에서 별도의 대분류 없이 계정과목 나열
 - (영국) 자산과 부채 내에서 Current와 Non-current로 대분류
 - (호주) 자산 내에서 Financial과 Non-financial로 대분류, 부채 내에서 Interest bearing과 Provision and Payables로 대분류
 - (뉴질랜드) 미국처럼 자산과 부채 내에서 별도의 대분류 없이 계정과목 나열
 - (캐나다) 호주처럼 자산 내에서 Financial과 Non-financial로 대분류, 부채 내에서 Account payables and accrued liabilities와 Interest bearing debt로 대분류
- (개선안)의 경우 자산 내에서는 유동자산, 금융상품,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 자산으로, 부채 내에서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대분류하

고 있는 바,

- 대분류에 있어서 Current와 Non-current 기준인지, 아니면 Financial과 Non-financial 기준인지, 아니면 미국과 뉴질랜드처럼 대분류 없이 계정과목 나열인지가 모호하며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관된 대분류 체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미국이나 뉴질랜드처럼 대분류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정과목을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과 같은 용어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보전비’, ‘출연비’, ‘보조비’의 경우 어떤 성격의 계정을 의미하는지 직관적 이해가능성이 다소 저하됨
- 특히, ‘보전비’와 ‘보조비’의 경우 그 명칭이 비슷하여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움
 - 계정과목 명칭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되, 직관적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작명이 필요해 보임

2020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 TF 최종보고서

연구자문위원

최 연 식

- 부처별 원가를 공시하는 목적은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으로 조직체계에 맞춰 통합 공시

<중앙관서 통합(안)>

구분	하위 중앙관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등 5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개 부처	하위 17개 청
별도 표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의견

- 센터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순원가를 정부 조직체계에 근거하여 25개 주무부처 등으로 체계화, 간소화하여 표시하는 것임.
- 그러나, (개선안)을 적용하더라도 1)재정운영순원가에 25개 중앙관서 등이 나열되어 여전히 정보량이 과도하고, 2)재정상태표와 순자산변동표는 회계계정으로만 구성되나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순원가만 중앙관서 등으로 세분화되어 재무제표 상호간 표시의 일관성이 저하되며, 3)재정운영순원가를 중앙관서 등으로 구분표시할 특별한 이유(근거)나 이로부터 기대되는 효익을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재정운영표의 표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다음 2가지를 제안함. 다만, 일반 국민 등 정보이용자의 관심이나, 결산보고서(예, 결산총평, 세입세출결산)의 일관성 확보 관점에서 (대안1)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안1)재정운영순원가를 아래 “[과제2]분야별 원가정보 제공”에서 제시한 분야별 프로그램 순원가(16대 분야)로 대체하고, 56개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를 주석이나 부속명세서로 이동
 - (대안2)재정운영순원가를 총원가, 수익, 순원가를 구분표시하고, 56개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를 주석이나 부속명세서로 이동

- ② **현행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 대신 분야별 원가(16대 또는 12대) 정보 제공**
- (1안) 現 재정운영표 대체
- (2안) 現 재정운영표는 유지하고 재무제표 신설
-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 주석 제공

자문의견

- 센터에서 제시한 (개신안)은 일반 국민 등 정보이용자의 관심이 높은 분야별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회계실체·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재무제표 사이의 표시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함.
- 정부의 예·결산 관련 주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에서 이미 12대 분야를 활용하는 정책실무와 그 취지를 반영하고, 16대 분야에서 다른 분야와는 이질적인 예비비의 의미를 정보이용자가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다면, 12대 분야를 적용하는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12대 분야에서 “R&D/기타”측정시 과학기술, 통신분야 외 부처에서 관련 원가를 정밀하게 집계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절차와 인력, 예산이 소요되며, 다른 분야의 원가와 중복으로 집계 및 공시되는 문제점이 있음.
- 본 건은 위 “[과제1]중앙관서 통합”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방안)으로 주석 제공이 아니라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순원가를 16대 분야별 정보로 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재정운영표 정보(56개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 표시)를 주석이나 부속명세서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③ **국가재정운영표 상 내부거래 정보를 한줄로 차감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순원가 금액에 내부거래 제거 후 금액 반영**

자문의견

- 정확한 원가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내부거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내부거래 정보의 제공방법은 위의 “[과제1]중앙관서 통합” 및 “[과제2]분야별 원가정보 제공”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순원가를 16대 분야별 프로그램순원가로 표시 ([과제1] 및 [과제2] 관련)
 - 현행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 정보를 주석이나 부속명세서 부분으로 이동하되 총원가, 수익, 순원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내부거래 정보를 추가로 제공 ([과제3] 관련)

4 국세징수활동 공시 강화

(1안) 국세징수활동표를 재무제표로 위상 강화

(2안) 국세징수활동정보를 주석으로 제공

자문의견

- 센터 제시 개선방안 중 (2안)에 찬성함
- 국세수익 정보는 국가결산보고서의 'I.결산총평'이나 'II.세입·세출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로 추가로 보고하는 것은 정보의 중복으로 보이고, 현금주의 결산정보가 발생주의 결산의 주요 재무제표로 제공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세수익은 국가결산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 핵심사항을 요약하여 주석으로 상세히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국세징수활동표를 별도 작성함에 따라 '미지급국세' 유동부채 인식 등 재무정보가 왜곡되는 부분이 존재

5-1. 조정계정을 유동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변경

자문의견

- 센터 제시 개선방안 중 (1안)에 찬성함
- 국세징수활동 정보는 매 회계기간 단위의 성과를 보고하는 결산서로서 유량(flow) 개념임을 고려할 때, 관련 중앙관서의 수익 정보가 왜곡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국세징수 관련 채권/채무 등 저장(stock) 정보까지 국세징수활동표에 포괄하는 것이 적합한지, 혹은 가능할지 의문임.
- (1안)에서 조정계정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정계정'의 경제적 의미를 회계적으로 보다 적절히 표시할 것으로 기대함. 또한 재정상태표에서 미수국세를 미지급국세(차감계정)까지 표시하여 순액(사실상 0)으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1안) 적용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5-2. 국세징수활동표를 재정운영표와 통합

자문의견

- 국세징수활동표와 재정운영표의 목적과 정보의 속성이 상이하므로 이들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⑥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공시계정과목이 과다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재정운영표와 중복 문제 제기**

⑥-1.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분류(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는 재정운영표에서 총액으로만 제공**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⑥-2.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1안) 재무제표로 위상강화 / (2안) 주석으로 공시 강화**

자문의견

- 재정운영표의 구조는 정보이용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성질별, 기능별 등으로 구성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 현행 국가재정운영표는 재정운영순원가를 부처별로 표시하고,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도출하는 단순한 구조임. 국가의 재정운영성과를 부처별로 요약하여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장점이 있으나 정보가 매우 제한됨. 또한 부처별 재정운영표의 구조와 일관성이 결여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함.
- 국가재정운영표의 개선방안과 관련한 자문TF(1차) 의견서([과제1]과 [과제2] 관련)에서 분야별 프로그램순원가(16대 분야)로 대체하고, 56개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를 주석이나 부속명세서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와 연계하여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주석으로 공시하되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 또한 성질별로 상세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다만, 현행 국가재정운영표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주석으로 상세히(운영비,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 구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⑦-1. **현 재무제표 상 중앙관서별 원가를 제공하고,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 회계실체별 결산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효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과다한 정보제공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회계실체별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공시할 경우 재무제표가 아닌 주석에서 [참고10]과 같이 상위 계정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정확한 정보를 간략히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행정형회계', '사업형회계'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함.

㉚-2. 국가통합 수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

자문의견

위 ㉚-1에 대한 의견을 참조

㉛-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상태표 재무제표 신설

자문의견

- 개선방안에 대한 센터의견과 전반적으로 같은 의견임. 사회보험상태표를 별도로 재무제표화하는 방안(참고3)과 사회보험을 재정상태표에 분리, 공시하는 방안(참고4)은 그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전문가 의견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사회보험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의미 있고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주석에 포함하거나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 참고로, 현행 필수보충정보로 공시되는 사회보험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전문적이라 정보제공의 효과성,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임. 따라서 사회보험상태표 및 관련 설명자료로 사회보험보고서를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사회보험보고서는 국가재무제표와 별개로 공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㉛-2. 국가재무제표에서 사회보험상태표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제외(혹은 구분 공시)하여 단순 자산·부채 정보가 아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자문의견

위 ㉛-1에 대한 의견을 참조

㉜ 사회복지, 국방, 보건 등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분야와 국세, 부담금, 제제금 등 수익 정보는 연관성이 높지 않으므로 비교환수익(국세, 부담금, 제제금 등)에 대한 정보는 비교환수익명세표를 통해 분리 제공

자문의견

- 개선방안에 대한 센터의 의견과 전반적으로 같은 의견임. 비교환수익명세서를 재무제표의 하나로 격상함으로써 얻게 될 추가적인 효익이 명확하지 않아 보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요약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 중앙정부의 원가와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국제 수익의 차감항목 또는 비교환수익 중 정부간 이전비용 등으로 인식

자문의견

- 개선방안에 대한 센터의 의견과 전반적으로 같은 의견임. 구분 표시된 총액정보가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속성이 완전히 같다면 이들에 대한 회계처리는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지방재정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처리

자문의견

위 ㉠-1에 대한 의견을 참조

[추가 의견]

- 3개 안전 모두 개선방안은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임. 이처럼 기존 공시정보를 보다 세분화/구체화하거나 새로운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주재무제표화할 것인지, 아니면 주석이나 필수보충정보 등으로 보충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과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의 속성, 중요성 등의 종합적 평가에 따라 재무제표화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의 종류와 양이 과다해지고 유사한 정보를 중복으로 공시할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자원) ① 교부세의 자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② 교부금 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㉒ 회계과목이 일괄 공시됨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이 모두 표시되어 공시과목이 과다(일반유형자산 11개, 사회기반시설 15개 등 총 40개)하므로 금액적 중요성이 큰 '자기국채', '자기공채'를 제외한 차감계정 모두를 공시과목에서 제외

자문의견

- 재무제표 간소화는 공시정보의 상세화와 대칭적/상쇄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재무공시의 투명성 이슈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 재무공시 수단으로서 재무제표는 ①재무제표 본문과 ②주석 등(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무공시의 투명성 제고를 최상위 가치로 설정한다면 재무제표(본문)의 간소화는 주석 등의 상세화로 보완하여야 함.
- 따라서 정책방향이 재무제표 간소화에 있다면 주석 등을 통한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이런 관점에서 동 개선안(차감계정을 공시계정에서 제외하고 주석 등으로 상세내역 공시)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재무제표 간소화 대상 항목을 선정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경제적 의미', '정책적 필요', '국민적 관심', '금액적 중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개선대안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선택하여야 함(제시된 자료에는 이러한 기준과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이 경우 금액적 중요성은 가장 후순위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국채/자기공채는 금액적 중요성보다는 '경제적 의미' 또는 '정책적 필요'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사안으로 보임(금액적 중요성으로는 감가상각누계액이나 사용수익권 등도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취득 또는 보유목적을 확인하여 재무제표에 차감계정으로 표시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㉓-1. 610조원 규모 국민연금 운용자산 별도 계정과목 신설(회계과목)

자문의견

- 국가의 재정상태표에서 국민연금 관련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 관련 자산과 부채가 균형 있게 표시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국민연금(사학연금 포함) 관련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운용자산만을 자산으로 표시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부채비율 등 주요 재정지표가 왜곡되어 이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임. 따라서 모든 공적연금 관련 현행 회계기준과 재무제표 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현행 회계기준 안에서 재무제표 표시를 개선하더라도 '국민연금운용자산'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공적연금운용자산'으로 하여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㉔-2.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

자문의견

- (개선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다만, 투자자산의 경우 유동과 비유동 사이에 분류표시의 일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즉, 유동의 경우 투자목적과 투자목적외 구분이 관리과목(Level IV)으로, 비유동의 경우 회계과목(Level III)으로 표시함으로써 분류표시가 다소 불일치함. 이로 인해 정보이용자가 정보를 부정확하게 이해할 위험이나 정보분석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㉔-3.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기타일반유형자산, 전비품)과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하천, 기타사회기반시설) 계정과목 간소화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㉔-4. 무형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 하위(관리과목)으로 구분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㉔-5. 장기차입부채의 국채 및 공채의 하위 계정과목 신설(국고채, 외평채 등)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㉔-6.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금별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험부채를 공시과목으로 상향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㉔-7.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급여 성격의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계정과목 하향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㉒-8.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를 개별법 결산과 연관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으로 구성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㉒-9.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정부내 자산·부채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리하여 계정과목명으로 내부거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㉓ 현 재무제표 작성단위(원)는 최대 16자리로 표현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기방식(만, 억, 조) 또는 (2안) 금액 표기 기준(백만, 십억, 조) 단위로 조정

자문의견

- 재무제표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단위조정에 찬성함. 해외와 비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통적 표기방식 보다 금액표기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참고4]와 같이 십억원 단위 적용에 찬성함.
- 다만, 주식 등까지 십억원 단위로 표시할 경우 금액이 작은 항목이 공시에서 제외되거나 타 항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 등은 현재와 같이 원 단위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

㉔ 각 중앙관서별로 프로그램 수가 다수(최대 39개)인 경우가 있고, 한 페이지에 25개의 프로그램이 공시됨에 따라 프로그램원가 부분만 1페이지 초과

㉔-1. 직관적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별 원가를 프로그램원가 대신 공시

- (1안)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 분야별원가 적용
- (2안) '부' 단위 중앙관서에 한하여 부문별원가로 개편
- (3안) 프로그램 개수 10개 이상인 중앙관서만 부문별원가로 개편
- (4안) 현행 유지

자문의견

- 현행 공시체계가 각 중앙관서의 업무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공시되는 프로그램이 중복·과다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함.
-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및 결산실무의 효율성 관점에서 재정운영표 개선은 원칙적으로 (1안)과 같이 모든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만, (1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문 수가 1~2개로 적은 중앙관서의 정보량이 저하되는 것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참고2]에서 해양경찰청이나 외교부, 감사원의 예시를 보면, 현행 부문이 해당 중앙관서의 업무성격이나 역할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조직 체계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구분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업무성격, 역할 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부문의 개념 및 분류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한 후 (1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통해 모든 중앙관서의 부문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됨.
- 참고로, 동 안건은 프로그램별 결산 결과를 재정운영표에 부문별로 맵핑(mapping)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예산/결산의 원칙에 구속될 필요는 없어 보임. 부문의 세부내역(프로그램별 결산 결과)을 주석 또는 필수보충정보에서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㉔-2. 재정운영표 상 순위가 금액 절대값 순으로 재배치

자문의견

- 동 개선안은 (개선안 I 부문별 원가 공시)와 분리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함.
- 재정운영표상 기재 순서는 단순히 금액적 크기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정보의 경제적 의미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열기준(우선순위)을 먼저 선정하여 그에 따라 배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각 중앙관서의 핵심사업(부문)순위 → 정책우선순위 → 금액적 중요성 순서로 배치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음.

㉕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 2개로만 구분하여 공시하고, 현재 공시하는 회계 과목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

자문의견

- 현행 관리운영비의 공시정보가 과다하고,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중복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함. 또한 제시한 (개선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다만, 경비 중에는 순수한 관서운영경비 이외에 출연비(18), 보조비(19), 연구개발비(22) 등 성격이 다른 비용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경비를 인건비성경비, 관서운영경비, 사업비성경비 등과 같이 비용의 속성에 따라 3~4개로 범주화하여 공시할 것을 제안함.

㉔ 비배분 수익·비용의 하위 회계과목으로 공시에서 제외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㉔-1. 일반수용비(210번대) 예산 관련 계정과목 등 금액적 중요성이 적은 계정과목을 관리과목으로 조정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㉔-2. 보조비의 하위 과목(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하위 과목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㉔-3. 기타이전비용의 하위과목(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등) 중 중요성이 큰 과목을 회계과목으로 격상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㉔-4. 기타비용, 기타수익 중 금액적 중요성 및 정보이용자 유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목 회계과목 격상

자문의견

- (개선안)에 동의함

[총평] 재무제표 개선 TF 총괄 의견**자문의견**

- 2011년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 등(국가, 중앙관서 및 공공 기관)의 재무보고는 주로 기존의 예산 및 결산제도 틀 안에 발생주의 재무결산을 안착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음.
- 동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 TF』는 국가 등의 재무결산 정보의 투명성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최근 국가 등의 재무정보가 활용성이 낮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나 규정 등에서 벗어나 혁신적·선도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즉,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의 변경, 새로운 정책이나 재정활동의 도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 등의 재무보고 고도화를 위한 원칙(혹은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원칙(혹은 방향)에 부합하는 세부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예를 들어, 재무제표 종류의 확대, 재무제표 요소 간소화 및 주식 등 상세화, 재무제표 배열순서, 재무정보 속성(기능별/성질별/부처별/부문별 등) 사이의 우선순위, 목표 재무정보 이용자 특성(일반국민/정책담당자/전문가 등)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세부 개선방안의 도출 및 선택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재무보고 개선 쟁점보고서

발 행 2020년 12월 31일
저 자 한소영 · 진태호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관 및
인 쇄 (주)다원기획
ISBN 979-11-6655-061-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재무보고 개선 쟁점보고서

2020. 12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 www.kipf.re.kr

